



예산과 조례를 통해 본 마포구 현황

2010. 5.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대안정책모임 '뚝딱이'



발간에 부쳐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吾十有五而志于學)..... "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새삼 이 자료집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다. '지학(志學)'은 공자에게는 인격 수양과 완성을 위해 학문에 뜻을 두는 15세의 나이지만 우리에게는 지역주민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에 뜻을 둔 올해 2010년이다.

또 하나 이제 비로소 출세(出世)했다. 보통 출세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나는 출세를 '숨어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온다'는 뜻을 더 좋아한다. 올 1월 처음 뜻을 세우고 이런저런 준비를 거쳐 이제 비로소 출세하게 됐다. 출세를 하면 책임이 더 막중해진다. 출세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다.

이 자료집에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아주 무미건조한 자료집에 그친다. 무언가 결론을 기대했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자료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료집을 기초로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 자료집은 항상 손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뚝딱이’란 이름을 참 좋아한다. 정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듯 끊임없이 절차탁마하는 진정한 노동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다짐을 일깨우게 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뚝딱이’, 정책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가는 ‘뚝딱이’, 사람과 부대끼며 같이 해야 노동의 효율이 커지는 ‘뚝딱이’, 마포를 바꿔내고자 여기저기 망치와 정을 갖다대는 ‘뚝딱이’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뚝딱이’는 민주노동당의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 스스로의 다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미약한 자료집을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마포 지역 주민들에게 바친다.

마포 대안정책모임 ‘뚝딱이’

김창주, 박용신, 심태섭, 윤성일

예산과 조례를 통해 본 마포구 현황

1. 마포구 개괄

다음은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살펴 본 마포구의 현황이다.

- 면 적 : 23.87km² (서울시의 3.94%)
- 인 구 : 165,743세대, 384,054명
- 주 택 : 94,865호(보급률 94.3%)
- 구 행정조직 : 5국 1소, 1담당관, 31과, 1추진반, 16동, 의회사무국
- 구 공무원(정원) : 1,249명 (구 851, 보건소 95, 동 274, 의회29)
- 인구 현황

(단위 : 명)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여성
2006년	33,528	18,937	42,197	19,719	12,006	5,843	202,588
2007년	36,160	19,105	41,053	20,385	11,864	6,621	204,196
2008년	36,811	18,429	39,332	20,411	13,562	6,265	204,196
2009년	38,327	17,786	37,917	20,824	13,826	6,139	204,196

- 동별 인구 현황

구 분	면 적	세 대 수	인 구	조 직	
	(km ²)	(세대)	(명)	통	반
계	23.87	165,743	384,054	404	3,135
공덕동	1.02	15,799	36,316	41	282
아현동	0.76	7,503	17,226	27	151
도화동	0.62	9,187	23,371	21	196
용강동	0.84	8,825	21,454	20	211
대흥동	0.89	8,967	16,045	22	172
염리동	0.43	8,377	18,462	20	164
신수동	0.78	9,850	23,181	22	167
서강동	1.47	12,038	26,358	29	210
서교동	1.63	15,713	29,324	37	275
합정동	1.70	9,372	21,197	23	184
망원제1동	1.14	10,447	24,510	24	206
망원제2동	0.67	8,495	21,943	21	197
연남동	0.65	8,897	19,610	22	168
성산제1동	0.80	8,474	20,505	21	147
성산제2동	2.07	15,701	41,808	35	281
상암동	8.40	8,098	22,744	19	124

•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연령	2008년						2009년					
	계		남		여		계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0~4세	1,8429	4.73	9,480	4.98	8,949	4.50	17,912	4.64	9,222	4.90	8,690	4.40
5~9세	19,004	4.88	9,788	5.15	9,216	4.63	18,406	4.77	9,381	4.98	9,025	4.57
10~14세	20,328	5.22	10,546	5.55	9,782	4.91	20,010	5.19	10,348	5.49	9,662	4.89
15~19세	20,411	5.24	10,607	5.58	9,804	4.93	20,843	5.40	10,807	5.74	10,036	5.08
20~29세	6,5913	16.95	3,1108	16.37	34,805	17.50	6,4110	16.6	30,364	16.13	33,746	17.10
30~39세	82,521	21.22	41,959	22.08	40,562	20.39	81,987	21.27	41,474	22.04	40,513	20.53
40~49세	60,103	15.45	30,505	16.05	29,598	14.88	61,081	15.84	31,032	16.63	30,049	15.23
50~59세	48,612	12.50	22,716	11.95	25,896	13.02	46,019	11.94	21,694	11.52	24,325	12.33
60~64세	17,039	4.38	7,759	4.08	9,280	4.66	17,217	4.46	7,723	4.10	9,494	4.81
65세이상	36,495	9.38	15,547	8.18	20,948	10.53	37,831	9.81	16,130	8.57	21,701	11.00
계	388,855	100.0	190,015	100.0	198,840	100.0	385,416	100.0	188,175	100.0	197,241	100.0

• 저소득층 현황 (2009)

구분	관할지역전체(B)		저소득층						전체인구(가구)대비 상대비중(A/B)	
			전체(A=a+b)		기초생활수급자(a)		그 외 취약계층(b)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	인구
전체	167,901	385,416	6,906	12,031	3,835	6,378	3,071	5,653	4.1%	3.1%

• 장애인 현황(2009)

구분	인구수(B)	장애인			전체인구대비 상대비중(A/B)
		전체(A=a+b)	학교,시설소속(a)	가정거주등(b)	
전체	385,416	14,519	0	14,519	3.76%
17세이하	68,900	460	0	460	0.6%
65세이상	37,831	5,777	0	5,777	15.5%

• 인구1명 당 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비	인구수	인당비용	사업비	인구수	인당비용	사업비	인구수	인당비용	사업비	인구수	인당비용
노인 (65세 이상)	7,895,443	33,528	235.488	19,607,454	36,160	542.2415	21,900,790	36,811	594.9523	25,284,206	38,327	659.697
영유아 (0-4)	4,933,132	18,937	260.5023	6,258,550	19,105	327.587	26,102,679	18,429	1416.392	29,851,933	17,786	1678.395
아동(5-14)		42197	0		41053	0	1,064,420	39,332	27.06244	941,858	37,917	24.83999
청소년 (15-19)	17,600	19,719	0.89254	14,050	20,385	0.689232	3,680,388	20,411	180.3139	908,420	20,824	43.6237
장애인	501,343	12,006	41.7577	610,263	11,864	51.43822	1,177,202	13,562	86.8015	1,031,458	13,826	74.60278
여성	193,173	202,588	0.953526	202,594	204,196	0.992155	211,989	204,196	1.038164	205,034	204,196	1.004104

2. 재정 총괄

- 2010년 예산 : 2,925억 4,900만원
 - 일반 회계 : 2,657억 9400만원
 - 특별 회계 : 267억 5500만원

<일반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		세출	
▶ 자체수입	125,109	▶ 일반공공행정	25,629
- 지방세	66,460	▶ 공공질서및안전	2,467
- 세외수입	58,649	▶ 교육	4,514
		▶ 문화및관광	5,376
▶ 의존수입	140,685	▶ 환경보호	15,744
- 지방교부세	3,211	▶ 사회복지	97,097
- 조정교부금	65,145	▶ 보건	6,620
- 재정보전금	1,627	▶ 농림해양수산	751
- 보조금	70,702	▶ 산업·중소기업	1,733
		▶ 수송및교통	7,638
		▶ 국토및지역개발	5,118
		▶ 예비비	2,755
		▶ 기타	90,352

<특별 회계> : 267억 5500만원

- 내역
 - ▶ 의료보호기금 : 4억 1600만원
 - ▶ 주차장 : 222억 3700만원
 - ▶ 기반시설부담금 : 8900만원
 - ▶ 마포농수산물시장 : 40억 1300만원

• 1인당 주민세 부담액 (단위 :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 부담액	68.2	66.7	69.1	86.3	102.8	102.0	121.8	153.1	182.0	173.0
인구수	387,308	379,141	375,417	379,459	383,457	388,164	390,545	393,368	385,291	384,054

3. 세입

-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입 순위 : 16위

★ 일반 회계 세입

● 당초 예산

(단위 : 백만원)

	2006 예산(당초)		2007 예산(당초)				2008 예산(당초)				2009 예산(당초)				2010 예산(당초)			
구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191,500	100.0%	212,000	100.0%	20,500	11%	245,000	100.0%	33,000	16%	261,200	100.0%	16,200	7%	265,794	100.0%	4,594	2%
지방세	39,595	20.7%	47,581	22.4%	7,986	20%	60,222	24.6%	12,641	27%	70,136	26.9%	9,914	16%	66,459	25.0%	-3,677	-5%
세외수입	59,352	31.0%	62,270	29.4%	2,918	5%	61,178	25.0%	-1,092	-2%	55,641	21.3%	-5,537	-9%	58,650	22.1%	3,009	5%
경상적세외수입	22,145	11.6%	22,724	10.7%	579	3%	20,715	8.5%	-2,009	-9%	19,002	7.3%	-1,713	-8%	21,013	7.9%	2,011	11%
재산임대수입	140	0.1%	145	0.1%	5	4%	170	0.1%	25	17%	396	0.2%	226	133%	387	0.1%	-9	-2%
사용료수입	8,618	4.5%	9,388	4.4%	770	9%	7,041	2.9%	-2,347	-25%	3,484	1.3%	-3,557	-51%	4,561	1.7%	1,077	31%
수수료수입	2,625	1.4%	2,734	1.3%	109	4%	2,844	1.2%	110	4%	3,079	1.2%	235	8%	2,488	0.9%	-591	-19%
사업수입	186	0.1%	177	0.1%	-9	-5%	215	0.1%	38	21%	195	0.1%	-20	-9%	256	0.1%	61	31%
장수교부금수입	8,966	4.7%	9,270	4.4%	304	3%	9,425	3.8%	155	2%	10,346	4.0%	921	10%	11,519	4.3%	1,173	11%
이자수입	1,610	0.8%	1,010	0.5%	-600	-37%	1,020	0.4%	10	1%	1,502	0.6%	482	47%	1,802	0.7%	300	20%
임시적세외수입	37,207	19.4%	39,546	18.7%	2,339	6%	40,463	16.5%	917	2%	36,639	14.0%	-3,824	-9%	37,637	14.2%	998	3%
재산매각수입	7,891	4.1%	3,986	1.9%	-3,905	-49%	7,017	2.9%	3,031	76%	4,757	1.8%	-2,260	-32%	3,022	1.1%	-1,735	-36%
순세계잉여금	25,964	13.6%	31,004	14.6%	5,040	19%	27,210	11.1%	-3,794	-12%	27,236	10.4%	26	0%	30,096	11.3%	2,860	11%
이월금	0	0.0%	0	0.0%	0	0%	0	0.0%	0	0%	0	0.0%	0	0%	0	0.0%	0	0%
부담금	0	0.0%	1,200	0.6%	1,200	0%	0	0.0%	-1,200	-100%	0	0.0%	3,070	0%	0	0.0%	-3,070	-100%
잡수입	2,297	1.2%	2,291	1.1%	-6	0%	4,960	2.0%	2,669	116%	3,070	1.2%	-3,384	-68%	2,774	1.0%	1,198	76%
지나년도수입	1,055	0.6%	1,065	0.5%	10	1%	1,276	0.5%	211	20%	1,576	0.6%	-276	-22%	1,745	0.7%	745	75%
지방교부세	0	0.0%	2,987	1.4%	2,987	0%	1,973	0.8%	-1,014	-34%	1,000	0.4%	-973	-49%	3,211	1.2%	-7,680	-96%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64,486	33.7%	64,051	30.2%	-435	-1%	71,625	29.2%	7,574	12%	80,071	30.7%	6,826	10%	66,772	25.1%	-11,679	-15%
조정교부금	62,680	32.7%	62,229	29.4%	-451	-1%	69,938	28.5%	7,709	12%	78,451	30.0%	-68,318	-98%	65,145	24.5%	63,525	3921%
재정보전금	1,806	0.9%	1,822	0.9%	16	1%	1,687	0.7%	-135	-7%	1,620	0.6%	52,665	3122%	1,627	0.6%	-52,725	-97%
보조금	28,067	14.7%	35,111	16.6%	7,044	25%	50,002	20.4%	14,891	42%	54,352	20.8%	-23,207	-46%	70,702	26.6%	43,907	16.4%
국고보조금	11,788	6.2%	14,904	7.0%	3,116	26%	23,501	9.6%	8,597	58%	26,795	10.3%	-23,501	-100%	38,775	14.6%	38,775	0%
기금	826	0.4%	1,417	0.7%	591	72%	1,210	0.5%	-207	-15%	0	0.0%	26,347	2177%	0	0.0%	-27,557	-100%
시도비보조금	15,453	8.1%	18,790	8.9%	3,337	22%	25,291	10.3%	6,501	35%	27,557	10.6%	2,266	9%	31,927	12.0%	4,370	16%

● 최종예산

(단위 : 백만원)

	2006 예산(최종)		2007 예산(최종)				2008 예산(최종)				2009 예산(최종)			
구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213,142	100.0%	252,922	100.0%	39,780	19%	308,070	100.0%	55,148	22%	347,999	100.0%	39,929	13%
지방세	39,595	18.6%	47,581	18.8%	7,986	20%	60,222	19.5%	12,641	27%	62,686	18.0%	2,474	4%
세외수입	65,796	30.9%	56,798	22.5%	-8,998	-14%	72,752	23.6%	15,954	28%	88,703	25.5%	15,951	22%
경상적세외수입	22,145	10.4%	22,884	9.0%	739	3%	20,741	6.7%	-2,143	-9%	18,982	5.5%	-1,759	-8%
재산임대수입	140	0.1%	145	0.1%	5	4%	170	0.1%	25	17%	396	0.1%	226	133%
사용료수입	8,618	4.0%	9,548	3.8%	930	11%	7,067	2.3%	-2,481	-26%	3,464	1.0%	-3,603	-51%
수수료수입	2,625	1.2%	2,734	1.1%	109	4%	2,844	0.9%	110	4%	3,079	0.9%	235	8%
사업수입	186	0.1%	177	0.1%	-9	-5%	215	0.1%	38	21%	195	0.1%	-20	-9%
장수교부금수입	8,966	4.2%	9,270	3.7%	304	3%	9,425	3.1%	155	2%	10,346	3.0%	921	10%
이자수입	1,610	0.8%	1,010	0.4%	-600	-37%	1,020	0.3%	10	1%	1,502	0.4%	482	47%
임시적세외수입	43,651	20.5%	33,914	13.4%	-9,737	-22%	52,011	16.9%	18,097	53%	69,721	20.0%	17,710	34%
재산매각수입	7,891	3.7%	3,986	1.6%	-3,905	-49%	7,017	2.3%	3,031	76%	4,757	1.4%	-2,260	-32%
순세계잉여금	30,087	14.1%	23,665	9.4%	-6,422	-21%	36,854	12.0%	13,189	56%	55,879	16.1%	19,025	52%
이월금	1,237	0.6%	1,556	0.6%	319	26%	1,177	0.4%	-379	-24%	4,439	1.3%	3,262	277%
부담금	763	0.4%	1,200	0.5%	437	57%	0	0.0%	-1,200	-100%	0	0.0%	0	0%
잡수입	2,618	1.2%	2,442	1.0%	-176	-7%	4,960	1.6%	2,518	103%	3,070	0.9%	-1,890	-38%
지나년도수입	1,055	0.5%	1,065	0.4%	10	1%	2,003	0.7%	938	88%	1,576	0.5%	-427	-21%
지방교부세	292	0.1%	3,981	1.6%	3,689	1263%	6,888	2.2%	2,907	73%	3,850	1.1%	-3,038	-44%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72,278	33.9%	94,319	37.3%	22,041	30%	91,248	29.6%	-3,071	-3%	91,449	26.3%	201	0%
조정교부금	70,472	33.1%	92,497	36.6%	22,025	31%	83,676	27.2%	-8,821	-10%	74,338	21.4%	-9,338	-11%
재정보전금	1,806	0.8%	1,822	0.7%	16	1%	7,572	2.5%	5,750	316%	17,111	4.9%	9,539	126%
보조금	35,181	16.5%	50,243	19.9%	15,062	43%	76,960	25.0%	26,717	53%	101,301	29.1%	24,341	32%
국고보조금	13,778	6.5%	17,850	7.1%	4,072	30%	27,554	8.9%	9,704	54%	42,676	12.3%	15,122	55%
기금	826	0.4%	1,154	0.5%	328	40%	0	0.0%	-1,154	-100%	0	0.0%	0	0%
시도비보조금	20,577	9.7%	31,239	12.4%	10,662	52%	49,406	16.0%	18,167	58%	58,625	16.8%	9,219	19%

★ 특별 회계 세입

① 주차장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세외수입	22,237,158	20,733,762	-		21,10,512	17,113,112
경상적 세외수입	7,731,333	7,199,915			6,680,756	5,750,138
사업수입	7,111,333	6,599,915			6,230,756	5,300,138
주차요금 수입(교통지도과)	6,715,747	5,576,390			5,075,831	
거주자 우선주차(노상,시설7개소,방문주차권)	2,479,719	2,419,060			2,492,167	4,145,213
공영주차장(노상,노외)	4,236,028	3,157,330			2,583,664	
불법주차차 견인료(교통지도과)	395,586	1,023,525			1,154,925	1,154,925
이자수입(교통지도과)	620,000	600,000			450,000	450,000
임시적 세외수입	14,505,825	13,533,847			14,429,756	11,362,974
순세계 잉여금(교통지도과)	9,000,000	9,000,000		12,692,240	8,500,000	8,000,000
기금 전입금(교통지도과)	-	-			1,977,010	-
잡수입(교통지도과)	3,023,847	2,094,717			1,911,204	1,592,338
과태료-주정차 위반	3,018,000	2,090,760			1,908,000	1,590,000
체납처분비(교통지도과)	212	170			150	150
이자수입-노상주차장,견인보관소,거주자우선주차장	5,635	3,787			3,054	2,188
지난년도 수입(교통지도과)	2,481,978	2,439,130			2,041,542	1,770,636
주정차위반	2,271,270	2,160,694			2,041,542	1,770,636
버스전용차선	210,708	278,436			-	-
국고보조금 등-서울디자인고등학교 개방주차장	-	-		100,000	-	-

② 기반시설부담금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세외수입	89,143	1,540,000	-		1,793,000	788,000
경상적 세외수입	89,143	590,000			1,005,000	788,000
기반시설부담금 시세입 징수교부금(도시계획과)	89,143	580,375			1,005,000	770,000
이자수입	-	9,625			-	-
임시적 세외수입	-	950,000			788,000	-
순세계 잉여금	-	950,000		956,126	788,000	-

③ 마포농수산물 시장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세외수입	4,013,579	3,926,761	-	-	-	-
경상적 세외수입	4,013,579	3,926,761			-	-
사용료 수입(지역경제과)	2,903,088	2,855,722			-	-
임대보증금	280,801	274,227			-	-
임대수입	2,622,285	2,581,495			-	-
사업수입	300,489	293,466			-	-
주차수입(지역경제과)	300,489	293,466			-	-
이자수입	1,750	2,175			-	-
임시적 세외수입	808,254	775,398			-	-
잡수입(관리비수입,수입임대연체료,플래카드게첨비등)	808,254	775,398			-	-

④ 의료보호기금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세외수입	416,000	295,247	-		322,346	273,085
임시적 세외수입	1,000	10,691			8,346	8,085
대불금 회수수입(사회복지과)	200	984			978	1,200
잡수입-부당이득금 등, 이자수입	800	9,707			7,368	6,885
순세계 잉여금	-	-		18,360	-	-
이월금	-	-		73,000	-	-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사회복지과)	-	-		36,500	-	-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사회복지과)	-	-		36,500	-	-
보조금	415,000	284,556			314,000	265,000
국고보조금 등-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과)	207,500	142,558			157,000	132,500
시도비보조금 등-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과)	207,500	142,278			157,000	132,500

★ 2010년도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구 별	구 분	재정자립도	
		자립도(%)	순위
총 로 구		78.5	3
중 구		82.9	1
용 산 구		62.7	7
성 동 구		52.0	8
광 진 구		44.0	13
동 대 문		46.2	10
중 랑 구		30.5	24
성 북 구		34.8	19
강 북 구		31.7	23
도 봉 구		35.9	18
노 원 구		27.4	25
은 평 구		33.8	21
서 대 문		38.6	16
마 포 구		47.1	9
양 천 구		43.6	14
강 서 구		33.8	21
구 로 구		41.2	15
금 천 구		37.8	17
영 등 포		66.5	6
동 작 구		45.0	11
관 악 구		33.9	20
서 초 구		79.8	2
강 남 구		77.1	4
송 파 구		73.9	5
강 동 구		44.5	12

4. 세출

★ 2010년도 자치구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구별	총 규 모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010년	2009당초	증감(%)	2010년	2009당초	증감(%)	2010년	2009당초	증감(%)
종로구	247,151	254,988	△3.1	214,877	222,040	△3.2	32,274	32,948	△2.0
중 구	291,680	278,317	4.8	264,647	247,761	6.8	27,033	30,556	△11.5
용산구	232,434	232,972	0.3	216,361	215,701	0.3	16,073	17,271	0.9
성동구	290,817	275,450	5.6	275,624	263,168	4.7	15,193	12,282	23.7
광진구	262,788	247,996	6.0	251,700	239,313	5.2	11,088	8,683	27.7
동대문	300,169	298,872	0.4	269,100	268,000	0.4	31,069	30,872	0.6
중랑구	303,987	300,243	1.2	295,874	290,727	1.8	8,113	9,516	△14.7
성북구	326,476	323,629	0.9	306,649	305,254	0.5	19,827	18,375	7.9
강북구	284,634	282,091	0.9	271,097	266,666	1.7	13,537	15,425	△12.2
도봉구	249,487	237,596	5.0	243,452	232,397	4.8	6,035	5,199	16.1
노원구	398,483	389,434	2.3	387,014	377,479	2.5	11,469	11,955	△4.1
은평구	313,260	308,317	1.6	305,400	299,000	2.1	7,860	9,317	△15.6
서대문	262,863	262,291	0.2	254,073	252,800	0.5	8,790	9,491	△7.4
마포구	292,549	287,695	0.7	265,794	261,200	1.8	26,755	26,495	1.0
양천구	298,743	290,260	2.9	285,282	277,426	2.8	13,461	12,834	4.9
강서구	377,691	379,990	△0.6	359,393	350,415	2.6	18,298	29,575	△38.1
구로구	289,603	281,827	2.8	277,200	272,100	1.9	12,403	9,727	27.5
금천구	250,831	247,192	1.5	239,767	239,627	0.1	11,064	7,565	46.2
영등포	323,327	314,300	2.9	277,100	270,000	2.6	46,227	44,300	4.3
동작구	277,849	278,119	△0.1	262,466	260,956	0.6	15,383	17,163	△10.4
관악구	326,524	319,620	2.2	304,549	303,300	0.4	21,975	16,320	34.7
서초구	375,625	363,657	3.3	316,595	315,961	0.2	59,030	47,696	23.8
강남구	577,988	575,520	0.4	519,949	537,156	△3.2	58,039	38,364	51.3
송파구	382,347	375,242	1.9	348,010	343,531	1.3	34,337	31,711	8.3
강동구	273,123	275,942	△1.0	248,202	239,337	3.7	24,921	36,605	△31.9

● 조직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국/과	2010		2009				2008		2007	
	예산	%	예산	%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예산	%	예산	%
계	265,764,000	100	261,147,980	100	279,873,052	333,907,383	239,611,926	100	208,808,639	100
감사담당관	183,684	0.07	151,825	0.06	193,607	309,384	116,584	0.05	135,776	0.07
행정관리국	100,026,718	37.64	101,101,169	38.71	96,769,271	101,092,222	89,509,742	37.36	84,284,084	40.36
총무과	78,050,543	29.37	77,369,198	29.63	76,959,777	77,137,317	70,628,166	29.48	65,558,003	31.40
공보관광과	1,347,992	0.51	1,474,545	0.56	1,447,354	1,452,635	1,347,167	0.56	1,645,177	0.79
자치행정과	13,873,264	5.22	14,694,322	5.63	14,887,140	15,476,976	9,127,878	3.81	11,300,677	5.41
문화체육과	3,196,096	1.20	3,604,100	1.38	3,475,000	3,631,243	4,424,482	1.85	2,635,929	1.26
전산정보과	2,428,631	0.91	3,074,320	1.18		3,394,051	3,109,182	1.30	2,097,253	1.00
민원여권과	1,130,192	0.43	884,684	0.34			872,867	0.36	1,047,045	0.50
기획재정국	9,636,518	3.63	9,523,241	3.65	13,050,558	17,997,286	12,412,959	5.18	14,740,727	7.06
기획예산과	5,959,357	2.24	6,564,557	2.51	6,666,791	9,536,499	6,472,095	2.70	7,770,062	3.72
지역경제과	1,974,448	0.74	1,129,248	0.43	6,072,009	6,409,280	4,399,499	1.84	5,944,156	2.85
재무과	305,836	0.12	282,028	0.11	311,758	451,650	250,582	0.10	171,473	0.08
세무1과	795,246	0.30	923,670	0.35		972,469	728,914	0.30	523,991	0.25
세무2과	601,631	0.23	623,738	0.24		627,388	561,869	0.23	331,045	0.16
주민생활국	122,550,196	46.11	116,626,648	44.66	121,645,342	140,142,071	103,411,083	43.16	80,476,261	38.54
주민생활지원과	16,903,830	6.36	12,512,286	4.79	13,776,933	20,344,839	11,284,366	4.71	12,775,288	6.12
사회복지과	45,046,474	16.95	45,079,640	17.26	48,428,343	54,572,205	37,945,974	15.84	23,122,000	11.07
가정복지과	31,159,601	11.72	30,107,335	11.53	30,491,817	32,078,072	30,726,651	12.82	20,970,479	10.04
교육지원과	5,805,080	2.18	4,502,929	1.72	5,395,175	9,392,427	3,615,541	1.51	2,528,622	1.21
청소년행정과	22,506,487	8.47	23,414,321	8.97	23,553,074	23,754,528	19,838,551	8.28	21,079,872	10.10
환경과	1,128,724	0.42	1,010,137	0.39				0.00		0.00
도시관리국	7,988,740	3.01	10,316,128	3.95	7,798,978	13,808,306	7,499,416	3.13	8,156,008	3.91
주택과	531,254	0.20	812,908	0.31		1,615,112	631,709	0.26	1,150,426	0.55
도시계획과	346,729	0.13	527,644	0.20		2,769,901	531,631	0.22	634,491	0.30
건축과	242,570	0.09	251,671	0.10			182,607	0.08	98,142	0.05
도시디자인과	994,549	0.37	1,732,757	0.66				0.00		0.00
지적과	511,938	0.19	771,474	0.30			413,614	0.17	166,730	0.08
공원녹지과	5,361,700	2.02	6,219,674	2.38	7,798,978	9,423,293	5,739,855	2.40	6,106,219	2.92
건설교통국	15,125,987	5.69	14,139,791	5.41	34,037,942	49,968,294	16,554,238	6.91	12,953,525	6.20
교통행정과	802,989	0.30	778,872	0.30	14,422,817	18,110,606	420,417	0.18	928,104	0.44
교통지도과	285,990	0.11	278,643	0.11		8,083,480	294,864	0.12	33,329	0.02
건설관리과	649,483	0.24	355,070	0.14	358,875	567,424	452,950	0.19	190,079	0.09
토목과	7,841,184	2.95	6,325,851	2.42	8,260,533	11,547,533	6,870,622	2.87	7,078,476	3.39
치수방재과	5,546,341	2.09	6,401,355	2.45	10,995,717	11,659,251	8,515,385	3.55	4,723,537	2.26
보건소	7,248,745	2.73	6,299,026	2.41	6,377,354	7,589,367	6,158,982	2.57	5,297,869	2.54
보건위생과	602,170	0.23	275,793	0.11	510,538	606,716	350,952	0.15	580,404	0.28
지역보건과	5,650,919	2.13	4,888,090	1.87	4,613,063	5,537,066	4,388,107	1.83	4,203,015	2.01
의약과	917,923	0.35	1,086,359	0.42	1,191,529	1,382,788	1,414,923	0.59	509,450	0.24
식품안전추진반	77,733	0.03	48,784	0.02	62,224	62,797	5,000	0.00	5,000	0.00
구의회 사무국	3,003,412	1.13	2,990,152	1.15		3,000,453	3,948,922	1.65	2,764,389	1.32

★ 일반 회계

<감사담당관>

1) 예산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예산액	2009			2008예산액	2007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감사담당관	183,684	151,825	193,607	309,384	116,584	135,776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19,030	24,870	-	70,943	18,020	22,380
업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비	9,600	9,600	-	-	9,600	14,600
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정운영	9,430	15,270	-	61,343	8,420	7,780
사무관리비	630	4,630	-	29,830	780	780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0	630	-	-	630	630
청렴도 조사대상부서직원교육 15만원*60명	-	-	-	9,000	-	-
공무원행동강령 자가시스템 11만원*60회	-	-	-	6,600	-	-
청렴관련 메시지(동영상)제작	-	-	-	4,000	-	-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	-	-	4,100	-	-
전직원 청렴교육 강사료	-	-	-	1,500	-	-
청렴대책 추진관련 부서포상금(19개부서)	-	-	-	16,600	-	-
청렴대책 추진 물품구입(프린터,네비게이션등)	-	-	-	5,273	-	-
공공운영비	4,600	6,440	-	-	6,440	7,000
공직자 재산조회	4,600	6,440	-	-	6,440	7,000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1,200	1,200	-	-	1,200	-
공직자청렴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2,000	2,000	-	-	-	-
공직자 청렴,비리 신고 포상금	1,000	1,000	-	-	-	-
구민불편해소로 살기좋은 마포구 실현	47,181	15,259	57,041	-	9,038	6,800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내실화	11,781	12,859	-	-	6,638	4,400
일반운영비	5,381	6,459	-	-	2,938	-
공공요금 및 제세	1,181	1,459	-	-	351	-
차량유지비(유류대+수리비등)	4,200	5,000	-	-	2,587	-
환경순찰 운영 업무추진	3,000	3,000	-	-	2,000	2,700
구민불편 적출,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3,400	3,400	-	-	1,700	1,700
고충민원 적극해소(직소민원실 업무추진)	2,400	2,400	-	-	2,400	2,400
고객만족 행정	33,000	-	41,782	-	-	-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	13,400	-	-	-	-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3,120	-	18,212	-	-	-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수당	3,500	-	-	-	-	-
e-러닝 콘텐츠 운영 및 서버 임대료	4,500	-	-	-	-	-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2,880	-	-	-	-	-
고객만족도 및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	2,000	-	-	-	-	-
포상금(친절왕,친절부서)	3,600	-	-	-	-	-
행정운영경비(감사담당관)	117,473	111,696	-	-	89,526	106,596
일반운영비	44,033	45,936	-	-	33,366	37,956
사무관리비	43,925	45,780	-	-	33,273	37,956
종합유선방송수신료	108	156	-	-	93	0
여비	73,440	65,760	-	-	56,160	68,640
현안업무추진여비(20,000원*14일*21명)	70,560	62,400 (13일*20명)	-	-	56,160 (13일*18명)	
여비 추가분(20,000원*6일*2명*12월)	2,880	3,360 (7일*2명)	-	-		
재무활동(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792		
청렴도 향상 인센티브 반환금				7,516		
시민불편 살피미 인센티브 반환금				1,276		

2) 조례

조례	중요내용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의 19세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임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신고기한 :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3) 담당공무원

팀명	담당업무
감사팀 (안종진) 3153-8151	●안종진 : 종합감사계획수립 및 조정업무총괄, 5급이상 공무원처분사항, 기관감사계획수립 및 전반사항, P C R M 및 부서홍보 ●조광현 :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비위공무원 신분처분 제정 및 징계사항,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감찰활동), 취약분야 특별감사 등 현안사항 ●안제동 : 부분감사계획수립 및 실시, 감사원 감사 관련사항, 서울시 감사관련사항 ●임소영 : 예산·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과 서무업무 ●이영근 :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박형근 :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감사집행전말 관리, 공익운영
조사팀(김현중) 3153-8161	●김현중 : 5급이상 비위공무원 처분, 특명사항 조사처리 ●최중 : 6급이하 공무원 비위통보, 특명사항등 조사처리, 소청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타 분장되지 않은 사항 ●정철수 : 특명사항 조사처리, 정보사항 조사처리 ●정훈 : 특명사항 조사처리, 시책업무 추진사항 조사·점검, 공직자 부정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민원조사팀 (김숙자) 3153-8181	●김숙자 : 민원사항 및 고객만족 업무총괄, 민원사항조사 및 팀 종합계획 ●김현정 : 유기한민원 처리실태 점검, 인터넷민원(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상담) 운영관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기타 타직원에 속하지 않는 팀업무 ●남진숙 :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전화친절히 받기추진, 행정서비스현장에 관한 사항, 해피콜 운영, 친절·불친절 공무원관리 ●임중훈 : 진정서 접수처리 및 전산관리 등, 다수인 민원 및 잠재민원 관리. 민원처리 관련 보고사항, 고충민원(불친절민원 포함) 및 조사위탁분(감사원,서울시) 직접조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환경순찰팀 (장봉호) 3153-8171	●장봉호 : 환경순찰팀 업무총괄, 환경순찰 종합계획수립 ●이영규 : 기획환경순찰, 환경순찰 실적관리 및 인센티브추진, 합동순찰, 시민불편살피미, 일일순찰 ●엄길석 : 순찰업무지원 및 순찰차량관리, 환경순찰 적출처리사항 사후확인
직소민원실 (이순홍) 3153-8191	●이순홍 :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종합계획, 직소민원(방문,전화) 접수, 처리 총괄 ●정은택 : 직소민원(전화,방문) 접수처리 ●이정화 : 직소민원(전화,방문) 접수처리

< 행정관리국 >

① 총무과

1) 예산

부서 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편성목	2010예산액	2009			2008예산액	2007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총무과	78,050,543 시 613,101 구 77,437,442	77,369,198 국 237,070 시 573,863 구 76,558,265	76,959,777 국 342,670 시 586,816 구 76,030,291	77,137,317 국 352,142 시 705,255 구 76,079,920	70,628,166 국 494,197 시 486,675 구 69,647,294	65,558,003
원활한 행정지원 및 규정운영	272,575	272,550			229,716	246,799
주요 행사 개최	20,540	18,650			16,940	19,860
신년인사회(LED모니터 등)	7,520	4,820			3,250	8,860
구민의 날 기념식	7,020	4,830			4,690	
업무추진비(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6,000	9,000			9,000	11,000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26,000	33,600			25,000	25,000
자매결연도시(국내·국외) 우편요금	100	-			-	-
우호협력도시친선방문(중국석경산구)(130만원*8명)	10,400	9,600(120*8)			10,000(100*8)	10,000
중국 일본 등 국제교류 추진방문(150만원*3명*2회)	-	9,000			-	-
업무추진비	5,500	5,000			5,000	5,000
우호협력도시 초청행사경비(석경산구)	5,000	5,000			5,000	5,000
자매결연지 초청방문경비(예천 신안 청양)	500	-			-	-
한국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0	10,000			10,000	10,000
효율적인 대외협력추진	30,470	30,470			26,470	26,470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참석수당(7만원*1명*1회)	70	70			70	70
의정비 심의위원 참석수당(100,000원*10명*4회)	4,000	4,000			-	-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2,400	2,400			2,400	2,400
의정업무 활동비(?)	24,000	24,000			24,000	24,000
주요 시책사업 및 규정운영 지원	176,725	170,550			161,306	175,469
인쇄비 및 유인물(직원업무용수첩 간부수첩등)	21,500	14,200			14,456	
치안관련 홍보물 제작	6,000	6,000			900	
급료비(방패훈련 직장민방위대비상소집훈련매식)	5,025	3,250			2,950	
업무추진비	144,200	146,200			143,000	139,000
각종 회의비	7,000	7,000			7,000	
각종 주요 행사 추진비	6,000	6,000			6,000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10,200	10,200			12,000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	8,000	8,000			8,000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100,000	100,000			100,000	
군경위문 및 훈련지원 등 경비	10,000	10,000			10,000	
치안협의회 업무추진비	3,000	5,000			-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구축	18,840	19,280			-	-
사무관리비	17,140	15,720			-	-
글로벌 서포터즈 외국어 위탁교육	9,720	9,720			-	-
외국어 위탁교육 교재비	1,000	1,000			-	-
글로벌서포터즈 아카데미 개최	4,000	4,000			-	
대외교류 의식공감 강사료	1,000	1,000			-	
대외기관과의 MOU체결 행사개최	420	-			-	
외국어 번역료	1,000	-			-	
마포문화체험단 운영(입장료등) 10,000원*30명*4회	-	1,200			-	
글로벌마포통역관 아카데미 참가	-	1,000			-	
업무추진비	1,700	1,360			-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500	-		-	
	글로벌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500	1,000		-	
	MOU체결 실무자와의 간담회 개최	700	-		-	
	마포문화체험단 간식비등 3,000원*30명*4회	-	360		-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1,521,699	2,451,436	2,212,777	1,796,859	1,086,390
청사 유지관리		1,439,500	2,379,012	2,140,353	1,583,813	877,593
	인건비(청사관리 일사역인부 인건비) (1명*9월)	8,756	17,023(2*9)		41,094(5*9)	45,292
	사무관리비	225,430	222,930		252,439	263,499
	태극기 구기시기,세마을기	480	480		1,080	
	청사관리 소모품(청소용품,화장지등)				23,426	
	청사 화단조성 및 화분관리	12,000	12,000		1,500	
	간부소파 의자방석 등 세탁	560	560		2,076	
	청사관리용품(침구류등)	5,040	5,040		400	
	파복비(청원경찰,청사방호원,청사관리원)	4,050	2,350(1,3,0)		3,300(1,1,11)	
	일속직 수당	203,300	202,500		207,110	
	장비이설비(신청사 이전)				7,675	
공공운영비		1,059,174	1,205,554		630,337	556,802
	전화사용료	211,440	251,760		98,100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2,655	2,655		2,655	
	청사 전기요금(4,200만원*12월)	504,000	540,000		248,000	
	상하수도 요금(1,100만원*6월)	66,000	75,600		37,200	
	도시가스 요금(1,550만원*12월)=연료비(2008)	186,000	210,000		117,704	
	전용회선 사용료(행정전화)	12,649	22,603		25,920	
	전국단일망 이용료	2,400	2,400		1,834	
	정화조 청소(6개소)	-	-		2,500	
	교통유발부담금	-	-		687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	-		12,000	
	지하상환실사용 회선료	1,140	1,140		864	
	발전기 유류대	10,890	11,616			
	전기시설 유지(유류대,자재비)	-	-		5,800	
	보일러실 유지(보수)	-	-		14,355	
	물탱크보수 및 청소	-	-		1,560	
	정화조 유지(소독)	-	-		1,530	
	무인경비용역비(3별관IPTV방송실)	-	-		4,170	
	청사전기안전점검 대행료 구청사,신청사	-	-		15,000	
	가스시설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수수료	-	-		2,266	
	청사 유지 관리	50,000	50,000		30,813	
	청사건물유지(20년이하-1별관,3별관)	-	4,738		6,031	
	청사건물유지(5년이하-신청사)	-	-		4,758	
	청사건물유지(20년이상-본관,보건소,2별관의회)	-	22,042		20,024	
	방송 및 음향 유지관리	2,000	1,000		5,379	
	교환기 유지관리	10,000	10,000			
청사문화행사 개최(75만원*10회)		7,500	6,700		-	-
업무추진비		2,640	3,440		-	-
	청사시설관리 업무추진	1,440	1,440		-	-
	청사 문화행사 업무추진	1,200	2,000		-	-
청사시설 보완포괄 공사		100,000	700,000	500,000	-	-
대아협력회의장 구축(신청사)					150,000	-
민간위탁금		-	212,665		-	-
집단민원발생대비 청사방호14만원*10명*20회		-	28,000	0	-	-

구청사 유지관리	-	79,200			-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36,000			-	-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	69,465	0		-	-
자산취득비(함온합습기 2대)	36,000	-				
자산취득비(발재센터 전자복사기 유압사다리)	-	10,700	69,506			
자산취득비(신청사 부속실 통신장비구매)					509,943	-
관용 차량 관리 및 업무택시 운영	82,199	72,424			213,046	152,997
업무택시 이용료 10,000원*100건*12월	12,000	12,000			12,000	30,000
환경개선부담금(경유사용관용차량) 4대*2회	1,120	1,120			1,120	
자동차세(승용차13대 승합(대형)1대 승합(중소형)3대 화물(소형)1대	1,965	1,530 (9,1,3,1)			1,824 (11,1,3,1)	
보험료(승용차(대형)1대 승용차(중형)2대 승용차(소형)6대 승 용차(경형)4대 승합(대형)1대 승합(중형)1대 승합(소형)2대 화 물(소형)1대	6,400	5,700 (1,2,2,4,1 1,2,1)			5,355 (0,3,8,0,1 1,2,1)	
차량유지비(유류대+수리비기타)(차량은 위와 동일)	60,714	52,074			50,108	
대형승합(45인승) 취득비					142,639	22,160
공정한 인사 운영	432,364	510,255	547,455		784,151	342,622
인사 및 조직관리	58,179	211,270	172,870		215,999	99,970
인건비(출산휴가등 대체인력 인건비)	44,689	159,277			161,593	86,874
일반운영비	8,490	8,593			42,581	9,096
인쇄비, 간부직위표제작 공무원증 발급	4,050	4,705			2,800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4명*12회*80%	3,840	2,688(7*4*12)			2,800	
공무원증 신규제작					35,781	
행사운영비(플래카드)	600	1,200			1,200	1,200
인사 업무추진비	5,000	5,000			5,000	4,000
민간위탁 부속실 인력운영비 160만원*2명*12월	-	38,400	0			
공무원증 발급기 구매					6,825	-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183,585	207,385			352,552	65,052
사무관리비(표창장 제작)	585	585			552	552
포상금	183,000	206,800			352,000	64,000
구청장표창 부상품(도서상품권) 10만원*130명	13,000	12,000			12,000(120명)	
성과포상금	170,000	190,000			260,000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	-			80,000	
친절공무원부상(도서상품권)2만원*20명*12월	-	4,800			-	
퇴임직원 격려	190,600	91,600			215,600	177,600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300만원*41명	123,000	-			-	
청년 명예퇴직공무원 행사비 300만원*2회	6,600	6,600			6,600	
청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 100만원*51명	51,000	15,000(15명)			36,000(36명)	
포상금(명예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10,000	10,000			3,000(100*3)	
포상금(연금법상재직기간30년이상) 600만원*10명	-	60,000	30,000		90,000(15명)	
포상금(연금법상재직기간30년미만) 500만원*16명	-	-			80,000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592,297	986,377	695,997		926,830	782,550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	4,000	223,380	29,000		182,600	177,250
신규직원 현장체험 학습	4,000	4,000			4,000	
직원 한마음 연수(훈련비,훈련복,교재,조식 1,200명)	-	212,400	24,000		172,800	
직원한마음 연수용역 심사수당	-	980	0		-	
전직원 일체감훈련 업무추진비	-	1,000			1,000	
전직원 일체감훈련 시상금	-	5,000	0		4,800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324,000	356,550			315,900	186,300
사무관리비	234,500	262,800			214,000	101,700
서울시립대학(사내대학) 250만원*39명*2회*50%	97,500	101,400(260)			104,000(40)	

	사이버대학 40만원*20명*2회	16,000	25,000(50*25)			15,000(50*15)	
	일반대학 150만원*3명*2회	9,000	15,000(150*5)			10,000(200*5)	
	서강대학특수대학원 200만원*6명*2회	24,000	30,000(250*6)			16,000(200*4)	
	일반대학원 250만원*5명*2회	25,000	25,000			20,000(400*5)	
	방송통신대학교 30만원*5명*2회	3,000	4,000(40*5)			4,000(40*5)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15만원*200명	30,000	30,000			30,000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15만원*200명	30,000	30,000			15,000(15*100)	
여비		88,500	92,750			100,900	83,600
	서울시 교육기관 교육여비	31,500	28,000			28,000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37,000	44,750			52,900	
	관외 출장 여비	20,000	20,000			20,000	
	위탁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1,000
자기주도적 상시 학습문화 조성		117,497	115,247			93,010	116,000
사무관리비		113,297	111,047			78,810	115,000
	직무과정 사이버교육비 400만원*2회	8,000	16,000(400*4)			24,000(600*4)	
	직장교육 활성화(강사료,교재비등)	30,000	20,000			20,000	
	업무능력향상 학원 수강료 지원 20만원*200명	40,000	40,000			10,000(10*50*2)	
	직급별 자격취득 응시료지원 3만원*130명	3,900	4,000			-	
	한문사이버강좌 운영유지비	6,000	6,000			6,000	
	직원정보화교육 3만원*2시간*21일*12월	23,870	23,547			17,310	
	정보화 경진대회	1,527	1,527			1,500	
	능력개발 관련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직장교육활성화 추진 여비	-	-			10,000	-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	3,200	3,200			3,200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126,000	258,400	162,400		291,600	302,000
	특정업무(조사,협력체결등), 국제회의 국제행사등	30,000	60,000			-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등 240만원*38명	91,200	192,000(80명)	96,000(40명)		-	
	해외배낭연수 실시(240만원*100명)	-	-			240,000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250만원*20명)	-	-			50,000	
	장단기교육훈련등을위한국외훈련여비 240만원*2명	4,800	4,800			-	
	업무능력 향상 해외시찰발표대회 시상	-	1,600			1,600	
조직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20,800	32,800			43,720	1,000
	동아리 연구활동비 50만원*20개*1회	10,000	13,000			10,000	-
	지체학습 관련 업무추진	1,000	1,000			1,000	1,000
	대회의 날 운영	-	-			20,000	-
	학습동아리 활동	3,000	3,000			-	-
	포상금(문화상품권 독서마일리지복지포인트전환)	3,200	9,200			9,120	-
	독서릴레이 도서구입 1만2천원*300권	3,600	3,600			3,600	-
직원 복지 증진		4,453,661	3,391,188			2,072,803	1,769,378
노동단체와의 합리적 관계구축		21,204	21,704			20,544	11,344
	단체협상 추진(속기록,책자구입)	1,044	1,944			4,944	
	공무원 노사 워크숍 30만원*30명	9,000	9,000			9,000	
	상용직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 80만원*2회	1,600	1,200(60*2)			1,000	
	노무상담료 33만원*12월	3,960	3,960			-	-
	복지 노무 업무추진	5,600	5,600			5,600	5,200
직원 후생복지 증진		4,432,457	3,369,484			2,052,259	1,758,034
	임차료	119,130	85,592			59,132	73,600
	직원하계휴양소 이용료 지급 13만원*20살*30박	78,000	60,000(10만)			46,332	
	콘도이용료 지원 5만원*914박*90%	41,130	25,592(4만)			12,800(32*400)	
	포상금	3,747,510	2,659,580			1,630,200	1,244,820
	선택적 복지제도 천원*2,365포인트*1,364명	3,225,860	2,436,980			1,455,300(1,100포)	

			(1,820포인트)			인트*1,323명)	
	단체보험 가입	215,650	-			-	
	6세미만미취학아동보육료지원10만원*255명*12월	306,000	222,600			174,900(5*265)	
	국고대여 장학금	565,817	624,312			362,927	439,614
예비군 육성 지원		112,590	112,155			108,514	105,182
	직장예비군중대본부 업무추진비	420	420			420	4,420
	자치단체 등 이전	41,250	36,500			52,300	35,880
	예비군부대 운영지원(훈련장보수등)	31,250	26,500			42,300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0,000	10,000			10,00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0,920	75,235			55,794	64,882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조준경 수통 우의스크린등)	70,920	75,235			55,794	64,882
행정운영경비(총무과)		69,626,734 시 613,101 구 9,013,633	68,584,530 국 237,070 시 73,863 구 67,773,597		68,594,002 국 246,52 시 573,863 구 67,773,597	64,709,293 국 494,197 시 486,675 구 63,728,421	61,225,082
인력운영비(총괄)		69,288,280 시 613,101 구 68,675,179	68,241,869 국 237,070 시 573,863 구 67,430,936		68,251,341 국 246,542 시 573,863 구 67,430,936	64,344,189 국 494,197 시 486,675 구 63,363,317	60,418,088
인건비		53,747,637 시 613,101 구 53,134,536	53,615,491			49,511,292	47,965,127
	보수	52,552,512	52,383,724				
	구청장 급여 6,275,250*1명*12월	75,303	75,303			75,327	
	부구청장 급여 5,980,750*1명*12월	71,769	66,987 (5,582,250)			69,266 (5,670,080)	
	국장 급여 5,214,000*5명*12월	312,840	312,840			303,875	
	국장(공로연수) 5,214,000*2명*12월1명*6월	156,420	125,136			-	
	보건소장 급여 4,861,910*1명*12월	58,343	52,272 (4,356,000)			51,128	
	구분청 기본급 일반직(636명)	14,288,794	14,333,338 (633명)			14,272,815 (622명)	
	구분청 기본급 기능직(187명)	4,217,655	4,459,369 (201명)			3,721,450 (223명)	
	구분청 정근수당18,506,449천원*1/12월*0.96	1,480,516	1,503,416		1,943,675	1,976,339	
	동주민센터정근수당6,294,362천원*1/12월*0.96	503,549	509,206				
	동주민센터 기본급 일반직(217명)	4,762,551	4,934,807 (224명)			5,420,030 (234명)	
	동주민센터 기본급 기능직(69명)	1,531,811	1,430,266(66명)			853,124(55명)	
	보건소 기본급 일반직(85명)	2,045,866	1,838,503(76명)			1,658,179(70명)	
	보건소 기본급 기능직(16명)	349,224	330,012(15명)			188,883(13명)	
	보건소 정근수당 2,395,090천원*1/12월*0.96	191,608	173,482			150,425	
	구분청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3,393,520	3,029,944			2,931,576	
	구분청 시간외근무수당 기능직	907,100	866,231			856,597	
	구분청휴일근무수당 청소차량운전 정비원	76,448	76,448			63,901	
	구분청 가족수당	611,544	619,650			318,989	
	구분청 대우공무원수당(일반직, 기능직)	435,272	442,005			430,844	
	구분청 자녀학비 보조수당	261,819	265,289			264,976	
	구분청정근수당가산금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803,400	756,000			778,680	
	구분청 위험근무수당	28,440	28,080			29,640	
	구분청특수업무수당(전산 기술 민원 복지 안전)	171,060	169,200			172,200	
	동주민센터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1,149,794	1,063,659			1,317,134	
	동주민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기능직	328,118	274,136			203,535	
	동주민센터 가족수당	210,726	212,936			212,936	
	동주민센터 대우공무원수당(일반직, 기능직)	148,044	149,707			150,201	

	동주민센터 자녀학비보조수당	90,218	91,164		89,881	
	동주민센터 정근수당가산금	275,520	267,480		272,640	
	동주민센터특수업무수당(민원 사회복지 등근무)	258,840	269,880		270,240	
	보건소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463,957	371,342		332,649	
	보건소 시간외근무수당 기능직	75,056	63,667		47,603	
	보건소 가족수당	75,154	67,786		61,892	
	보건소 자녀학비보조수당	32,177	29,022		26,126	
	보건소 정근수당 가산금	88,920	86,160		78,360	
	보건소 위험근무수당	46,920	43,680		41,400	
	보건소특수업무수당(기술·의료·민원자동차운전)	63,420	61,620		62,340	
	보건소 대우공무원수당	56,333	51,004		44,225	
	모범공무원 수당	8,400	7,800		6,000	
	육아휴직 수당	114,000	108,000		90,000	
	업무대행 수당	1,200	3,000		0	
	조기 및 명예퇴직 수당	500,000	500,000		200,000	
	정액급식비 구분청(일반 기능직) 13만원*830명*12월	1,294,800	1,315,080 (843명)		1,329,120 (852명)	
	정액급식비 동주민센터(일반 기능직) 13만원*279명*12월	435,240	436,800 (280명)		450,840 (289명)	
	정액급식비 보건소(일반 기능직) 13만원*105명*12월	163,800	152,880 (98명)		131,040 (84명)	
	교통보조비 구분청(연봉대상자 제외)	1,244,160	1,257,360		1,262,280	
	교통보조비 동주민센터	432,000	435,720		434,280	
	교통보조비 보건소(연봉제 계약직 제외)	154,680	139,080		124,800	
	명절휴가비 구분청18,506,449천원*1/12*120%	1,850,645	1,879,271		1,831,817	
	명절휴가비동주민센터6,294,362천원*1/12*120%	629,437	636,508		638,608	
	명절휴가비 보건소2,395,090,000원*1/12*120%	239,509	216,852		188,031	
	가계지원비 구분청 18,506,449천원*1/12*16.7%*12월	3,090,577	3,138,383		3,059,134	
	가계지원비 동주민센터 6,294,362,000원*1/12*16.7%*12월	1,051,159	1,062,968		1,066,474	
	가계지원비 보건소 2,395,090,000원*1/12*16.7%*12월	399,981	362,143		314,012	
	연가보상비 구분청 연봉+월급*1/12*1/30*11월	576,386	850,045(16일)		567,248	
	동주민센터6,294,362,000원*1/12*1/30*11월	192,328	282,893(16일)		195,130	
	보건소연봉+월급*1/12*1/30*11월	74,361	97,913(16일)		58,484	
	기타직 보수	1,195,125	1,231,767		1,129,597	915,028
	구분청 청원경찰 급여 1,963,600원*1명*12월	23,564	23,331		23,089	
	구분청 계약직(연봉)	515,376	513,959		455,513	
	구분청 청원경찰 정근수당	1,886	1,867		1,848	
	구분청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	4,567	4,110		4,046	
	구분청 시간외근무수당 계약직	71,823	64,585		57,141	
	구분청 가족수당(청원경찰 계약직)	18,480	18,480		16,080	
	구분청 자녀학비보조수당	8,790	8,790		7,531	
	구분청 정액급식비(청원경찰 계약직)	24,960	24,960		21,840	
	구분청 교통보조비(청원경찰)	1,440	1,440		1,440	
	구분청 연가보상비(청원경찰 계약직)	11,115	16,114		9,893	
	구분청 명절휴가비(청원경찰)	2,357	2,334		2,309	
	구분청 가계지원비(청원경찰)	3,936	3,897		3,849	
	구분청 정근수당 가산금(청원경찰)	1,560	1,560		1,560	
	구분청 대민활동비(청원경찰)	600	600		600	
	보건소계약직급여(의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336,768	373,577		356,596	
	보건소시간외근무수당	46,938	46,885		44,735	

	보건소 자녀학비 보조수당	4,689	4,689			4,635	
	보건소 가족수당	7,028	7,028			7,028	
	보건소 의료업무수당	89,976	90,252			90,192	
	보건소 정액급식비	12,480	12,480			12,480	
	보건소 연가보상비	6,792	10,959			7,192	
	업무추진비	529,305	533,580			521,140	515,86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62,200	263,500			261,200	261,200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154,000	154,000			140,000	
	동장(인구3만미만)660만원*14개동	92,400	85,800			114,000(600*19)	
	동장(인구8만미만)790만원*2개동	15,800	23,700			7,200(720*1)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5,605	56,540			56,660	56,705
	직원사기진작-구분청(851명)	40,265	41,240(916명)			40,910(894명)	
	직원사기진작-동주민센터(274명)	9,220	9,220(274명)			9,670(289명)	
	직원사기진작-보건소(95명)	3,800	3,680(92명)			3,680(92명)	
	직원사기진작-구의회사무국(29명)	2,320	2,400(30명)			2,400(30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1,500	213,540			203,280	197,960
	감사담당관	4,200	4,200			4,200	
	행정관리국 6개부서	27,600	27,300			29,280	
	기획재정국 5개부서	21,540	25,920			25,920	
	주민생활국 6개부서	25,800	22,560			22,560	
	도시관리국 6개부서	25,500	25,740			21,540	
	건설교통국 5개부서	23,940	24,780			25,740	
	동 주민센터	67,200	67,200			61,200	
	보건소	15,720	15,840			12,840	
	직무수행경비	2,737,500	2,800,020			2,801,100	2,749,020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12,560	110,160			116,160	116,160
	구청장 65만원*12월 부구청장 60만원*12월	15,000	15,000			15,000	
	국장35만원*5명*12월 과장10만원*31명*12월	58,200	55,800			55,800	
	직장예비(군중대장8만원*1명*12월)	960	960			960	
	동장15만원*16명*12월	28,800	28,800			36,000	
	보건소장40만원*1명*12월 과장10만원*4명*12월	9,600	9,600			8,400	
	직급 보조비	2,016,780	2,004,420			1,997,100	1,949,100
	구청장65만원*1명*12월	7,800	7,800			7,800	
	구분청 일반직	1,074,600	1,064,580			1,013,580	
	구분청 기능직	251,280	264,960			276,960	
	구분청 청원경찰	1,260	1,260			1,260	
	구분청 계약직	28,500	28,500			25,140	
	동주민센터(일반직 기능직)	452,160	454,380			456,120	
	보건소(일반직 기능직)	171,240	182,940			131,640	
	보건소(계약직)	29,940	29,940			29,940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08,160	685,440			687,840	683,760
	구분청 대민활동비(6급이하)	409,200	493,200			495,600	
	법무,감사,세무,예산,관재,복식부기,단체회계,계약	198,960	143,640			143,040	
	보건소 대민활동비	59,400	48,600			49,200	
	포상금(성과 상여금)	3,044,452	3,061,781			2,979,851	1,876,066
	연금 부담금 등	9,129,386	8,130,997			6,304,042	5,820,139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5,602,717	4,984,164			3,836,032	
	퇴직수당 부담금	1,999,518	1,683,856			1,178,057	
	재해보상 부담금	83,144	72,065			37,659	
	국민건강보험금	1,444,007	1,390,912			1,252,294	1,127,542

	장기요양보험	65,875	54,140			-	-
	여권업무 담당직원 인건비		-	-	78,438	-	-
	부조급여 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기본 경비(총무과)		338,454	342,661			365,104	806,994
	사무관리비 (급량비7,000원*20일*61명*12월)	133,494	133,621			106,144 (급량5천원*18일)	229,794
	현안업무 추진여비20,000원*14일*61명*12월	204,960	209,040 (67명*13일)			258,960 (83명*13일)	577,200
재무활동(총무과)		1,038,623	1,060,707	1,130,172	1,179,801	-	-
	내부거래지출(공기업 경상 전출금)	1,038,623	1,060,707	1,130,172		-	-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위탁	964,983	1,060,707			-	-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위탁	73,640	-	69,465		-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사업 반환금		-	-	49,629	-	-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마포구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30(성산동 370)에 둔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당직수당은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50,000원씩 지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세계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개정 '95.06.26)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세계화 인식제고 방안 및 세계화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95.06.26) 6.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제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4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220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9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의2(비밀엄수)제5조(친절·공정) 제6조(근검절약)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출장공무원) 제9조(파견근무) 제10조(겸임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복장 및 제복) 제13조(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및 연장)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8조(연가일수) 제22조(병가) 제23조(공가)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8조(검칙허가) 제29조(국외여행) 제30조(정치적 행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

3) 담당업무 : 정원배 과장 02-3153-8210

팀 명	담 당 업 무
총무팀 (박한호) 3153-8201	●남기석 : 의전, 행사 ●조만호 : 간부회의 및 차량관리 ●양상현 : 예산 편성·결산, 서무에 관한 사항 ●황은하 : 과 직원 봉급 및 수당, 업무택시 ●박명제 : 당직 및 보안 ●이도형, 윤효규, 이홍규, 한완전 : 차량관리 ●전명호, 정천구 : 종합상황실근무, 청사방호, 민원안내
인사팀 (한덕희) 3153-8211	●김명식 : 일반직 인사관리, 인사운영 종합계획 ●오상철 : 조직 및 현정원 관리 ●강대희 : 기능직·계약직·별정직 인사관리 ●이재선 : 복무 및 상훈 ●허만 : 인사전산 및 호봉
능력개발팀 (임영순) 3153-8221	●차미영 : 직원 한마음 연수 ●유호선 : 학습동아리 지원, 직원독서문화운동 ●조현우 : 상시학습시스템 실적 관리
복지노무팀 (조충연) 3153-8231	●차민철 : 공무원 노동조합업무, 콘도 및 휴양소 운영 ●김문균 : 비정규직관리, 건강·고용·산재보험 ●이미나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연금관리공단 및 시상조회 업무
대외협력팀 (조태영) 3153-8241	●최승은 : 국제교류 및 국내외 자매결연 ●심경식 : 임시회, 정례회 일정관리 의정비 심의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청사관리팀 (류기화) 3153-6301	●나동안 : 청사의 전기,통신,기계분야 시설물 관리 총괄 ●이덕상 : 청사시설 위탁 용역업체 관리 ●조귀형 : 통신실 ●최태범 : 구내 전자교환기및 방송시설 유지관리 ●이진우 : 통신서버, TPS 및 통신장비 관리운영, 음향장비 관리 및 운영 ●김용규 : 청사 기계, 설비 시설 점검 ●차재용 : 청사 전기시설 점검 ●김유태 : 청사 수방, 제설 ●이영복 : 지하주차장 관리, 생태민원실 관리 ●김학만, 정만식 : 청사관리

② 공보관광과

1) 예산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공보관광과	1,347,992	1,474,545	1,447,354	1,452,635 시 4,634 구 1,448,001	1,347,167	1,215,104	1,645,177
구정홍보 기능 강화	1,165,608	1,290,336	1,278,145		1,270,749	1,163,836	1,638,159
연론 보도 지원활성화	409,919	386,725	374,534		305,287	287,593	415,399
구정 연론 보도 지원 강화	57,525	84,715	72,524		51,535	46,475	55,079
일반 운영비	37,625	35,815			33,635	28,656	35,079
사무관리비	36,725	34,915			33,085	28,121	33,529
공공운영비	900	900			550	535	1,550
업무추진비	18,000	16,000			16,000	15,918	20,000
포상금	1,900	1,900			1,900	1,900	0
자산취득비			18,809				
연론 모니터링 강화	352,394	302,010			253,752	241,118	360,320
일반 운영비	352,394	302,010			253,752	241,118	360,320
사무관리비	352,394	302,010				241,118	
신문구독료	313,464				224,352		
지역 언론사 정기구독	99,444				109,440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	207,180				110,592		
구청장, 부구청장, 공보관광과	6,840				4,320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755,689	903,611			965,462	876,242	1,222,760
신문(내고장 마포) 발간 운영	289,524	280,058			256,270	212,376	200,320
일반 운영비	266,364	261,698			200,910	199,642	154,680
사무관리비	266,364	261,698			200,910	199,642	154,600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2,853	2,040
일반보상금(기자 편집위원 독자투고 보상금)	20,160	15,360			15,360	9,880	8,400
민간이전 (인터넷 신문 운영)					37,000		35,200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25,080	37,440			19,840	13,509	78,490
일반 운영비	25,080	37,440			19,840	13,509	78,490
사무관리비	25,080	37,440			19,840	13,509	78,490
PCR시스템 활성화 (사이버 구정시스템 활성화)	8,714	69,010			6,800	6,771	0
일반 운영비	3,714	4,010			3,200	2,684	0
사무관리비					3,200	2,684	0
공공운영비	3,714	0					
업무추진비	2,000	2,000					
일반보상금 (참여회원 도서상품권)	3,000	3,000			3,600	4,087	0
주민소통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마포iTV 운영	375,167	455,474			672,452	636,453	653,950
일반 운영비	73,212	20,432			58,050	50,650	3,950
사무관리비	28,165	16,040			58,050	48,752	2,950
공공운영비	45,047	4,392			2,000	1,898	1,000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2,972	0
민간이전 (방송 운영비)	290,000	290,000			250,000	242,109	250,000
시설비 및 부대비 (방송 스튜디오 설치)					135,000	133,430	0
자산취득비	8,955	22,042			226,402	207,292	400,000
마포iTV 활성화					10,100	7,132	290,000
일반 운영비					600	600	50,000
사무관리비					600	600	50,000
업무추진비					4,000	3,992	0
일반보상금					5,500	2,540	0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57,204	61,629					
일반 운영비	33,504	55,629					
사무관리비	31,014	51,629					
공공운영비	2,490	4,000					
업무추진비	3,000	2,000					
일반보상금 (UCC 공모)	20,300	3,400					
포상금 (UCC 우수부서)	400	600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85,887	112,240	97,240		156,940	177,170	45,000
마포 문화 관광 마케팅	85,887	112,240	97,240		156,940	177,170	45,000
마포 문화 관광 홍보추진	80,487	103,840	88,840		92,340	124,725	45,000
일반 운영비	77,487	85,840			89,340	43,966	42,000

	사무관리비	77,487	65,840			89,340	43,966	39,000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3,759	3,000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	0				
	연구개발비						50,000	46,000
	포상금						23,000	23,000
	자산취득비						8,000	8,000
	양화진 홍보관 운영	5,400	8,400			14,600	2,945	0
	일반 운영비	5,400	8,400			14,600	2,945	0
	사무관리비	5,400	8,400			14,600	2,945	0
	노천갤러리 확충사업 (벽화사업)					50,000	49,500	0
	시설비 및 부대비 (방음벽 벽화작업)					50,000	49,500	0
	행정 운영 경비 (공보관광과)	96,497	71,969			76,418	50,787	7,018
	기본 경비 (공보관광과)	96,497	71,969			76,418	50,787	7,018
	기본경비	96,497	71,969			76,418	50,787	7,018
	일반운영비	39,377	31,409			26,498	18,867	7,018
	사무관리비	39,377	31,409			26,498	18,867	7,018
	매식비 7,000원*17명*20일*12월	28,560				17,280		
	여비 20,000원*14일*17명*12월	57,120	40,560			49,920	31,920	0
	재무활동 (공보관광과)				647	480	480	
	보전지출				647	480	480	
	반환금(관광정책평가 인센티브 사업 반환금)				647	480	480	

2) 조례

조례	중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문의 제호는 "내고장마포"로 한다. ▶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 ▶ 신문은 월 1회, 매월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문의 발간·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관광과장이 주관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둔다.

3) 담당업무 : 이수복 과장 3153-8260

팀명	담당업무
홍보기획팀장 이홍주 3153-8261	● 송인수 : 홍보종합계획수립, 예산 및 결산,복무,회계,물품관리,보안 감사관련 업무, 시,구의회 관련업무 전반, 주요업무계획 관련사항 전반, 마포FM 운영 현황 관리(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 ● 권준희 : 내고장마포 소식지 발간, 서울시, 자치구 대상 홍보협력 사항 파악 및 협조 ● 김지은 : 맞춤형정책고객서비스 콘텐츠제작 및 뉴스레터 발송, PCRM 회원대상 설문조사 진행 및 구민의견 관리, 정보광장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강혜영 : PCRM 회원 확보 및 시스템 운영, 구 상징물 관리, 홍보물 발간 및 통계(홍보물 심의), 구보 발간(주1회), 전광판 및 지하철행선기 홍보 콘텐츠 수립 및 관리
인터넷미디어팀장 이문희 3153-8271	● 강동룡 : 인터넷방송 객원기자 위,해촉, 월례회의 개최 운영, 인터넷방송 및 UCC홈페이지 관리, UCC 공모전 개최 및 이벤트 실시, UCC 영상게시 등 콘텐츠관리,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아이디어발굴 및 지원 등 ● 백성미 : 구 홈페이지 자료(모니터링,홍보관련)관리 및 정비, 공감소통, 모니터링,커뮤니티 등(구홈페이지), 인터넷 포털관 ● 이현수 : 인터넷방송 위탁업체 계약, 인터넷방송 위탁업체 운영관리, 마포아이 TV 방송 편성표 작성, 영상 촬영, 신규 콘텐츠 개발, 방송국자문회의 관리, 민간IPTV, 지역케이블방송등과 콘텐츠 교환 업무, 마포 IPTV 관리(이전, 신설, 점검, 등) ● 김중덕 : 마포아이 TV(방송국) 장비관리, 영상기록물 촬영, 방송실 관리, 용역업체 인력관리

관광마케팅팀장 한성구 3153-9606	● 송상아 : 마포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업무(단계별), 관광 안내도 관련 업무(영상 및 홍보 제작물 포함), 양화진 홍보관 운영 업무, 호스피탈리티 관련 업무, 관광객 통계관리 업무, 관광분야 홈페이지 관리 업무, 관광자원 관리 (월드컵공원,한강공원,양화진)
기사심의실장 이홍주 3153-8261	● 정명옥 : 홍보분석보고(주간, 월간), 홍보평가, 언론에서 본 마포(구 홈페이지), 마포데스크 관리(새울시스템), 구정 홍보실적 스크랩 관리(보도, 영상 등), 신문구독(본청, 보건소, 동), 신문공고 및 광고, 언론취재지원, 여론동향 분석, 보도자료 작성, 기자간담회,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고, 팀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김선화 :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측사, 인터뷰자료,해명자료 등 작성, 기자관리,기자간담회 ● 이상재 : 구정행사 등 사진촬영, 사진장비 관리, 홍보관 사진관리, 구정 사진관리시스템 운영, 사진게시판 관리, 전광판 및 지하철행선기 관리(현장점검) ● 정임영 : 언론에서 본 마포 관리(구홈페이지),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취재지원, 마포데스크관리(새울행정시스템), 신문공고,언론보도,모니터링보고

③ 자치 행정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자치행정과	13,873,264 국 22,602 시 6,050 구13,844,612	14,694,322	14,887,140 국 233,065 시 165,796 구14,488,279	15,476,976 국 233,065 시 470,540 구14,773,371	9,127,878 국 1,895 시 2,211 구 9,123,772	11,942,848	11,300,677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	8,986,955	12,205,777	12,398,595 국 210,114 시 159,268 구12,029,213	12,869,339 국 210,114 시 464,012 구12,195,213	7,060,162	9,840,733	9,530,989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6,865,150	5,726,998			3,338,284	4,720,309 1,653,177 두개 합쳐야함	3,279,864
동행정 자원	1,923,164	4,189,062			1,480,295	4,539,130	1,473,976
인건비	151,500	151,500			75,600	142,869	228,981
일반운영비	1,427,763	2,506,287			1,262,994	2,628,203	968,995
사무관리비	464,888	1,464,599			322,636	1,864,504	345,375
공공운영비	962,875	1,041,688			940,358	763,698	623,620
업무추진비	31,000	31,000			26,000	22,464	26,000
시설비 및 부대비	160,000	1,331,400			100,000	1,694,459	250,000
자산취득비	152,901	168,875			15,701	51,134	0
동정보고회 개최	19,600	19,600			20,000	19,354	16,000
일반운영비	8,000	8,000			6,000	5,567	4,000
사무관리비	8,000	8,000			6,000	5,567	4,000
업무추진비	11,600	11,600			14,000	13,768	12,000
동 행정 종합 실적심사	4,024	4,024			4,024	123	14,400
일반운영비	124	124			124	123	0
사무관리비	124	124			124	123	0
포상금	3,900	3,900			3,900	0	14,400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	1,492,362	1,514,312			1,791,265	1,617,840	1,775,488
일반운영비	20,620	30,090			5,998	4,403	0
사무관리비	7,120	30,090			5,998	4,403	0
행사운영비	13,500						
업무추진비	3,400	1,400			1,400	972	0
일반보상비	1,468,342	1,482,822			1,783,867	1,612,465	1,775,48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사무 추진					15,860	15,499	0
일반운영비					360	359	0
사무관리비					360	359	0
업무추진비					15,500	15,499	0
동 청사 신축				4,489,456 국 198,215	1,222,650	949,096	4,039,197

			시 99,108 구 4,192,133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3,426,000	0	156,000			
시설비 및 부대비	3,426,000	0	156,000			
신수동 동청사 건립				1,222,650	876,160	0
시설비 및 부대비				1,222,650	876,160	0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					72,936	
시설비 및 부대비					72,936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634,239	677,367	721,024 시 20,160 구 700,864	796,330	750,237 166,830 두개합쳐야함	768,573
자치회관 운영 지원	294,819	298,440	321,937	163,400	266,536	156,480
일반운영비	75,719	79,440		48,000	46,949	48,000
사무관리비	75,719	79,440		48,000	46,949	48,000
업무추진비	71,900	71,400		86,400	86,845	91,200
연구개발비					18,800	
일반보상금	39,200	19,200		24,000	8,829	17,280
포상금					12,200	
자산취득비			23,497		88,052	
민간이전	108,000	128,400		5,000	4,859	0
프로그램 발표회	15,000	51,500		51,500	45,145	74,300
일반운영비	13,500	18,500		18,500	17,258	66,300
사무관리비	2,500	2,500		2,500	2,338	3,300
행사운영비	11,000	16,000		16,000	14,920	63,000
업무추진비	1,500	3,000		3,000	2,968	8,000
민간이전				30,000	24,919	0
마포구 구민상(모범구민) 포상	2,920	2,320		2,320	2,108	2,572
일반운영비	2,520	1,920		1,920	1,808	2,572
사무관리비	2,520	1,920		1,920	1,808	2,572
업무추진비	400	400		400	300	0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8,000	10,600		10,200	26,639	7,400
일반운영비	7,000	9,600		10,200	26,639	4,000
사무관리비				3,200	1,189	0
행사운영비	7,000	9,600		7,000	25,450	4,000
업무추진비	1,000	1,000				
실기좋은 마을 만들기	308,100	308,500		309,300	271,291	31,400
일반운영비	4,500	5,000		4,000	5,316	16,400
사무관리비	4,500	5,000		4,000	5,316	16,400
업무추진비	600	600		1,800	1,799	6,000
일반보상금	3,000	2,900		3,500	3,500	6,000
민간이전	300,000	300,000		300,000	260,675	0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운영				25,610	19,538	125,589
일반운영비				540	0	14,820
사무관리비				540	0	14,820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	15,000	84,482
자산취득비				10,070	4,538	26,287
주민자치센터 홍보강화				36,000	35,545	23,000
일반운영비				36,000	35,545	23,000
사무관리비				36,000	35,545	23,000
주민자치센터 개방, 유료화 안정적 지원				120,000	100,037	347,832
민간이전				120,000	100,037	0
연남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5,400	6,007		26,840	181,179	0
인건비					18,000	
일반운영비	3,300	4,207		25,040	93,985	0
사무관리비	2,100	2,407		22,640	86,768	0
공공운영비	1,200	1,800		2,400	2,113	0
행사운영비					5,103	
업무추진비	2,100	1,800		1,800	4,907	0
일반보상금					25,170	
자산취득비					13,890	
시설비 및 부대비					25,224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운영				78,000	150,224	0
일반운영비				3,000	820	0
사무관리비				3,000	820	0
민간이전				20,000	32,715	0

연구개발비						6,000	
자산취득비					55,000	110,688	0
건강한 국민운동 지원	1,487,566	1,467,956	1,617,117 국 11,899 시 40,000 구 1,565,218		1,702,898	364,853 1,236,226 두개합쳐야함	1,443,355
승용차 요일제 추진 강화	15,870	16,350			15,150	52,895	15,150
일반운영비	15,870	16,350			15,150	42,955	15,150
사무관리비	15,150	15,150			15,150	42,955	15,150
공공운영비	720	1,200					
자산취득비						9,940	
깨끗한 새마포 가꾸기					17,760	15,998	21,981
일반운영비					16,560	15,998	20,781
사무관리비					16,560	15,998	20,781
업무추진비					1,200	0	1,200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651,120	657,120			630,896	621,969	630,896
일반운영비	1,120	1,120			896	173	896
사무관리비	1,120	1,120			896	173	896
민간이전	650,000	656,000			630,000	621,796	630,000
등문고(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86,674	118,220			236,280	309,696	88,500
일반운영비	17,554	17,200			33,900	25,588	4,500
사무관리비	17,554	17,200			33,900	25,588	4,500
업무추진비					600	599	0
일반보상금	40,320	65,520			72,000	22,605	0
민간이전					72,000	72,000	0
시설비 및 부대비						800	
자산취득비	28,800	35,500			57,780	188,103	84,00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						2,261	
인건비						373	
일반운영비						608	
사무관리비						608	
여비						1,280	
새마을지도자 자율 방역사업 지원					29,600	28,978	43,280
일반운영비					5,600	5,580	5,680
공공운영비					5,600	5,580	5,680
재료비					18,000	17,697	18,000
일반보상금					6,000	5,700	9,600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610,872	516,456	613,718		660,780	459,126	531,600
일반운영비	10,872	156,456			179,580	126,333	111,600
공공운영비	10,872	156,456			179,580	126,333	111,600
자산취득비	600,000	360,000			420,000	332,793	420,00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7,262		61,200	0	0
자율방범대(아머니폴리스) 지원	62,400	62,400			52,000	52,000	54,000
일반보상금	62,400	62,400			52,000	52,000	54,00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53,604	53,604			53,172	52,285	50,688
일반보상금	53,604	53,604			53,172	52,285	50,688
국민운동사업 지원	7,026	6,846			7,260	5,868	7,260
일반운영비	1,026	846			1,460	1,177	1,460
사무관리비	1,026	846			1,460	1,177	1,460
업무추진비	6,000	6,000			5,800	4,691	5,800
재난대비 교육훈련	572,074 국 1,392 시 6,050 구 564,632	492,019			496,709 국 1,895 시 2,211 구 492,603	419,525	356,824
민방위 생활화 및 사전대응능력 향상	572,074 국 1,392 시 6,050 구 564,632	492,019			496,709 국 1,895 시 2,211 구 492,603	419,525	356,824
을지연습 훈련	38,846	34,889			31,129	27,696	11,708
일반운영비	36,972	33,689			30,429	26,996	11,208
사무관리비	36,972	33,689			30,429	26,996	11,208
업무추진비	1,200	1,200			700	699	500
자산취득비	674	0					
공약근무요원 복무관리	393,384	393,684			372,689	313,304	308,994
일반운영비	248	848			913	22	600
사무관리비	248	848			913	22	600

	업무추진비				300	0	300
	일반보상금	393,136	392,536		371,476	310,059	308,094
	자산취득비					3,223	
민방위 교육 훈련	6,002 국 1,392 시 1,625 구 2,985	6,691			7,856 국 1,895 시 2,211 구 3,750	7,552	7,360
일반운영비	1,428 국 428 시 500 구 500	1,686			1,320 국 396 시 462 구 462	2,659	1,320
사무관리비	1,428	1,686			1,320	2,659	1,320
일반보상금	4,574 국 964 시 1,125 구 2,485	5,005			6,536 국 1,499 시 1,749 구 3,288	4,893	6,040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133,842 시 4,425 구 129,417	56,755			85,035	70,971	28,762
일반운영비	47,865 시 4,425 구 43,440	52,705			79,153	64,005	22,522
사무관리비	22,465	22,305			53,753	44,983	22,522
공공운영비	200	200			200	0	
행사운영비	25,200	30,200			25,200	19,022	
업무추진비	3,000	3,000			2,000	1,950	2,000
일반보상금	850	850			850	753	850
포상금	200	200			200	190	0
자산취득비	81,927	0				1,498	
시설비 및 부대비					2,832	2,574	0
자원봉사 가치증진 및 생활화	208,438 국 21,210 구 187,228	238,052					
자원봉사 참여 확대	208,438 국 21,210 구 187,228	238,052					
자원봉사 관리	75,780	82,444					
일반운영비	40,780	42,444					
사무관리비	26,500	28,764					
공공운영비	980	980					
행사운영비	13,300	12,700					
업무추진비	12,800	12,800					
일반보상금	22,200	24,200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47,443	47,443					
일반운영비	31,825	31,825					
사무관리비	4,650	4,650					
행사운영비	27,175	27,175					
업무추진비	6,890	6,890					
재료비	5,500	5,500					
일반보상금	3,228	3,228					
자원봉사 홍보 행사	42,795	65,745					
일반운영비	40,945	51,545					
사무관리비	19,725	22,225					
공공운영비	6,020	6,020					
행사운영비	15,200	23,300					
업무추진비	1,850	2,20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30,472 국 15,236 구 15,236	30,472					
인건비	30,472 국 15,236 구 15,236	30,472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11,948 국 5,974 구 5,974	11,948					
일반보상금	11,948	11,948					

		국 5,974 구 5,974					
전국 동시 지방선거		2,250,621	96,044				
선거 사무관리		2,250,621	96,044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2,250,621	96,044				
인건비		10,294	0				
일반운영비		39,701	0				
사무관리비		29,044	0				
공공운영비		10,657	0				
여비		8,001	0				
업무추진비		20,900	0				
자치단체 등 이전		2,171,725	96,044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179,360	
보궐선거 관리						179,360	
선거사무 관리						179,360	
인건비						3,720	
일반운영비						13,031	
사무관리비						12,881	
공공운영비						150	
여비						3,020	
업무추진비						3,394	
자치단체 등 이전						156,194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1,855,176	1,662,430	1,711,750	1,571,007	1,488,747	1,412,864
기본경비 (자치행정과)		1,855,176	1,662,430	1,711,750	1,571,007	1,488,747	1,412,864
기본경비		158,331	126,032		120,340	117,963	3,319
일반운영비		60,891	51,152		39,220	38,963	3,319
사무관리비		60,891	51,152		39,220	38,963	3,319
급량비		48,720			28,080		
여비		97,440	74,880		81,120	79,000	0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1,696,845	1,536,398	1,585,718	1,450,667	1,370,784	1,409,545
일반운영비		735,885	687,758		548,987	534,874	482,905
사무관리비		735,885	687,758		548,987	534,874	482,905
매식비		480,480			317,120		
여비		960,960	848,640	897,960	901,680	835,910	926,640
재무활동 (자치행정과)				69,772		14,482	
보전지출 (자치행정과)				69,772		14,482	
보전지출				69,772		14,482	
반환금 기타				69,772		14,482	
국고 보조금 반환금				2,622		5,547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150		8,934	

2)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보조대상은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치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의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하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국민의 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거주외국인"이란 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 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담당업무 : 박도식 과장 02-3153-8310

팀 명	담 당 업 무
동행정팀장 박영철 3153-8301	● 이인용 : 주요 업무계획 수립, 동주민센터 직원 근무평정, 동행정 실적심사에 관한 사항, 동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항, 예산, 회계, 서무에 관한 사항 ● 최승국 : 선거에 관한 업무 총괄, 동정보고회 관련 업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지명위원회 운영, 동청사 신축, 개보수 업무 ● 문광택 : 동주민센터 인감 업무,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 취학아동관리 및 주민등록 민원예약제 관리, 태평양전쟁 희생자 피해보상 관련 업무, 새터민 업무 ● 김미선 : 동주민센터 예산편성 및 배정, 동행정 실적심사, 동 인허가 민원접수, 행정사 등록, 폐업, 적십자 회비 모금 ● 이희선 : 무인민원발급기, 대학생아르바이트, 행정서포터즈, 선거 질의 및 회신 ● 우혜원 : 동청사 관리, 동 행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사항 ● 윤정아 : 통·반장 조직 조정 및 위해축, 반상회 운영,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인터넷민원 담당자 지정 ● 전건숙, 이은성 : 휴직
자치사업팀장 장재원 3153-8311	● 박덕균 : 자치사업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민자치 업무추진 실적 및 서울시 평가 준비 ● 이주미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및 평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대외기관 평가, 모범주민 포상 및 표창 관련 업무, 특화 프로그램 개발 총괄(주말, 야간, 가족프로그램 등)

	● 양성우 :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관리, 프로그램 발표회 및 지역 축제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관리 ● 박주희 :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예산,회계관리,
사회진흥팀장 추연호 3153-8321	● 정연주 : G-20 정상회의 지원추진반 운영에 관한 업무 ● 조세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마포구협의회 예산 지원 및 운영,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 김선희 : 하이서울장학금 지원, 자율방범대,어머니폴리스,자유총연맹,사회정의실천연합 예산지원, 운영, 새마을문고 행사 지원, 승용차요일제 관련 업무
민방위팀장 김인천 3153-8331	● 김영대 : 공익근무요원 관리 총괄, 민방위집행계획,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민방위 과태료 업무, 사회단체 지원관리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 해병대전우회) ● 김려진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총괄, 화생방장비물자 및 방독면 관리, 민방위복 구매 업무 ● 김성현 : 민방위교육계획 수립, 충무계획, 을지연습 총괄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3153-8341	● 문양호 : 자원봉사센터 예산, 자원봉사분야 인센티브사업, 자원봉사단체 및 코디네이터 관리, 자원봉사 상담가 및 캠프 운영, 자원봉사 V-project ● 하동국 :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 사이버명예전당 운영, 상담클리닉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상담, 배치, 운영

④ 문화체육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문화체육과	3,196,096 기 12,120 시 86,831 구3,097,145	3,604,100	3,475,000 국 20,000 기 17,332 시 106,846 구3,330,822	3,631,243 국 25,000 기 17,332 시 172,646 구3,416,265	4,424,482 국 8,622 시 79,809 구4,336,051	5,109,166	2,635,929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	2,548,882 시 41,750 구2,507,132	2,827,320	2,811,720 시 41,750 구2,769,970	2,911,720 시 81,750 구2,829,970	3,706,911 시 39,750 구3,667,161	4,313,707	507,840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459,014	470,248	454,648	554,648 시 40,000 구 514,618	541,518	672,602	413,840
구민의날 기념 문화축제	140,000	130,000		190,000	130,000	130,000	50,000
일반 운영비	140,000	130,000		190,000	130,000	130,000	0
행사 운영비	140,000	130,000		190,000	130,000	130,000	0
초등학교 내교장 탐방	69,500	69,500			69,000	67,700	60,000
일반 운영비	69,500	69,500			69,000	67,700	60,000
사무관리비	7,500	7,500			9,000	7,700	0
행사운영비	62,000	62,000			60,000	60,000	60,000
업무추진비					900		900
일반보상금					1,000		1,000
신년 해맞이 축제	17,900	17,900			18,460	17,248	18,460
일반 운영비	16,000	16,000			16,560	15,505	16,560
사무관리비					560		560
행사운영비	16,000	16,000			16,000	15,505	16,000
업무추진비	900	900				743	
일반보상금	1,000	1,000				1,000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123,114	129,348	118,748		180,558	129,949	116,730
일반운영비					1,758	818	630
사무관리비					1,758	818	630

	일반보상금			112,980		174,800	126,230	112,100
	업무추진비					4,000	2,900	4,000
	민간이전	123,114	0					
문화 사업 운영 및 지원		32,500	32,500			52,500	172,247	87,650
	일반 운영비	18,000	18,000			38,000	130,236	38,000
	행사운영비	18,000	18,000			38,000	125,336	38,000
	사무관리비						4,900	
	업무추진비	8,500	8,500			8,500	13,811	9,500
	일반보상금						1,200	
	포상금						11,000	
	민간이전	6,000	6,000			6,000	16,000	38,000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개최		51,000	51,000		81,000 시 30,000 구 51,000	51,000	80,456	51,000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456	1,000
	민간이전	50,000	50,000		81,000 시 30,000 구 50,000	50,000	80,000	50,000
홍대 거리 미술전		5,000	15,000	10,000	20,000 시 10,000 구 10,000	15,000	25,000	15,000
	민간이전	5,000	15,000	10,000	20,000 시 10,000 구 10,000	15,000	25,000	15,000
대한민국 라이브뮤직 페스티벌		20,000	15,000			15,000	15,000	15,000
	민간이전	20,000	15,000			15,000	15,000	15,000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10,000	35,000	10,000
	민간이전					10,000	35,000	10,000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		92,000 시 41,750 구 50,250	96,000			86,000 시 39,750 구 46,250	117,459	92,000
마포 문화원 지원		64,000 시 41,750 구 22,250	62,000			58,000 시 39,750 구 18,250	89,459	58,000
	일반 운영비	5,000	3,000			3,000	6,462	3,000
	공공운영비	5,000	3,000			3,000	6,462	3,000
	민간이전	59,000 시 41,750 구 17,250	59,000			55,000 시 39,750 구 15,250	55,000	55,000
향토문화 지원		28,000	34,000			28,000	28,000	33,000
	일반 운영비	28,000	33,000			28,000	28,000	33,000
	행사운영비	28,000	33,000			28,000	28,000	33,000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		1,997,868	2,261,072			3,079,393	3,523,646	0
(재)마포문화재단 설립·운영		1,997,868	2,261,072			2,710,112	3,132,532	0
출연금		1,997,868	2,261,072			2,710,112	3,132,532	0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탁운영						369,281	391,114	0
	민간이전					369,281		0
	자산취득비						361,114	
	연구개발비						30,000	
문화재 관리		45,120	59,202	85,702 국 20,000 시 21,275 구 44,427		36,720	83,806	41,060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		45,120	59,202	85,702 국 20,000 시 21,275 구 44,427		36,720	83,806	41,060
문화재 보존 관리		45,120	44,202			33,720	33,122	38,060
	일반 운영비	8,920	8,002			2,520	1,922	3,060
	사무관리비	1,200	1,200					
	공공운영비	7,720	6,802			2,520	1,922	2,220
	민간이전	36,200	36,200			31,200	31,200	35,000
문화재 보수 정비				1,500 시 1,275 구 225		3,000	50,684	3,000
시설비 및 부대비				1,500		3,000	50,684	3,000

				시 1,275 구 225				
체육활동의 생활화		486,871 기 12,120 시 45,081 구 429,670	599,686	459,686 기 17,332 시 43,821 구 398,533	480,486 기 17,332 시 64,621 구 398,533	417,009 국 8,622 시 40,059 구 368,328	438,183	462,184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221,711 시 39,021 구 182,690	217,566		228,366 기 7,732 시 49,821 구 170,813	216,728 국 8,622 시 40,059 구 168,047	230,470	151,193
여성 축구단 운영		34,625 시 12,000 구 22,625	37,220		48,820 시 23,600 구 25,220	39,300 시 12,000 구 27,300	42,800	31,600
	민간이전	34,625 시 12,000 구 22,625	37,220		48,820 시 23,600 구 25,220	39,300 시 12,000 구 27,300	42,800	13,000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33,100 시 11,200 구 21,900	28,500		28,000 시 10,700 구 17,300	23,200 시 11,200 구 12,000	26,000	24,880
	민간이전	33,100 시 11,200 구 21,900	28,500		28,000 시 10,700 구 17,300	23,200 시 11,200 구 12,000	26,000	0
어린이 축구단 운영		23,486 시 6,800 구 16,686	18,590		18,290 시 6,500 구 11,790	16,900 시 6,800 구 10,100	16,900	15,360
	민간이전	23,486 시 6,800 구 16,686	18,590		18,290 시 6,500 구 11,790	16,900 시 6,800 구 10,100	16,900	0
생활 체육 교실 운영		130,500 시 9,021 구 121,479	98,104			137,328 국 8,622 시 10,059 구 118,647	144,770	79,353
	일반 운영비	14,550	12,444			8,128 국 822 시 959 구 6,347	12,827	5,388
	사무관리비	14,550	12,444			8,128	12,827	5,388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918	1,000
	일반보상금	114,950 시 9,021 구 105,929	84,660			68,200 국 7,800 시 9,100 구 51,300	68,200	70,940
	자산취득비					60,000	62,825	2,025
체육단체 활성화		265,160 기 12,120 시 6,060 구 246,980	382,120	242,120 기 9,600 시 4,800 구 227,720		200,281	207,713	310,991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55,420	145,420			139,781	137,213	230,891
	일반 운영비	3,420	3,420			2,781	2,383	2,391
	사무관리비	400	400			391	294	2,391
	공공운영비	3,020	3,020			2,390	2,088	0
	민간이전	152,000	142,000			137,000	127,390	228,500
	시설비 및 부대비					7,440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85,500	217,500	77,500		60,500	70,500	80,100
	민간이전	85,500	217,500	77,500		60,500	70,500	80,100
체육바우처사업 운영		24,240 기 12,120 시 6,060 구 6,060	19,200					
	일반보상금	24,240 기 12,120 시 6,060 구 6,060	19,200					
문화 예술 진흥		3,650	3,800			4,440	3,251	4,420
	효율적인 출판 영상관리	3,650	3,800			4,440	3,251	4,420
	출판 영상 관리	3,650	3,800			4,440	3,251	4,420

	일반 운영비	2,650	2,800		3,440	2,251	4,420
	사무관리비	2,650	2,800		3,440	2,251	4,420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1,000	0
행정 운영 경비 (문화체육과)		111,573	114,092		102,462	98,287	756
	기본경비(문화체육과)	111,573	114,092		102,462	98,287	756
	기본경비	111,573	114,092		102,462	98,287	756
	일반 운영비	44,373	48,572		30,702	29,647	756
	사무관리비	44,373	48,572		30,702	29,647	756
	급료비(7,000원*20일*20명*12월)	33,600			24,840		
	여비 (20,000원*14일*20명*12월)	67,200	65,520		71,760	68,640	0
재무활동 (문화체육과)				25,443		20,759	
	보전지출 (문화체육과)			25,443		20,759	
	보전지출 시도보조비 반환금			25,443		10,783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9,976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5. "강습료"는 센터에서 여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센터의 각종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8.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합창단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구청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경우,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마포구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

3) 담당업무 : 구본수 과장 3153-8360

팀 명	담 당 업 무
문화기획팀장 반경호 3153-8351	● 백명진 : 마포문화재단(마포아트센터)관련업무 전반,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 원동만 : 예산 및 회계, 서무 및 보안 관련업무, 총무계획 수립 ● 신현구 : 선거추진반 파견 ● 이은영 : 마포문화원, 문화재관리, 전통문화 행사,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 ● 김연주 : 홍대지역 주요 문화행사 지원, 홍대지역 문화네트워크 관련업무, 현대문화 행사, 문화예술분야 외부평가 관련업무 ● 정현주 : 종교업무, 비영리법인(종교 및 문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및 문화체육행사 홍보 ● 신진섭 : 문화원 업무지원
체육팀장 강명애 3153-8371	● 허영 : 염리동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설치, 아현뉴타운 체육센터 건립, 난지천공원 인조잔디구장 ● 유완식 : 체육회,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어린이축구단 ● 장옥규 :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교실, 여성축구단 ● 김용주 : 휴직
출판영상관리팀장 이철희 3153-8381	● 허명원 : 영화상영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 김보미 : 출판·영상관리팀 예산, 관광사업, 세외수입 징수보고 및 체납 ● 박경미 : 게임제공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제작배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김수영 : 잡지의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관련업무 소송 및 행정처분 ● 전우연 : 출판사, 인쇄사 관련업무
문화재단 행정관리부장 임태순 3274-8507	● 강수영 : 재단 조직·정원 관리, 재단직원 인사·근무 관리, 구청·구의회 업무보고, 구청 파견직원 급여·수당 자료 관리

⑤ 전산정보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전산정보과	2,428,631 국 65,545 구 2,363,086	3,074,320		3,394,051 국 57,457 구 3,336,594	3,109,182 국 60,170 구 3,049,012	3,462,710	2,097,253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	2,310,566 국 65,545 구 2,245,021	2,971,748		3,288,151 국 57,457 구 3,230,694	3,021,212 국 60,170 구 2,961,042	3,372,168	2,097,253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1,547,069 국 65,545 구 1,481,524	1,641,964			1,405,470 국 60,170 구 1,345,300	1,496,218	1,021,40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용 S/W 구입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227,217	268,114			183,876	365,577	181,197
일반운영비	165,053	268,114			183,876	285,621	181,197
사무관리비	100,580	82,442			183,876	285,621	181,197
업무추진비	1,000	0					
자산취득비						79,955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1,164	0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597,912	357,389			526,812	432,488	270,527
일반운영비	597,912	357,389			428,697	350,881	270,527
사무관리비	240,229	167,161			189,879	133,985	23,820
공공운영비	357,683	190,228			238,818	216,895	246,707
시설비 및 부대비					98,115	81,606	0
시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	145,038 국 58,015 구 87,023	147,193			150,426 국 60,170 구 90,256	142,910	150,426
일반운영비	145,038 국 58,015 구 87,023	147,193			150,426 국 60,170 구 90,256	142,910	150,426
사무관리비	145,038	147,193			150,426		150,426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장비 보강	18,825 국 7,530 구 11,295	0					
일반운영비	18,825 국 7,530 구 11,295	0					
사무관리비	18,825	0					
정보화교육 및 정보서비스 향상	558,077	869,268			544,356	555,242	419,251
일반운영비	248,477	211,468			303,756	235,369	413,451
사무관리비	166,549	144,521			25,524	13,261	144,853
공공운영비	81,928	52,147			278,232	222,108	268,598
업무추진비	4,000	4,000			5,000	4,659	3,600
일반보상금	305,600	243,800			235,600	211,960	0
시설비 및 부대비						1,740	
자산취득비						101,514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763,497	1,329,784		1,646,487	1,539,402	1,810,884	1,003,962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	329,982	233,500		549,903	610,008	507,640	692,217
연구개발비					323,764	271,079	496,217
업무추진비	1,000	1,000				2,000	
시설비 및 부대비	73,222	10,000		326,403			
자산취득비	255,760	222,500			286,244	234,560	196,000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433,515	544,154					
일반운영비	283,515	144,154					
사무관리비	283,515	144,154					
자산취득비	150,000	400,000					
정보통신 전산장비 확충					879,394	586,756	311,745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	5,850	15,000
자산취득비					864,394	580,906	296,745

정보통신 장비 회선 확충					50,000	716,487	0
시설비 및 부대비					50,000	716,487	0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조사					76,340	65,065	71,890
통계조사 및 웹서비스 제공					76,340	65,065	71,890
인건비					32,070	30,815	0
일반운영비					24,330	16,010	16,690
사무관리비					24,330	16,010	16,690
여비					640	640	0
업무추진비					2,800	2,600	2,200
민간이전					16,500	15,000	0
행정운영경비 (전산정보과)	118,065	102,572			87,970	87,152	0
기본경비 (전산정보과)	118,065	102,572			87,970	87,152	0
기본경비	118,065	102,572			87,970	87,152	0
일반운영비	44,145	40,172			28,690	27,872	0
사무관리비	44,145	40,172			28,690	27,872	
매식비	36,960				20,520		
여비	73,920	62,400			59,280	59,280	0
재무활동 (전산정보과)				3,328		3,389	
보전지출 (전산정보과)				3,328		3,389	
보전지출				3,328		3,389	
반환금기타				3,328		3,389	
국고 보조금 반환금				3,006		3,005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2		383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 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 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4.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6.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 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관부서" 라 함은 구의 단위업무 담당관·과를 말한다. 8. "정보화자료" 라 함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록매체를 포함한다. 9. "업무정보화"라 함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10. "프로그램" 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1. "정보통신" 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심의"라 함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라 함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했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 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당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구분청의 담당관, 과장, 각동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을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9. "이용자"라 함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0.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	---

3) 담당업무 : 이의택 3153-8410

팀 명	담 당 업 무
정보기획팀장 박윤희 3153-8401	● 김영란 : 서무업무(예산, 회계, 물품관리, 부서 보안업무) 전반, 시·구의회 관련업무 전반, 「함께해요! IT 축제」 추진, ● 이정희 : 정보화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기획, 운영 관리 총괄, 홈페이지 관련 서울시 등 외부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IT 역량강화 사업 추진, 「함께해요! IT 축제」 지원, IT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업무, 정보화촉진 협의회 운영 ● 이정민 : U-mobil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웹메일/스팸메일 등 및 대량메일 시스템 운영 관리,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 관리, SMS 시스템 운영, 정보화기기(PC, 프린터 등) 구매·보급 현황관리 지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문화관광포털사이트) ● 김현곤 : 구민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민 정보화교육 교재 및 관련물품 구매·보급, 정보화교육장 관리 및 운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정보화교육 사이트 운영,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보건소홈페이지) ● 전지열 : 구·동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포털사이트 및 콘텐츠 개발 운영 등, 패밀리사이트 운영 관리, 주민자치 및 뉴타운 사이트 등, 홈페이지 팝업창 운영 및 관리
전산운영팀장 한근수 3153-8411	● 윤한용 : 행정 정보화 관련(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정보화 사업(S/W개발) 심의 및 협의 조정, 정보화역량강화 인센티브사업추진, 우수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 팀직원 정보화능력 교육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관련, 계획수립 및 심의(정), 정보화사업협의조정시스템 운영·관리, 전자팩스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창원 : IT운영센터 운영(총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부), 전산시스템 통합·증설 및 고도화에 관련,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우수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관한 사항, 통합백업시스템 운영(원격지 백업 포함),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실적 관리, 전산실 출입자 통제 및 보안관리 업무, ● 정지웅 : 행정포털 고도화 계획 수립, 행정포털 운영, 새물시스템 운영, 온나라시스템 관련 업무협의·분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업무, 세무정보, 주민서비스, DB보안, 키보드보안, SSO시스템 운영관리,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임연숙 :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실적 관리 및 통계, 통합정보체계(지킴이) 운영관리, 재무회계시스템 서버관리, 부서서버 운영·관리 ● 신혜연 : 육아 휴직
정보통신팀장 하영곤	● 이현진 : U-City 사업 추진(야현 u-Community Center, 염리동 u-Park Avenue),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주요업무, 주간/월간업무 보고,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행정망), 서울시청 IPT TFT 업무지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운

3153-8421	영(정보통신 장비), 정보화부문 인센티브 업무 추진, 정보통신 예산안 작성(행사 및 언론매체 기사 제공, 각종 심의 등) ● 김태연 : U-City 사업 추진(홍대부근 u-Street, 홍제천 u-서비스),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서비스망), IT 사전심사(정보통신) 업무, 정보통신망 공사(긴급공사 및 배선공사),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홍대앞 걷고 싶은거리 노외주차장, 건립 지원(통신), 동주민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 및 관리 ● 이재철 : U-City 사업 추진(정보통신 인프라, 통합운영센터),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CCTV망), 방범,불법주정차 등 CCTV용 케이블 공사,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실 운영 관리, 시민 및 행정 활용 U-서비스 개발, IT희망 나눔 봉사단 운영 지원, 정보통신 소모품 구매 ● 박민재: 정보통신네트워크 운영/관리(구청, 구의회, 보건소), e-Seoul Net 운영 관리, 서울시 웹 하드 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운영(컴퓨터 및 프린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검토, 사용전 검사 총괄,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개선(필증 교부개선, 조례 개정 등), 중고 PC 관리총괄, 중고PC 운영 및 보급, 사랑의 PC 및 정보소외계층 등 PC 보급 ● 김준겸 : 정보통신네트워크 운영/관리(동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산하기관), 네트워크 IP 관리 및 IP 관리시스템 운영, NMS(망관리시스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검토, 사용전 검사 총괄,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관리, 정보통신 요금납부 및 운영,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 상담업무
-----------	---

⑥ 민원여권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민원여권과	1,130,192	884,684 국 1,500 구 824,655	-	-	872,867	1,047,045
고객우선 행정	142,214	173,910			169,145	161,417
사무관리비	3,314	15,454			37,970	8,500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7만원*4명*2회	560	560			840	
외국인민원안내리플렛 게시판정비	2,754	2,894			2,060	
민원사무편람	-	12,000			12,000	
공공운영비-우편료	129,775	147,425			120,775	
구종합문서고 무인경비용역비	-	-			1,650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1,200	1,200				
종합민원실 도우미안내 자원봉사 매식비	6,325	5,000				
복합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1,600	1,60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373,300	435,567			489,068	655,500
사무관리비(운영위수당,사무실수선비,임차료)					6,614	5,000
지능망 전화요금	10,800	6,847			13,810	13,810
무인경비 용역비	-	-			1,000	-
120콜센터 업무추진비	500	1,000			1,000	
콜센터 이전 설치비	-	-			18,758	12,000
콜센터확대 운영 비품구입	-	-			18,437	63,420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362,000	90,080			-	
콜센터 운영경비(민간위탁금)	-	337,640			429,449	
가족관계 등록(호적관리)	2,800	5,800 국 1,500 구 4,300			1,720	136,194
일반운영비	2,200	3,700			1,120	-
가족관계관련 업무추진비	600	2,100			600	900
민원발급처리 자동화기기 운영	15,360	12,480			46,071	40,217
사무관리비(민원발급기,무인발급기임차료)					22,108	10,815
민원발급기유지비,전기료					11,463	7,402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	-			12,500	22,000
전자여권제도 운영의 활성화	4,786	6,773			-	-
사무관리비	1,355	3,170			-	-
여권담당 배상공제 가입비	431	603			-	-

여권업무 추진	3,000	3,000		-	-
고객만족행정	-	23,570		고객우선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	3,120		3,120	
친절 전화모니터링 용역	-	13,400		13,200	
행정서비스현장 위원 수당	-	350		700	
행정서비스현장 책자제작	-	3,000		-	
행정서비스현장 도서상품권(보상금)	-	-		1,500	-
고객만족(CS) 업무추진	-	2,000		2,500	
고객만족 포상금	-	1,700		3,200	
기록물 관리	366,382	-		-	-
사무관리비-기록물평가위원수당, 위촉장구입	149	-		130	-
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	1,000	-		-	-
전산개발비-운용환경구축 및 전산문서관리	184,000	-		-	-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자치단체간 부담금)	3,233	3,231		3,200	13,757
통합기록관리시스템 H / W 구축비	178,000	-		-	-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15,090	15,090		12,815	12,060
사무관리비	11,490	11,490		9,215	8,460
민원실대민업무추진비	3,600	3,600		3,600	3,600
행정운영경비(민원여권과 민원봉사과)	210,260	159,738		154,048	40,937
사무관리비(급량비7,000원*20일*30명*12월)	109,460	84,858(24명)		69,808(5,000원*27명*18일)	40,937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20,000원*14일*30명*12월)	100,800	74,880(13일*24명)		84,240(여권과통합)(13일*27명)	0

• 민원과의 통합되기 전 여권과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09 예산액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여권과		82,099	222,954	189,361
여권발급의 안정적 운영		6,773	134,767	177,682
전자여권제도 운영의 활성화		6,773	11,311	53,627
사무관리비(안내문, 봉투등)		3,170	4,150	2,708
공공요금 및 제세		603	1,161	-
여권업무 시책 업무추진비		3,000	6,000	6,000
고품격 여권민원 행정운영		-	123,456	124,055
사무관리비(소모품, 사무실관리, 피복비)		-	120,624	108,247
공공운영비(배상공제가입비, 무인경비시스템용역료)		-	2,832	15,808
행정운영경비(여권과)		75,326	88,187	11,679
사무관리비(급량비7,000원*20일*14명*12월)		31,341	27,125	11,679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20,000원*13일*14명*12월)		43,680	53,040(17명)	-

• 신청사 추진반 (임시 운영 부서)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신청사 추진반		5,170,120	3,007,000
마포구 종합청사 이전		2,216,382	7,000
이전비용		212,443	-
신청사이전 홍보비		7,000	
신청사건립 업무추진비		10,000	7,000
시설물 공사비		1,514,584	-
물품구입비		472,355	-
행정운영경비(신청사추진반)		45,006	-

	사무관리비	16,926	
	여비 20,000원*9명*18일*12월	28,080	
	기금전출금-구청사 건립기금 조성	2,908,732	-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3) 담당업무 : 강선숙 과장 3153-8460

팀 명	담 당 업 무
민원총괄팀 (임흥연) 3153-8451	●노수현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회계 ●박지철 : 120콜센터업무 ●박동숙 : 문서심사, 정보공개 ●심하동 : 우편물접수 및 발송 ●최상미 : 기록물관리, 정책실명제
민원처리팀 (신동우) 3153-9912	●남혜원 : 유기한 민원총괄, 고충민원접수,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추진 등 ●배경숙 : 외국인신고(인감), 면허증발급(건설기계조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박병현 : 통합증명발급(인감, 등초본) ●구혜경 : 통합증명발급(어디서나민원, G4C) ●정현정 : 서울시 파견
가족관계등록팀 (이현숙) 3153-8471	●곽정환 : 가족관계등록 교합 및 기록(대흥, 연남동) ●고혜숙 : 가족관계기록(도화, 성산, 구수, 토정, 당인, 마포, 염리, 신공덕동) ●임흥희 : 가족관계기록(아현, 동교, 신수, 서교, 망원, 상암, 신정, 합정동) ●김화영 : 가족관계기록(공덕, 용강, 하중, 창전, 중동, 노고산, 상수, 현석동), 재외국민 ●전영완 : 신원조회, 제적부 전산화 ●오선화, 조혜진 :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과태료 징수부과
여권팀 (김용철) 3153-8481	●최용호, 이병숙 : 여권심사 ●이금숙 : 신원조회 미회보, 기재변경 ●박은순 : 여권교부 ●권천선, 김선미, 김순남, 박미진 : 여권접수

<기획재정국>

① 기획예산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기획예산과	5,959,357	6,564,557	6,666,791	9,536,499	6,472,095	7,770,062
구정 주요시책개발 및 규제 개혁	51,648	51,096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48	896			896	896
주요업무계획(주민홍보용) 인쇄비 5,000원*3,000부	15,000	20,000(4,000부)			20,000	
주요업무계획서 인쇄비	-	-			4,000	
구청장협의회비	6,000	6,000			6,000	-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립 분담금	-	-			25,000	-
기획조정업무추진 광역업무(구청장협의회 등) 업무추진	10,000	10,000			15,000	15,000
기획재정국 업무추진	10,200	10,200			12,000	12,00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0	-	10,000		-	-
구정 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	17,330	7,430			99,130	73,900
구정 현황판 현황도 내지 교체	2,400	2,400			22,400	
구청백서 발간	10,000	-			-	-
구청현황 소책자 제작	2,500	2,500			2,500	
구청 홍보물	-	-			14,000	
도서구입	2,130	2,130			1,230	
종합자료실 비품구매	300	400			-	-
자료실 도서구입	2,000	4,000		7,000	4,000	4,000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679,660	826,661		1,061,701	524,280	
일반운영비	264,396	310,837			143,520	134,301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100,000	96,000			60,000	
기본사무용품비					1,305	
기관공동시책추진특근매식비 7,000원*1,297명*7월*12월*5%	114,396	114,837 (1,302명)			82,215 (5천원*1,305명)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50,000	100,000			-	-
기관공통 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 20,000원*1,297명*7월*80% (2009 2차 추경증가내역 20,000원*1,028명*1월*9월)	145,264	145,824		330,864 (+185,040)	146,160 (1,305명)	114,688
구정 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	35,000	35,000			39,600	35,000
구 행정운영업무 추진활동	35,000	35,000			35,000	35,000
소규모 사업비	100,000	200,000			100,000	100,000
자산취득비·사무용집기	100,000	100,000		150,000	60,000	55,000
성과주의 예산 운영	38,000	40,500			38,300	44,300
사무관리비	28,000	28,500			28,300	34,300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3,000	1,500			1,500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0	2,000			2,000	
예산안	11,500	11,500			10,000	
예산서	8,500	8,500			6,000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	3,000	5,000			5,000	
예산개요·추경예산서	-	-			3,8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예산편성)	10,000	12,000			10,000	10,000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44,654	82,582			46,462	24,278
사무관리비	6,340	5,840			7,092	2,878
일반수용비(지방재정공시책자인쇄·신문공고료)	3,500	3,000			1,100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단이사장 경영성과 계약평가 수당	2,840	2,840			6,592	
업무추진비-예산운영(재원배분·분석·관리등)	8,000	8,000			10,000	10,000
예산편성 공청회 개최·주제발표자등 사례비	-	7,000			-	-
예산절약 성과금	15,000	15,000			15,000	10,000
대행사업비이전-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314	14,164			14,370	1,400
대행사업비이전-지방재정통합 D B 사업비	-	32,578			-	-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 평가	10,512	10,264			83,455	33,180
사무관리비	7,512	5,264			6,180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15명*2회*80%	1,680				1,680	1,680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성과관리자료료	5,832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50,275	-
성과관리계획서 발간	-	-		4,500	4,500
성과평가 업무추진	3,000	5,000		-	-
창의실용 추진	15,900	24,916		27,416	25,416
사무관리비	15,900	16,016		12,016	16,416
창의,혁신 사례집 발간(10,000원*300부)	3,000	3,000		3,000	
창의,혁신 종합평가 실적자료 발간 10,000원*300부	-	-		3,000	
변화와 혁신토론포널 운영 워크샵개최	5,500	10,000		10,000	
혁신아카데미 위원회의 수당	-	2,016		2,016	
창의,혁신 추진협의회 운영	-	-		1,000	
창의,혁신 및 지방분권을위한교육강사비	1,000	1,000		2,000	
정책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	5,000	6,500		6,000	
창의,혁신 및 지방분권 교육 업무추진	-	-		500	0
창의혁신 토론포널 연구사례 포상금	1,400	2,400		2,400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	8,400	8,400		9,600	5,000
사무관리비(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사례집제작)	1,800	1,800		600	500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시상 및 경진대회 업무추진	500	500		500	-
창의혁신 경진대회 공연비	1,000	1,000		1,000	-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2,400	2,400		2,400	
지방행정 창의혁신 연말종합평가 시상	-	-		2,400	
창의혁신 마일리지제 우수참여자 시상	2,700	2,700		2,700	
국가생산업 대상 응모	17,700	19,700		7,800	-
사무관리비-평가기준책자발간 연구위탁교육	16,000	18,000		6,100	-
한국생산업본부 회비	700	700		700	-
국가생산업대상 응모 등 업무추진	1,000	1,000		1,000	-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1,700	11,700		11,700	
제안 및 제도개선 홍보비	1,000	1,000		1,000	1,000
제안제도 운영	1,000	1,000		1,000	1,000
보상금-우수제안자 시상	3,000	3,000		3,000	3,100
포상금-우수제안자 시상	6,700	6,700		6,700	3,100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	151,074	158,604		134,392	141,503
사무관리비	129,674	133,204		108,992	119,503
현행법령집중추록,가제료,법률연혁집중추록,가제료,도서구입	4,534	4,202		2,552	
마포구현행자치법규가제료,추록발간	6,180	4,342		3,780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85,000	105,000		85,000	
고문변호사 수당, 상여금	17,160	17,160		17,160	
소송 실무교육강사료	500	500		500	
법무사이트 통합개선	16,300	-		-	-
소송공탁금	3,000	5,000		5,000	
법제및송무수행업무추진,소송실무교육	2,800	2,800		2,800	6,000
소송수행자및소송사무취급공무원포상금,활동비	12,600	12,600		12,600	6,000
소송배상금	3,000	5,000		5,000	5,000
통계조사 및 웹서비스 제공	77,464	77,234 (전산정보과)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마포구사회통계조사(조사관리자,내검원)	10,613	32,944			
사무관리비	63,651	22,850			
경제통계통합조사(연보제작, C D 제작)	6,750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15,000원*100부	-	1,500			
통계연보발간,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홍보안내문	-	7,250			
마포사회통계조사(조사표인쇄, 답례품, 발간용역 수당)		14,100			
마포사회통계조사자료분석및보고서발간위탁비	56,901	18,000			
마포사회통계조사 현지실사 여비		640			
업무추진비-경제통계통합조사,마포구사회조사,인구주택총조사	3,200	2,800			
예비비	2,754,926	3,248,318	5,872,760 +2,624,442	2,492,116	2,218,140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	153,503	109,150		106,883	566,973
사무관리비(매식비)7,000원*28명*20일*12월)	59,423	46,750(20명)		38,243(5천원* 22명*18일)	161,373
현안업무추진 여비20,000원*28명*14일*12월	94,080	62,400 (20명*13일)		68,640 (22명*13일)	405,600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924,886	1,961,236	1,968,462	2,886,565	4,135,999
경상전출금-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	1,924,886	1,961,236		2,886,565	4,135,999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예산절감 인센티브 집행잔액	-	-	7,226	-	-

2) 조례

조례	중요내용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 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정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 ▶(상담관)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법무업무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가 구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용자 2. 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용자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3) 담당업무: 이영복 과장 3153-8510

팀 명	담 당 업 무
기획조정팀 (박창열) 3153-8501	●정기자 : 성과관리계획, 평가 운영 공약사업 및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서울시 회의자료에 관한 사항 ●김동수 : 주요업무보고, 정책회의 운영, 구의회 관련업무 ●임번섭 : 국 서무주임, 지시사항, 인센티브 ●위윤원 : 과 서무,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자 관리등, 내고장 살림 관리·운영

	●차승희 : 월중계획, 사무전결규정, 자료실 관리, 구정현황 소책자 및 구정백서 발간, 구민 만족도 조사, 자료실 관리, 인사말씀 ●김은숙 : 국장실 업무지원, 일정관리
예산팀 (유상한) 3153-8511	●김찬호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투·융자사업관리, 특별교부금 관리 ●조희욱 :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 예산개요 작성 및 예산성과금 관련 업무 ●김미자 : 각종 기금관리, 예산배정운용관리, 예산절감 업무 ●전미경 : 국·시비 보조금 관리, 간주처리, 조기집행, 재정분석 등 각종자료 관리 ●차기희 : 시설관리공단관련 업무 전반, 인건비 경상적경비 총괄
정책개발팀 (진경섭) 3153-8541	●이현 : 국가생산성대상, 창의행정추진, 직원토론포널 운영,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손정우 : 창의제안, 마포구 위원회, 창의혁신 홍보전반,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법무팀 (김영미) 3153-8521	●김용균 : 법무예산 및 서무 조례·규칙·훈령 등 법제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마포구헌행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 ●권윤영 : 행정소송 및 심판, 법령집 관리, 행정소송비용 회수 ●김은화 : 국가 및 민사소송, 공고·고시·예규 등 심사, 법률고문 운영, 승무교육, 포상금 지급 및 소송유공자 표창 추천
통계팀 (조성미) 3153-8531	●윤소희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 및 추진 관한 사항, 경제통합통계조사 마포사회통계조사 업무추진관련 사항, 최근통계 등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통계관련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안영미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사, 도소매업및 서비스업총조사 통계조사, 마포사회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경제통합통계조사, 마포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DB관리,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GRDP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② 지역경제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지역경제과	1,974,448 국 484,640 시 250,251 구 1,239,557	1,129,248	6,072,009 시 159,225 구 5,912,784	6,409,280 시 466,987 구 5,942,293	4,399,499 시 31,975 구 4,367,524	4,238,709	5,944,156
지역경제 활성화	1,674,023 국 484,640 시 219,933 구 969,453	502,677		1,085,290 시 434,762 구 650,528	781,622	722,569	2,781,22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781,317	277,400		281,320	284,600	300,234	256,140
마포희망시장 운영	16,100	16,100			16,100	16,096	13,150
일반운영비	900	900			900	900	3,650
행사운영비	900	900			900	900	3,650
업무추진비	200	200			200	196	0
민간이전	15,000	15,000			15,000	15,000	9,000
마포웨딩타운 축제 지원	26,600	26,600			26,500	26,496	20,700
업무추진비	600	600			500	496	0
민간이전	26,000	26,000			26,000	26,000	15,000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144,600	129,900			82,200	76,673	67,700
일반운영비	83,000	69,000			50,200	44,848	45,700
사무관리비	15,000	12,000					
행사운영비	68,000	57,000			50,200	44,848	36,700
업무추진비	5,000	4,500			3,000	2,825	7,000
민간이전	56,600	56,400			29,000	29,000	15,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104,800	104,800			107,800	106,645	103,590
일반운영비	3,800	3,800			6,800	1,680	19,840

	행사운영비	3,800	3,800		3,800	1,680	5,100
	사무관리비				3,000	0	7,040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996	0
	민간이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
	자산취득비					3,969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지정		481,140	0	3,920			
	일반운영비	2,940	0	3,920			
	사무관리비	2,940	0	3,920			
	업무추진비	1,000	0				
	시설비 및 부대비	477,200	0				
DMC 입주기업 지원		8,077	0				
	일반운영비	2,977	0				
	행사운영비	2,977	0				
	업무추진비	5,100	0				
해외시장 개척 지원					52,000	44,322	51,000
	일반운영비				5,000	4,870	5,000
	사무관리비				5,000	4,870	5,000
	업무추진비				1,000	993	0
	민간이전				46,000	38,458	46,000
마포구상공회 지원						30,000	
	민간이전					30,000	
지역상권 살리기		485,449 국 299,640 시 108,933 구 76,876	4,254		458,560	47,200	2,500,614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3,254	3,254		7,560	30,241	3,141
	일반운영비	2,754	2,754		7,060	3,641	3,141
	사무관리비	2,754	2,754		7,060	3,641	3,141
	업무추진비	500	500		500	500	0
	민간이전					26,100	
재래시장 현대화		482,195 국 299,640 시 108,933 구 73,622	0 0 0 0				
	업무추진비	1,000	0				
	민간자본이전	482,195 국 299,640 시 108,933 구 72,622	0 0 0 0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451,000	997	0
	업무추진비				1,000	997	0
	민간자본 이전				451,000	0	0
걷고싶은거리 활성화지원						15,961	
	시설비 및 부대비					15,961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		407,260 국 185,000 시 111,000 구 111,260	221,023		38,462	375,135	24,470
물가조사 및 안정적 관리		17,444	26,178		24,588	20,115	21,370
	인건비	13,200	20,160		19,530	17,453	17,640
	일반운영비	3,044	4,818		4,258	1,875	2,930
	사무관리비	3,044	4,818		4,258	1,875	2,930
	업무추진비	1,200	1,200		800	786	800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		9,845	8,845		3,086	347,732	0
	일반운영비	9,045	5,545		986	932	0
	사무관리비	1,545	5,545		986	932	0
	공공운영비	7,500					
	업무추진비	800	800		300	298	0
	자산취득비				1,800	1,100	0
	시설비 및 부대비					24,556	
	민간자본이전					320,844	
계량기 정기 검사		9,971	0		8,948	7,059	0
	인건비	7,664	0		6,203	4,966	0
	일반운영비	1,907	0		2,345	1,695	0
	사무관리비	1,907	0		1,907	1,695	0
	공공운영비				438	0	0

업무추진비	400	0			400	398	0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70,000 국 185,000 시 111,000 구 74,000	186,000					
시설비 및 부대비	370,000 국 185,000 시 111,000 구 74,000	186,000					
공산품 단속					1,840	228	0
일반운영비					1,540	0	0
사무관리비					1,540	0	0
업무추진비					300	228	0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 (농축산 농가 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	103,640 시 30,318 구 73,322	74,090			86,060 시 31,975 구 54,085	138,446	72,390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 (농축산 농가 지원)	103,640 시 30,318 구 73,322	74,090			86,060 시 31,975 구 54,085	138,446	72,390
농산물직거래	3,600	3,600			3,600	70,200	18,600
일반운영비	2,600	2,600			600	413	9,600
행사운영비	2,600	2,600					
사무관리비					600	413	600
일반보상금	1,000	1,000			3,000	1,141	9,000
민간이전						68,645	
동물보호 관리 (유기동물 보호 및 공수의 운영)	100,040 시 30,318 구 69,722	70,490			8,920	3,090	51,540
일반운영비	3,940	2,940			5,320	2,940	2,940
사무관리비	3,940	2,940			5,320	2,940	2,940
재료비	2,500	2,500					
민간이전	93,600 시 30,318 구 63,282	65,050			600	150	48,600
자산취득비					3,000	0	0
농축산 농가 지원					2,140	8,881	2,250
재료비					2,140	2,137	2,250
여비						3,800	
업무추진비						2,143	
일반보상금						801	
유기동물 관리					71,400 시 31,975 구 39,425	56,274	0
민간이전					71,400 시 31,975 구 39,425	56,274	0
행정운영경비 (지역경제과)	138,268	102,728			99,339	91,775	5,604
기본경비 (지역경제과)	138,268	102,728			99,339	91,775	5,604
기본경비	138,268	102,728			99,339	91,775	5,604
일반운영비	54,268	43,448			33,819	29,185	5,604
사무관리비	54,268	43,448			33,819	29,185	5,604
매식비	42,000				22,680		
여비	84,000	59,280			65,520	62,590	0
재무활동 (지역경제과)	58,514	449,753	5,121,583	5,147,172	3,432,478	3,285,917	3,084,938
내부거래지출 (지역경제과)	58,514	449,753	1,449,753		3,432,478	3,285,914	3,084,938
내부거래지출	58,514	449,753	1,449,753		3,432,478	3,285,914	3,084,938
공기업경상전출금	58,514	49,753			3,132,478	2,785,914	2,884,938
마포비즈니스센터	58,514	49,753					
기금전출금			1,400,000		300,000	500,000	2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400,000		300,000		200,000
보전지출 (지역경제과)				25,589		3,720	
보전지출				25,589		3,720	
반환금 기타				25,589		3,720	
국고 보조금 반환금				13,787		3,720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802			

2) 조례

조례	중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운전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4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한다. ▶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포구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 가. 매출수수료 나. 임대료수익 다. 주차료수익 라. 이자 및 배당금

	마. 관리비수익 바. 기타 잡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 2. 예비비 등 기타 ▶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이 조례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인"이란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법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담당업무 : 안흥기 과장 3153-8560

팀 명	담 당 업 무
경제진흥팀장 도대오 3153-8551	● 김명희 : 서무주임, 물품관리 ● 변치봉 : IT박람회 참가 지원, 세계한상대회 기업지원, 지역경제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조례개정, 상공회 등 중소기업지원 관련 업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업무 ● 신수연 :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 맞춤형 입찰정보운영, 마포구 중소기업 온라인 홍보관운영 e-trade 지원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대상 소자본 창업강좌 ● 유희경 :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타 기금 알선 홍보, 마포희망시장 운영 지원 업무 ● 김남수 : 출산휴가증
유통관리팀장 최용희 3153-8561	● 김기정 : 물가관리 및 공정거래에 관한 업무, 계량에 관한 업무, 공산품에 관한 업무,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에 관한 업무, 복권판매소 지도, 점검에 관한 업무 ● 윤성환 : 농수축산업무, 농수산물직거래업무, 농지취득 자경증명 및 자경사실증명 업무, 충무계획,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가축전염병에 관한 업무, 공수의 업무, 정부대여 양곡관리 업무 ● 박진호 :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에 관한 업무,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무, 대부업 관련 민원접수, 대부업 등록 신고 처리, 대부업 변경 및 갱신등록 신고 처리, 대부업 폐업신고 처리 및 등록증 재교부, 담배소매인 지정서 교부 ● 김용수 : 담배판매 업소지정에 관한 사항, 담배판매 지정업소 행정처분, 대부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부업 영업행위 지도, 감독, 피해민원 상담 처리, 실태조사 및 업무보고서 수합, 과태료 부과징수, 등록갱신안내 등 기타 대부업에 관한 사항 ● 고영희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육아휴직 중
시장관리팀 박춘주 3153-8571	● 허영희 : 재래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시행구역 지정입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중지 및 폐지인가,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시장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완료.이전 고시 ● 이종태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인정시장 및 상인회등록에 관한 사항관련 업무 ● 조윤주 :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등에 대한 지도 감독,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및 이벤트행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안전관리, 상인회(재래시장, 상점가)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록변경폐업 지도에 관한 사항 ● 박재숙 : 출산휴가증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3153-8581	● 황선호 : 도시가스 관련업무, LPG시설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연탄 및 연료 사용현황 조사 관리업무 ● 김경일 : 석유판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유사석유제품 관련 업무, 고압 가스시설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전문건설업(가스, 난방시공업) 관련 업무 ● 서홍교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한 업무, 전기설비에 관한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 충무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DMC지원팀장 변반수 3153-8554	● 송금용 : 개발진흥지구계획 수립추진 총괄, 개발진흥지구 협의회 관련사항, 앵커시설 관련업무(위탁 운영등). 권장업종지원업무, DMC내 기능부서별 추진사업 총괄관리

③ 재무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재무과	305,836	282,028	311,758 시 26,400 구 285,358	451,650 시 95,680 구 355,970	250,582	171,473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16,329	103,790			74,974	71,108
사무관리비(토지현황,분량,감정평가수수료등)	11,375	20,501			20,501	21,237
공공운영비	98,484	76,924			48,108	43,506
-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가입비	24,950	76,824			48,050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가입비	73,434					
- 가스보험 가입비	100	100			50	
포상금(과년도 재산수입, 변상금 징수포상금)	6,470	6,365			6,365	6,356
원가심사,계약,회계 업무의 효율적 운영	83,874	76,290	79,620		69,864	71,651
사무관리비	62,114	63,562			59,260	62,752
- 인쇄비(결산서,급여명세서,계약심사사례집등)	15,540	21,457			20,685	
- 전문서적 구입비,불용품 감정수수료	1,595	2,195			2,195	
- 온비드공개입찰수수료,전자계약관리시스템유지보수	11,430	9,200			13,740	
- 계약내역공개시스템유지보수,전자태그구입비	8,079	3,720			3,000	
-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10만원*5명*20일	10,000	10,400			10,400	
-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7만원*7명*15회*80%	1,120	2,240			2,240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7만원*7명*15회	7,350	7,350			-	
-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만원*350건	7,000	7,000			7,000	
공공운영비(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8,060	2,358			1,904	699
시책업무추진비(회계,결산,계약,심사,물품관리)	9,200	9,200			8,700	8,200
결산검사위원회 여비	4,500	1,170	4,500		-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17,000	18,300			37,000	27,800
사무관리비(지침 및 교재,재무보고서발간,전문가자문료)	17,000	18,300			35,800	26,600
복식부기 업무추진	-	-			1,200	1,200
행정운영경비(재무과)	88,633	83,648			68,744	914
- 사무관리비(매식비7,000원*20일*17명*12월)	31,513	30,608(7,000원*20일*17명)			18,824(5,000원*18일*16명)	914
- 여비 20,000원*14일*17명*12월	57,120	53,040(13일*17명)			49,920(13일*16명)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	-		70,612		
- 2007년도 국,시유재산관리 반환금				57,728		
- 2008년도 국,시유재산관리 반환금				12,884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마포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

관한 조례	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영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단,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

3) 담당업무 : 구병태 과장 3153-8610

팀 명	담 당 업 무
재산관리팀 김철수 3153-8601	●윤철원 : 과사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재산관리관 지정업무 ●김동수 :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 행정재산총괄 업무, 공유재산 소송업무 ●강경희 : 국유지권리보전, 감정평가법인관리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공덕, 도화, 대흥, 염리, 신수, 서강 성산 1,2) ●박천석 : 공유(시유, 구유)재산관리 및 처분 - 아현, 공덕, 도화, 용강, 대흥, 신수동 ●정창훈 :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실태조사, 매각, 대부, 변상금부과등 관련업무) - 아현, 용강, 서교, 합정, 망원 1,2, 연남, 상암동 ●배효인 : 국공유재산 세입징수업무 국공유재산 체납관리 세외수입 업무
심사팀 박명자3153-8611	●안진우 : 건축분야 계약원가 심사 ●김중희 : 조경분야 계약원가심사 ●신준호 : 토목분야 계약원가심사
계약팀 박현욱 3153-8621	●이수라 : 용역계약(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윤정희 : 공사수의계약, 공사전자공개수의(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용역(건설교통국) 계약 관리 시스템운영 ●이소희 : 인쇄물계약, 조달구매(관급자재, 행정사무용품) ●박광운 :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공사전자공개수의(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장하지 : 물품제조, 구매, 관리 물품단가계약 구매에관한사항 희망근로관리 ●오정락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구매에 관한 사항 실적증명서
복식부기지출팀 행정민원팀장 김갑원 3153-6961	●전성문 : 복식부기 업무 총괄 시.구비 재무회계 결산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정지혜 : 복식부기 자치구 예산지출 및 결산 일상경비정산 및 지출증빙서 관리 ●나혜진 : 결산검사 및 구비결산 총괄, 국.시비예산지출 및 결산, 구금고 및 자금관리 ●김유한 : 직원봉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세외수입외 현금 관리 수입증지 및 수불관리

④ 세무1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세무1과	795,246	923,670		972,469	728,914	734,219	523,991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적극관리	603,764	725,165		772,007	565,581	568,682	516,431
지방세 부과징수	537,772	592,140		638,982	561,756	566,877	512,731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498,380	552,065		598,907	523,815	535,803	479,379
일반운영비	492,670	546,380		548,415	518,130	484,178	475,694
사무관리비	105,290	117,440			118,250	89,595	102,564
공공운영비	387,380	428,940		430,975	399,880	394,583	373,130
업무추진비	5,000	5,000		14,800	5,000	9,996	3,000
포상금	710	685		3,085	685	668	685
자산취득비				32,607		40,959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 홍보 강화	39,392	40,075			37,941	31,074	33,352
일반 운영비	39,392	40,075			37,941	31,074	33,352
사무관리비	39,392	40,075			37,941	31,074	33,352
세외 수입 적극관리	65,992	133,025			3,825	1,804	3,700
세외 수입의 효율성 제고	65,992	133,025			3,825	1,804	3,700
일반 운영비	63,992	131,025			1,825	1,804	1,700
사무관리비	14,592	1,825			1,825	1,804	1,700
공공운영비	49,400	129,200					
포상금	2,000	2,000			2,000	0	2,000
행정 운영 경비 (세무1과)	191,482	198,505			163,333	156,825	7,560
기본 경비 (세무1과)	191,482	198,505			163,333	156,825	7,560
기본 경비	191,482	198,505			163,333	156,825	7,560
일반 운영비	77,242	86,185			57,253	50,745	7,560
사무관리비	77,242	86,185			57,253	50,745	7,560
급량비 7,000원*20일*34명*12월	57,120				36,720		
여비 20,000원*14일*34명*12월	114,240	112,320			106,080	106,080	0
재무활동 (세무1과)				1,957		8,712	
보전지출 (세무1과)				1,957		8,712	
보전지출				1,957		8,71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7		8,712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세무공무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부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사업소세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3) 담당업무 : 이재덕 과장 3153-8700

팀 명	담 당 업 무
세입총괄팀장 임인규 3153-8701	● 김화원 : 서무주임 ● 이윤경 : 과오납환부 ● 최명옥 : 현계 ● 박선희 : 과오납환부, 담당세목 소인(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 이현정 : 휴직

	● 윤은영 : 서무, 담당세목 소인(취.등록세,자동차세,면허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팀장 이병수 3153-8711	● 박재만, 김철우, 김동민 : 자동차세 부과징수 ● 양경수 : 차량 취득등록세 부과 ● 강은정, 임유라 : 차량취등록세 자납
주민세팀장 윤민선 3153-8721	● 신항숙, 이경만, 이석우, 권혜숙, 윤은주, 김명선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3153-8731	● 양동기 : 부동산 압류 ● 박창규 : 체납총괄 ● 전창우 : 결손총괄 ● 김동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총괄 ● 김장기 : 세무종합시스템 전산담당 ● 김채현 : 공매총괄 ● 이용석, 김양술, 박찬기 : 번호판영치(서울시시설관리공단파견직원)
세외수입팀장 김규식 3153-8741	● 임두영 : 면허세총괄 ● 김정해 : 세외수입 총괄 ● 차현숙 : 세외수입현계 ● 이정희 : 면허세 부과 징수

⑤ 세무2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세무2과	601,631	623,738		627,388	561,869	534,420	331,045
자주 자원 확충	411,471	437,578		441,228	395,483	376,635	325,182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315,230	327,163		330,813	285,138	291,677	238,825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294,821	303,997		307,647	260,128	279,689	224,106
인건비					4,566	4,491	0
일반 운영비	278,273	282,985			239,469	250,608	208,853
사무관리비	46,437	47,939			38,439	64,795	37,617
공공운영비	231,836	235,046			201,030	185,813	171,236
업무추진비	5,000	5,000		8,000	5,000	7,499	3,000
자산취득비				650		6,166	
포상금	11,548	11,281			11,093	10,923	12,253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20,409	23,166			25,010	11,988	14,719
일반 운영비	20,409	23,166			25,010	11,988	14,719
사무관리비	20,409	23,166			25,010	11,988	14,719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	96,241	110,415			110,345	84,958	86,357
개별주택가격 공시	96,241	110,415			110,345	84,958	86,357
인건비	13,999	14,185			13,698	13,698	12,115
일반 운영비	80,117	92,981			95,397	70,056	72,992
사무관리비	76,253	88,915			91,187	66,507	68,869
공공운영비	3,864	4,066			4,210	3,548	4,123
여비	1,500	1,250			750	710	750
업무추진비	625	500			500	493	500
행정운영경비 (세무2과)	190,160	186,160			166,386	157,784	5,863
기본경비 (세무2과)	190,160	186,160			166,386	157,784	5,863
기본경비	190,160	186,160			166,386	157,784	5,863
일반 운영비	75,920	76,960			57,186	50,004	5,863
사무관리비	75,920	76,960			57,186	50,004	5,863
급량비 7,000원*34명*20일*12월	57,120				37,800		
여비 20,000원*14일*34명*12월	114,240	109,200			109,200	107,780	0

2) 담당업무 : 이용근 과장 3153-8760

팀 명	업 무 내 용
재산세1팀장 박재숙 3153-8751	● 송희옥 : 서무주임 ● 박찬세 : 재산세(건물) 총괄 부동산세목 부과징수, 용강동 담당 ● 조혜연 : 부동산세목 담당 망원1동, 망원2동 ● 안양순 : 재산세 토지총괄 서강동 담당 ● 전재동 : 부동산 세목 담당(합정동, 성산1동) ● 김유진 : 부동산 세목 개인담당(염리동, 성산2동) ● 하중섭 : 부동산세목담당 아현동 ● 김주희 : 부동산 취.등록세 자납총괄 ● 이혜란 : 회계서무 ● 김옥광 : 장기휴직
재산세2팀장 육심호 3153-8761	● 강병원 : 부동산 취득세 총괄 부동산세목 부과징수 상암동담당 ● 김미라 : 부동산 등록세 총괄 부동산 세목 부과징수 담당(공덕동-舊신공덕동, 대흥동) ● 전미경 : 부동산 취득등록세 동담당(개인) 신수동, 서교동(舊 동교동) ● 안철 : 부동산 세목 부과징수 담당(서교동-舊서교동) ● 김나진 : 부동산세목 담당 공덕동(舊 공덕1동, 舊 공덕2동 중 11,12통),도화동 담당 ● 이승현 : 부동산 세목 부과징수 담당(공덕동-舊아현1동, 연남동)
법인팀장 류필상 3153-8771	● 정은주 : 법인관련 세목담당(동교동, 합정동) ● 유준형 : 법인 관련 세목담당(도화동, 상암동, 염리동) ● 이명희 : 법인관련 세목담당(아현동, 용강동, 연남동) ● 이은옥 : 법인관련 세목담당(신수동, 서교동-舊서교동) ● 유상민 : 법인관련 세목담당 공덕동, 대흥동 담당 ● 강병호 : 법인 관련 세목 담당(서강동, 망원동, 성산동)
체납징수2팀장 정일용 3153-8781	● 송문호 : 과년도 체납총괄 담당 ● 임창진 : 교부청구 담당 ● 김천기 : 현년도 체납총괄
과표팀장 김민중 3153-8791	● 구순양 :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덕,도화,성산,상암,현석,구수동) ● 김광수 : 개별주택가격 조사(용강동, 대흥동, 신수동, 서교동) ● 서병덕 : 개별주택가격 조사 담당 (염리동, 서강동,합정동,망원동) ● 정찬미 :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아현동,동교동,상수동,연남동

<주민 생활국>

① 주민 생활지원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주민생활지원과	16,903,830 국 4,712,184 시 4,676,711 구 7,514,935	12,512,286	13,776,933 국 1,781,557 시 2,824,359 구 9,171,017	20,344,839 국 2,724,423 시 3,694,024 구 13,926,392	11,284,366 국 1,558,682 시 2,286,640 구 7,439,044	12,488,529	12,775,288
기초생활지원	3,360,194 국 1,911,814 시 929,625 구 518,755	3,729,160	3,910,525 국 1,298,442 시 687,135 구 1,924,948	5,169,601 국 1,927,979 시 1,001,904 구 2,239,718	4,301,842 국 1,201,331 시 636,226 구 2,464,285	4,163,264	4,254,236
복지지원	876,559 국 465,523 시 226,771 구 184,265	407,562	605,778 국 300,232 시 150,117 구 155,429	1,713,143 국 853,914 시 426,958 구 432,271	392,408 국 193,734 시 96,867 구 101,807	452,918	452,214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4,580	4,473			4,100	3,476	2,210
일반 운영비	4,080	3,973			3,300	2,676	1,760
사무관리비	2,280	2,173			1,500	1,418	500
공공운영비	1,800	1,800			1,800	1,258	1,260
업무추진비	500	500			500	500	0
자산취득비					300	300	450
간급 복지 지원	572,440 국 285,800 시 142,900 구 143,740	189,934	388,150 국 193,655 시 96,828 구 97,667	1,495,515 국 747,337 시 373,669 구 373,669	228,840 국 114,000 시 57,000 구 57,840	288,210	284,804
일반 운영비	840	840			840	210	1,260
사무관리비	840	840			840	210	1,260
일반보상금	571,600 국 285,800 시 142,900 구 142,900	189,094	387,310 국 193,655 시 96,828 구 96,827	1,494,675 국 747,337 시 373,669 구 373,669	228,000 국 114,000 시 57,000 구 57,000	288,000	283,544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165,667 국 99,400 시 46,387 구 19,880	213,155			159,468 국 79,734 시 39,867 구 39,867	161,232	165,200
일반보상금	165,667	213,155			159,468	161,232	165,200
희망 키움 통장 사업	133,872 국 80,323 시 37,484 구 16,065	0					
일반보상금	133,872 국 80,323 시 37,484 구 16,065	0					
자활 지원	2,483,635 국 1,446,291 시 702,854 구 334,490	3,321,598	3,304,747 국 998,210 시 537,018 구 1,769,519	3,456,458 국 1,074,065 시 574,946 구 1,807,447	3,909,434 국 1,007,597 시 539,359 구 2,362,478	3,710,346	3,802,022
자활 근로 사업	2,125,982 국	2,877,273	1,364,536 국 611,708		1,513,128 국 695,734	1,368,413	1,544,993

		1,275,589 시 595,275 구 255,118		시 305,854 구 446,974		시 347,867 구 469,527		
	민간 이전	1,491,428 국 894,857 시 417,600 구 178,971	1,452,982	1,364,536 국 611,708 시 305,854 구 446,974		1,513,128 국 695,734 시 347,867 구 469,527	1,368,413	1,544,993
	시설비 및 부대비	634,554 국 380,732 시 177,675 구 76,147	1,424,291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1,495,886 국 185,738 시 92,869 구 1,217,279	1,647,597 국 261,593 시 130,797 구 1,255,207	2,069,216 국 167,728 시 83,864 구 1,817,624	2,020,913	1,943,520
	시설비 및 부대비			1,495,886 국 185,738 시 92,869 구 1,217,279	1,647,597 국 261,593 시 130,797 구 1,255,207	2,069,216 국 167,728 시 83,864 구 1,817,624	2,020,913	1,943,520
	디딤돌 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24,513 국 12,442 시 11,849 구 222	31,639			29,644 국 14,822 시 12,911 구 1,911	23,152	26,000
	일반보상금	1,853 국 1,112 시 519 구 222	9,639			7,644 국 3,822 시 1,911 구 1,911	1,152	4,000
	민간 이전	22,660 국 11,330 시 11,330	22,000			22,000 국 11,000 시 11,000	22,000	22,000
	지역 자활 센터 운영 (및 청소년자활센터 운영)	255,267 국 127,633 시 63,817 구 63,817	249,294			236,626 국 118,313 시 59,157 구 59,156	242,167	235,000
	민간 이전	255,267 국 127,633 시 63,817 구 63,817	249,294			236,626 국 118,313 시 59,157 구 59,156	242,167	235,000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20,000 국 12,000 시 5,600 구 2,400	20,000			22,000 국 11,000 시 5,500 구 5,500	22,000	20,000
	민간 이전	20,000 국 12,000 시 5,600 구 2,400	20,000			22,000 국 11,000 시 5,500 구 5,500	22,000	20,0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지원	17,000 시 17,000	16,956			16,560 시 16,560		14,280
	민간이전	17,000 시 17,000	16,956			16,560 시 16,560		14,280
	자활 기관 협약체 운영	3,620	3,760			4,260	3,280	896
	일반 운영비	1,120	1,260			1,260	280	896
	사무관리비	1,120	1,260			1,260	280	896
	업무추진비	2,500	2,500			3,000	3,000	0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37,253 국 18,627 시 9,313 구 9,313	100,596					
	민간 이전	37,253 국 18,627 시 9,313 구 9,313	100,596					
	지역봉사 사업					18,000 시 13,500	15,670	17,333

						구 4,500		
	일반 보상금					14,000 시 10,500 구 3,500	11,820	13,493
	민간이전					4,000 시 3,000 구 1,000	3,850	3,840
	주민생활지원	6,879,373 국 374,756 시 2,546,288 구 3,958,329	6,455,571	6,616,996 국 483,115 시 1,755,610 구 4,378,271	10,690,506 국 777,775 시 1,885,035 구 8,027,696	4,687,395 국 357,351 시 1,635,414 구 2,694,630	4,935,382	6,052,217
	주민생활지원 강화	600,705 국 46,599 시 183,439 구 370,667	422,020		547,530 국 70,660 시 157,375 구 319,495	390,750 시 114,380 구 276,370	340,030	340,070
	저소득 주민 위문 사업	215,000	215,000			205,200	202,280	198,000
	일반보상금	215,000	215,000			205,200	202,280	198,000
	사회 복지 전담 공익 요원 운영	147,488 시 112,140 구 35,348	134,820		134,330 시 103,705 구 30,625	165,550 시 114,380 구 51,170	83,949	125,020
	일반보상금	147,488 시 112,140 구 35,348	134,820		134,330 시 103,705 구 30,625	165,550 시 114,380 구 51,170	83,949	125,020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21,680	18,200			20,000	18,800	17,050
	일반 운영비	6,480	4,000			4,000	2,800	1,050
	사무관리비	6,480	4,000			4,000	2,800	1,050
	업무추진비	15,200	14,200			16,000	16,000	16,000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활동비 지원	48,000 시 48,000	54,000				35,000	
	업무추진비	48,000 시 48,000	54,000				35,000	
	희망복지129 사례관리 사업	132,537 국 46,599 시 23,299 구 62,639	0					
	인건비	93,197 국 46,599 시 23,299 구 23,299	0					
	일반 운영비	3,040	0					
	사무관리비	3,040	0					
	업무추진비	300	0					
	일반보상금	36,000	0					
	제2기 지역 복지계획 수립	36,000	0					
	일반 운영비	34,800	0					
	사무관리비	34,800	0					
	업무추진비	1,200	0					
	민생안정 추진 전문 요원 운영				64,800 국 45,360 시 9,720 구 9,720			
	인건비				64,800 국 45,360 시 9,720 구 9,720			
	민생안정 추진 사업 지원				31,200 국 25,300 시 7,950 구 27,950			
	일반 운영비				9,960 국 4,980 구 4,980			
	사무관리비				9,960			
	업무추진비				540			

				국 270 구 270			
	일반보상금			29,500 국 14,750 구 14,750			
	자산취득비			21,200 국 5,300 시 7,950 구 7,950			
	지역복지역량 제고	6,238,268 국 328,157 시 2,362,849 구 3,547,262	5,993,151	6,154,576 국 483,115 시 1,615,660 구 4,055,801	10,102,576 국 707,115 시 1,727,660 구 7,667,801	4,269,845 국 357,351 시 1,521,034 구 2,391,460	4,560,332 5,700,347
	마포종합복지 자원센터 건립 사업	2,350,000	3,299,604			1,591,431	1,875,021 2,973,525
	일반 운영비					3,000	978,650 3,000
	공공운영비					3,000	978,650 3,000
	시설비 및 부대비	2,350,000	3,299,604			1,588,431	1,874,042 2,970,525
	마포구 고용복지 지원센터 운영	420,929	408,505			421,800	417,893 0
	민간이전	420,929	408,505			421,800	417,893 0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964,000 시 807,325 구 156,675	52,000			165,572 시 76,516 구 89,056	159,485 48,550
	시설비 및 부대비	306,426 시 153,213 구 153,213	0				
	민간자본 이전	657,574 시 654,112 구 3,462	52,000			165,572 시 76,516 구 89,056	159,485 48,550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19,810	24,482			18,330	20,096 10,720
	일반 운영비	6,810	7,482			9,330	7,279 6,720
	사무관리비	6,810	7,482			9,330	7,279 6,720
	업무추진비	4,000	5,000			5,000	4,600 4,000
	민간이전	9,000	12,000			4,000	8,217 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56,313 국 328,157 시 164,078 구 164,078	556,800				
	민간이전	656,313 국 328,157 시 164,078 구 164,078	556,800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지원	1,382,176 시 1,353,546 구 28,630	1,313,453			1,265,843 시 1,265,843	1,315,956 0
	민간이전	1,382,176 시 1,353,546 구 28,630	1,313,453			1,265,843 시 1,265,843	1,315,956 0
	푸드마켓(뱅크) 설치 및 운영 지원	252,910 시 37,900 구 215,010	177,030			49,167	379,895 0
	일반 운영비						300,000
	사무관리비						300,000
	민간이전	182,910 시 37,900 구 145,010	128,030			39,167	39,918 0
	민간 자본 이전						30,000
	자산취득비					10,000	9,976 0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80,000	147,582				56,481
	일반 운영비						1,484
	사무관리비						20
	행사운영비						1,464
	업무추진비						0

	민간 이전	180,000	147,582				30,567	
	시설비 및 부대비						5,000	
	자산취득비						19,428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동원	4,490	5,037					
	일반 운영비	3,490	4,037					
	사무관리비	3,490	4,037					
	업무추진비	1,000	1,000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 지원	4,800	5,700					
	일반운영비	4,200	5,700					
	사무관리비	4,200	5,700					
	업무추진비	600	0					
	복지위원 운영	2,840	2,958					
	일반 운영비	440	558					
	사무관리비	440	158					
	업무추진비	2,400	2,400					
	희망의 씨앗 새일 나누기			154,925				
	민간 이전			154,925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716,800 국 358,400 시 179,200 구 179,200	714,702 국 357,351 시 178,675 구 178,676	297,710	0
	일반 운영비						468	
	사무관리비						438	
	공공운영비						29	
	일반보상금						0	
	민간이전				716,800 국 358,400 시 179,200 구 179,200	714,702 국 357,351 시 178,675 구 178,676	297,242	0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288,000 국 144,000 시 72,000 구 72,000			
	민간이전				288,000 국 144,000 시 72,000 구 72,000			
	마포 창업복지관 시설확충					43,000	37,793	0
	시설비 및 부대비					43,000	37,793	0
	취약 계층 보호	40,400	40,400			26,800	35,020	11,800
	노숙인 보호	600	600			400	400	400
	업무추진비	600	600			400	400	400
	무연고 사망자 장사 지원	4,800	4,800				4,620	
	일반 운영비	4,800	4,800				4,620	
	사무관리비	4,800	4,800				4,620	
	이재민 구호 및 저소득층 보호	5,000	5,000			5,000	0	5,000
	업무추진비	5,000	5,000			5,000	0	5,000
	서울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30,000	30,000			15,000	30,000	0
	출연금	30,000	30,000				30,000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	5,923,998 국 2,425,614 시 1,144,157 구 2,354,227	1,695,322	2,617,179 시 343,000 구 2,274,179		1,644,608	2,747,559	1,426,978
	고용촉진 및 안정	5,923,998 국 2,425,614 시 1,144,157 구 2,354,227	1,695,322	2,617,179 시 343,000 구 2,274,179		1,644,608	2,747,559	1,426,978
	공공 근로 사업	1,208,888	1,459,185	2,381,042 시 343,000 구		1,487,3693	2,602,275	1,268,782

				2,038,042				
	인건비	1,207,544	1,457,841	2,378,698 시 342,000 구 2,036,698		1,485,123	2,597,159	1,284,990
	일반 운영비	1,344	1,344			2,240	1,115	1,792
	사무관리비	1,344	1,344			2,240	1,115	1,792
	업무추진비						4,000	
	취업정보은행 운영	8,480	7,700			7,100		5,400
	일반 운영비	5,480	4,700			4,100	6,928	3,400
	사무관리비	5,480	4,700			4,100	3,928	3,400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3,000	2,000
	희망근로 사업	4,576,630 국 2,425,614 시 1,144,157 구 1,006,859	0					
	인건비	3,597,830 국 1,906,850 시 899,457 구 791,523	0					
	일반 운영비	174,800 국 92,644 시 43,700 구 38,456	0					
	사무관리비	174,800	0					
	업무추진비	4,000 국 2,120 시 1,000 구 880	0					
	재료비	800,000 국424,000 시200,000 구176,000	0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130,000	0					
	일반 운영비	9,000	0					
	사무관리비	9,000	0					
	업무추진비	1,000	0					
	민간이전	120,000	0					
	행정 서포터즈 운영					107,744	98,702	95,128
	인건비					107,744	98,702	95,128
	사회 복지 서포터즈 운영					41,901	39,158	39,238
	인건비					41,901	39,158	39,238
	직업소개업소 관리					500	495	430
	일반 운영비					500	495	430
	사무관리비					500	495	430
	국가보훈지원	89,598	77,658			68,089	66,780	57,449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89,598	77,658			68,089	66,780	57,449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	63,398	54,658			53,089	51,780	50,249
	일반 운영비	2,398	2,458			2,689	2,060	1,749
	사무관리비	2,398	2,458			2,689	2,060	1,749
	업무추진비	6,800	6,000			6,000	6,000	48,500
	일반보상금	54,200	46,200			44,400	43,720	0
	국가유공자 행사 지원	26,200	23,000			15,000	15,000	7,200
	민간이전	26,200	23,000			15,000	15,000	0
	행정 운영 경비 (주민생활지원과)	233,223 시 56,641 구176,582	169,180		174,355 시 38,614 구 135,741	138,767 시 15,000 구 123,767	122,523	758,608
	인력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	56,641 시 56,641	38,614			15,000 시 15,000	14,700	14,000
	인력 운영비	56,641 시 56,641	38,614			15,000 시 15,000	14,700	14,000
	인건비	56,641	38,614			15,000	14,700	14,000

		시 56,641			시 15,000		
	기본경비 (주민생활지원과)	176,582	130,566		135,741	123,767	107,823
	기본경비	176,582	130,566		135,741	123,767	107,823
	일반 운영비	69,062	52,566		57,741	39,527	32,863
	사무관리비	69,062	52,566		57,741	39,527	32,863
	특근매식비(7,000원*32명*20일*12월	53,760				29,160	
	여비 20,000원*32명*14일*12월	107,520	78,000			84,240	74,960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	417,444	385,395		1,171,400	443,665	453,019
	내부거래지출 (주민생활지원과)	417,444	385,395		885,395	443,665	365,498
	내부거래지출	417,444	385,395		885,395	443,665	365,498
	공기업 경상 전출금	417,444	385,395			243,665	165,498
	기금 전출금				500,000	200,000	200,000
	보전지출 (주민생활지원과)				286,005		87,520
	보전지출				286,005		87,520
	반환금 기타				286,005		87,520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394		44,329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611		43,191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5.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 용자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 기금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또는 그에 따른 용자회수금 등 2. 마포구의 예산에 의한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용자회수금 또는 이자·연체료 등 수익금 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 ▶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제2항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7.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민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0번지에 둔다. ▶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고용·복지 증진사업 2. 고용촉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4. 취미·여가활동·문화·교양 교육사업 5.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에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5.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3) 담당업무 : 김정호 과장 3153-8810

팀 명	업 무 내 용
복지행정팀장 이기락 3153-8801	● 한경미 : 국.과 서무주임, 구의회 관련 업무 처리, 예산 및 회계 관련 사항 업무, 국내 수합 보고사항 처리, 지방이양사업 관련 업무,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윤신 : 희망드림 프로젝트 총괄, 재해구호업무,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관리, 무연고자 사망 장제 업무, 사회복지 서포터즈, 공익, 공공근로 관련 업무 ● 강은영 : 주민생활지원 업무 총괄, 지역복지계획 수립, 마포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력관리, 기타 복지기획 관련업무, 민간위탁시설 및 사업 서비스 평가 ● 윤선영 : 사회복지법인관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사회복지시설관리 총괄, 기초푸드마켓 설치, 주민서비스업무 추진(생활공감 정책, 평가 등), 문서접수, 배분, 물품관리, 인터넷 민원처리 업무, 보안관련 업무(총무계획 등) ● 임하모 :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동행정 평가 업무, 성과관리 업무,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사업,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황진호 : 노숙자 부랑인 단속 및 수용보호 처리. 환경순찰 업무 총괄, 노고산 복지센터 관리, 초과업무 처리 ● 한만석 :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차상위계층 임대료 지원, 주거지원사업(다가구, 영구임대아파트. 기존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정보제공, 불량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 이미경 : 국장실 업무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은영 3153-8811	● 서경자 : 통합관리기획 총괄,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판정, 통합조사 및 관리-신수동, 성산1동 ● 안중원 : 차상위자활 및 기타, 조사 및 관리 통계, 통합조사 및 관리-염리동, 서강동 ● 정월순 : 통합조사스터디 운영, 전출입 변동관리, 통합조사 및 관리-공덕동, 망원1동 ● 김지영 : 통합조사기획 총괄,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 통합조사 및 관리-용강동, 성산2동 ● 이수정 :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 문제해결사례회의 운영, 통합조사 및 관리-아현동, 연남동 ● 유성란 : 출산휴가

	● 최유진 : 긴급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통합조사 및 관리-서교동, 망원2동 ● 김경수 : 기초노령연금, 통합조사 및 관리-대흥동, 상암동 ● 오대성 : 보육료감면, 양육수당, 통합조사 및 관리-도화동, 합정동
자활고용지원팀장 권영숙 3153-8821	● 최은영 : 자활사업 총괄 관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기관협의체 및 마포지역자활센터운영,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인센티브업무추진(희망드림사업, 고용기반구축), 취업정보은행 관리, 자활기금 관리 ● 이재훈 : 사회적응 및 자활장려금, 지자체직접시행(근로유지형 등)자활사업관리, 가사간병지원사업 운영, 생업자금 융자관리(희망키움뱅크사업 포함), 마포창업복지관 관리, 조건부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관리, 조건부 및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선정과 관리, 국내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관리, 노동조합 신고사항 처리 및 관리 ● 김기원 : 취업정보은행 구인업체 발굴, 국내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업무 지원,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업무, 노동부 워크넷 관리, 취업정보은행 구인구직관리 ● 이정은 : 육아휴직
서비스연계팀장 신희선 3153-8831	● 오경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 민관협력 워크숍 및 실무자 교육 실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생안정지원 및 위기가구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추진, 희망복지129 사례관리사업 및 전문요원 관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 ● 김현숙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동원, 이웃돕기 결연 및 후원사업 추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 총괄 및 꿈바라기 치료교실 사업,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협의회 이웃돕기 사업 연계 ● 김미진 : 꿈나무 키우기 결연사업 추진, 8대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제공현황 관리, 한주간의 영양배달사업 추진, 방문행정 및 사례관리 추진, 위기가구지원 접수 및 지원현황 관리, 공동모금회 배분 요청 및 관리, 서울디딤돌사업 추진 ● 이교영 : 긴급복지 지원사업,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일자리종합추진반장 전용봉 3153-8840	● 정재범 :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총괄,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신남재 : 일자리 창출 업무 및 평가 총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총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집행,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일자리관련 각종 보고사항 업무 ● 김성신 : 희망근로사업 임금지급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관리 희망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임금지급 및 4대보험 취득·상실 업무 ● 백한나 : 육아휴직 ● 강수연 : 공공근로사업 총괄, 공공근로 사업추진 및 인력관리, 공공근로 임금지급 등 예산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박상언 : 희망근로 사업추진 총괄, 희망근로사업 점검평가 및 관리, 희망근로 사업추진 및 인력관리, 희망근로사업 예산집행,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관리

② 사회복지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사회복지과	45,046,474	45,079,640	48,428,343	54,572,205	37,945,974	23,122,000
	국26,029,193	국19,519,752	국19,993,956	국21,424,705	국16,385,954	
	시10,225,749	시11,466,623	시12,943,220	시14,558,615	시10,765,142	
	구 8,791,532	구14,093,265	구15,491,167	구18,588,885	구10,794,878	
노후생활 지원	20,934,472	18,194,428	18,270,838		15,106,028	6,121,501
	국 14,223,888	국 8,835,277	국 8,835,277		국 6,057,124	
	시 3,737,445	시 5,191,620	시 5,232,057		시 4,551,271	
	구 2,976,139	구 4,167,531	구 4,203,504		구 4,497,633	
노인교통수당 지급 1~6월 22,322명*36,000원*2분기 7~12월 12,742명*36,000원*2분기	-	-			2,524,608	5,065,002
					시 1,262,304	
					구 1,262,304	
경로식당 운영지원	402,349	339,185	385,885		270,160	
	시 189,336	시 169,593	시 180,320		시 149,600	206,620
	구 213,013	구 169,592	구 205,565		구 120,560	

기본급식비	389,021	326,025	373,901	257,000	
	시 83,456 구 05,565	시 163,013 구 163,012	시 174,720 구 199,181	시 144,000 구 113,000	
특식비 4,000원*476명*7회	13,328	13,160	11,984	13,160	
	시 5,880 구 7,448	시 6,580 구 6,580	시 5,600 구 6,384	시 5,600 구 7,560	
기초 노령연금 지급	20,333,788	17,683,168		12,200,455	
	국 14,223,888	국 8,835,277		국 6,057,124	
	시 3,352,774	시 4,859,402		시 3,028,562	
	구 2,757,126	구 3,988,489		구 3,114,769	
사무관리비(인쇄비, 봉투)	2,324	2,232		7,442	-
기초노령연금업무 행정도우미 임금4대보험료	-	-		68,046	-
결정통지 우편료 270원*20,600명*2회	11,124	9,882		9,520	-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	500	500		1,200	-
기초노령연금 지급	20,319,840	17,670,554		12,114,247	
	국 14,223,888	국 8,835,277		국 6,057,124	
	시 3,352,774	시 4,859,402		시 3,028,562	
	구 2,743,178	구 3,975,875		구 3,028,561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192,335	162,625	192,335	110,805	104,225
	시 192,335	시 162,625	시 192,335	시 110,805	
식사배달사업	173,250	150,480	173,250	100,480	
	168,630	146,000	168,630	96,000	
	시 168,630	시 146,000	시 168,630	시 96,000	
	4,620	4,480	4,620	4,480	
특별급식비 4,000원*165명*7회	시 4,620	시 4,480	시 4,620	시 4,480	
일반찬 배달사업	19,085	12,145	19,085	10,325	
	17,160	10,920	17,160	9,100	
	시 17,160	시 10,920	시 17,160	시 9,100	
	1,925	1,225	1,925	1,225	
특별급식비 5,000원*55명*7회	시 1,925	시 1,225	시 1,925	시 1,225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보행보조자 지원120,000원*50대	6,000	9,450		-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393,426	369,148	361,465	357,796	
	국 113,750	국 102,495	국 106,770	국 137,978	390,506
	시 222,801	시 215,405	시 201,310	시 218,428	
	구 56,875	구 51,248	구 53,385	구 101,389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운영	165,926	164,158	147,925	149,440	128,367
	시 165,926	시 164,158	시 147,915	시 149,440	
재가관리사사업 사무용품 85,000원*4분기	340	340		100	740
재가관리사사업 업무추진비	1,920	1,920		1,920	1,200
재가관리사 임금(보험료, 퇴직금포함)	163,666	161,898	145,665	147,180	126,427
	시 163,666	시 161,898	시 145,665	시 147,189	시 126,42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민간이전	227,500	204,990	213,540	275,956	
	국 113,750	국 102,495	국 106,770	국 137,978	196,439
	시 56,875	시 51,247	시 53,385	시 68,989	
	구 56,875	구 51,248	구 53,385	구 68,989	
저소득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 300원*600명*180일	-	-		32,400	65,700
노인이야 프로그램 확대	231,399	197,689		153,226	
	시 27,000	시 28,220		시 18,000	109,126
	구 204,399	구 169,489		구 135,226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65,226	65,226		53,342	48,276
	226	226		342	-
	2,000	2,000		2,000	
	57,000	57,000		45,000	42,000
	6,000	6,000		6,000	6,000
	-	750		2,500	3,350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	750		2,500	3,350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민간경상보조	25,800	17,500		16,000	16,000
경로당 열린교실 30,000원*700회	21,000	17,500		16,000	16,000
창전경로당 특화 열린교실 30,000원*160회	4,800	-		-	-
민간이전-노인교실운영지원 2010:500,000원*15개소*12월	90,000	57,600		54,000	39,000

2009:300,000원*16개소*12월 2008:300,000원*15개소*12월	시 18,000 구 72,000	시 19,200 구 38,400			시 18,000 구 36,000	
지역건강교육 강좌 민간경상보조	-	7,000			7,000	3,500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101 시 9,000 구 13,101	32,101 시 9,000 구 23,181			21,384	-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임금1,500,000원*12월*1명	18,000 시 9,000 구 9,000	18,000 시 9,000 구 9,000			17,400	-
5대보험료,활동비	4,101	4,101			3,984	-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6,000원*35개소*4회*12월	-	10,080			-	-
마포 I T 경로당 구축	28,272	17,132			-	-
사무관리비(P C 유지보수,소모품)	5,000	-			-	-
경로당 정보이용료 지원 19,800원*95개소*12월	22,572	16,632			-	-
경로당 대항 컴퓨터 경진대회	400	500			-	-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	300			-	-
노인일자리 창출	2,394,934 국 512,140 시 97,499 구 1,285,295	1,941,310 국 566,493 시 660,910 구 713,907	3,354,750 국 566,493 시 1,367,630 구 1,420,627		1,149,700 국 329,910 시 384,895 구 434,895	967,500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2,341,934 국 512,140 시 597,499 구 1,232,295	1,888,310 국 566,493 시 660,910 구 660,907			1,099,700 국 329,910 시 384,895 구 384,895	903,500
인건비	634,800	537,000			526,600	565,000
임금 200,000원*500명*6월	600,000	504,000(360*7)			476,000	
산재보험료,파복비,청소용품	34,800	33,000			33,014	
전담인력 임금4대보험료	-	-			17,586	
노인일자리사업 사무용품	1,000	1,000			1,000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1,000	1,000			1,000	4,000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000	1,000			1,000	1,000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1,704,134 국 511,240 시 596,449 구 596,445	1,348,310 국 404,493 시 471,910 구 471,907			570,100 국 171,030 시 199,535 구 199,535	333,500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 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18,000	18,000			25,000	29,000
어르신 나눔터 운영지원-민간위탁금	35,000	35,000			25,000	35,000
시비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	-	1413,440 시 706,720 구 706,720		-	-
인건비	-	-	839,510 시 419,755 구 419,755		-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사업추진평가 간담회등	-	-	1,500		-	-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	-	572,430		-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1,328,975 국 79,173 시 321,773 구 28,029	1,229,965 국 86,166 시 321,597 구 822,202	1,652,222 국 79,982 시 318,505 구 1,253,735	4,130,251 국 79,982 시 378,505 구 3,671,764	2,740,731 국 979,706 시 1,072,425 구 688,600	1,052,464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146,415	357,717	788,854	3,266,883	126,037	75,749
사무관리비(임차경로당 3개소 전세보증금 인상) (2009년도 1차추경)성산1동 경로당임차보증금	60,042	203,680	354,130	504,580 (도화동경로당)	-	-
구립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	5,173	4,837			4,837	-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1,200	1,200			1,200	1,200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경로당)	80,000	148,000	428,687		120,000	70,000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	-	-	-	1,297,867	-	-
망원동 현청사 개보수	-	-	-	956,897	-	-
마포 차매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민간위탁금	33,000	33,000			30,000	30,000

민간이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지원 (보사노인복지센터,마포가정봉사원파견센터,이대지역자활센터)	국 시 구	158,346 79,173 39,587 39,586	172,332 국 86,166 시 43,083 구 43,083	159,964 국 79,982 시 39,991 구 39,991		273,402 국 136,701 시 68,350 구 68,351	350,925
경로당 물품지원		7,800	19,926	23,414		18,752	18,000
신설경로당 물품지원(4개소)		5,100	6,400			9,600(6개소)	18,000
구립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2,700				9,152	-
경로당 운영지원		670,917 시 282,186 구 88,731	573,990 시 278,514 구 295,476			570,630 시 245,370 구 325,260	577,790
환경개선부담금		1,200	1,200			-	-
연동경로당 소규모 데이케어센터 공공요금		1,200	1,200			-	-
민간경상보조		668,517	571,590			570,630	570,790
경로당 운영비		423,360	484,440			483,360	
경로당 난방비		54,873	54,270			54,270	
경로당 냉방비		33,480	32,880			33,000	
경로문화 활성화		-	24,000			-	-
경로당 클럽활동 지원 50,000원*30개소*12월		-	18,000			-	-
모범경로당 안센터비 지원 100,000원*20개소*3월		-	6,000			-	-
노인 이동목욕사업 지원-민간이전		50,000	49,000			35,900	-
인건비(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45,000	43,000			30,000	-
공공요금 및 운영비 사업진행비		5,000	6,000			5,900	-
노인장기요양급여 887,000원*1,200명*6월*26.4%		-	-			1,686,010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0,879	-			-	-
민간경상보조- 운영비 지원(사업비*5%)		30,879	-			-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0,564	-			-	-
민간위탁-마포노인복지관 운영비		50,564	-			-	-
데이케어센터 설치 운영		181,054	-			-	-
망원동청사 내 데이케어센터 물품구매		83,344	-			-	-
청년경로당 내 데이케어센터 물품구매		97,710	-			-	-
취약계층 지원기반 조성	국 시 구	961,115 92,542 182,001 86,572	1,272,386 국 126,272 시 147,366 구 998,748	2,222,020 국 360,408 시 679,310 구 1,182,302	3,457,845 국 602,469 시 1,636,662 구 1,218,714	610,263 국 134,836 시 146,922 구 328,505	501,343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시 구	410,399 45,775 364,624	792,678 시 45,774 구 746,904	1,728,629 국 234,136 시 577,313 구 917,180		192,895 시 45,775 구 147,084	184,120
무료셔틀버스 운영-민간이전		91,540 시 45,775 구 45,774	91,549 시 45,774 구 45,775			91,550 시 45,775 구 45,775	88,042
점자도서실 운영-민간위탁		44,909	53,880			51,625	50,122
인건비		37,709	46,800			43,873(2명)	
공공요금 및 운영비-점자도서구입		7,200	7,080			7,752	
장애인 이동목욕사업 운영-민간위탁		42,960	46,920			44,674	43,400
간호사 인건비 1,820,000원*12월		21,840	26,520(2,210천)			25,207	
목욕도우미 실비 650,000원*2명*12월		15,600	15,120(63만원)			15,120	
공공요금 및 운영비-일반사업비		5,520	5,280			4,347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운영		11,180	11,595			3,790	1,660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참여수당		900	-			-	-
장애인복지시설 전기가스안전 점검		1,440	1,440			1,440	-
장애인단체장,시설장간담회20,000원*24개소*3회		1,440	1,440			1,200	1,660
장애인복지시설 위문방문50,000원*14개소*2회		1,440	1,200			1,000	
마포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	6,000			-	-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840	560			1,120	896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비		100	50			100	-
장애인 웰빙가정 만들기 사업-민간위탁		74,900	69,400			-	-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언어치료등		63,400	69,400			-	-
장애청소년 나들이 행사		5,000	-			-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원예교실)		6,000	-			-	-
장애아동 부모교육		500	-			-	-
마포복지목욕탕 운영-민간위탁		143,961	398,724	569,000		-	-
장애인 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			36,000			-	-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		143,961	311,724	482,000		-	-
장애인 목욕탕 및 체육시설 물품구입			51,000			-	-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4천만원3개소		-	120,000			-	-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136,719	110,893		196,142	86,954	
	시	28,260	시 17,260		시 69,509	시 12,240	79,112
	구	08,459	구 93,633		구 126,633	구 17,740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62,892	41,352		85,352	29,980	
	시	28,260	시 17,260		시 28,260	시 12,240	20,000
	구	34,632	구 24,092		구 57,092	구 17,740	
인내책자,인센티브자료제작위원회참석수당		5,072	5,072			4,340	-
영상전화요금,관리비		100	60			60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교육		900	900			800	-
장애인편의시설 업무추진		300	300			300	-
민간위탁-지체장애인편의시설 마포구자원센터 운영		56,520			57,020	24,480	20,000
	시	28,260	35,020		(건축기사대체)		
	구	28,260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19,282	24,496			21,928	24,112
사각장애인점 자달력,구정안내점역시,장애인 차량표지구입,복지시책안내책자제작,정보신 문보급,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수당		18,442	24,496			21,528	24,112
행사운영바-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40	-			400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업무추진		200	-			-	-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사업		24,500	11,720			-	-
전세주택 수수료 및 선정해지 수수료		1,500	1,320			-	-
민간위탁금-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20,000	10,000			-	-
재활보조기구,보장구 수리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			5,000	5,000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정비		2,000	-			-	-
공공시설 편의용품 비치		1,000	-			-	-
장애인 한마음 축제 지원-민간행사보조		30,045	30,045			30,046	30,000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지원 -민간이전		-	5,000			-	-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413,997	368,815	382,093	394,526	330,450	
	국	92,542	국 126,272	국 126,272	국 131,882	국 134,836	238,111
	시	07,966	시 84,332	시 84,332	시 87,743	시 88,907	
	구	13,489	구 158,211	구 171,489	구 174,901	구 106,707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9,170	10,380			9,800	6,960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93,868	105,980		109,008	107,450	
	국	28,150	국 31,794		국 32,702	국 32,236	76,751
	시	32,854	시 37,093		시 38,153	시 37,607	
	구	32,854	구 37,093		구 38,153	구 37,607	
인건비(200,000원*60명*7월)		88,797	100,254		103,282	100,058	
	국	26,639	국 30,076		(20만원*72명*7월)	국 30,018	70,000
	시	31,079	시 35,089			시 35,020	
	구	31,079	구 35,089			구 35,020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운영		3,971	4,626			6,292	6,500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발대식		-	-			800	-
업무추진비		300	300			300	251
장애인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운영 - 행정도우미 인건비		214,605	188,955		198,360	205,200	
	국	64,382	국 94,478		국 99,180	국 102,600	149,400
	시	75,112	시 47,239		시 49,590	시 51,300	
	구	75,111	구 47,238		구 49,590	구 51,300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6,000	8,000			8,000	5,0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민간위탁금		7,000	51,500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사(칸막이,전기설비공사)	-	11,500	3,278(냉난방)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물품구매(사무가구,제과제빵기기)	-	40,000			-	-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4,000	4,000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민간위탁금	40,000	-	10,000		-	-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민간위탁금	34,692	-			-	-
	마포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4,662	-			-	-
국민기초생활 보장		18,679,200	21,761,499	22,200,588	24,063,698	17,626,560	13,979,560
	국	11,007,700	9,803,049	10,018,894	11,207,582	8,746,400	
	시	5,140,230	4,901,525	5,090,075	5,684,418	4,373,200	
	구	2,531,270	7,056,925	7,091,619	7,171,698	4,506,960	
생계급여 지원		14,193,400	14,759,688			13,316,000	11,617,696
	국	8,516,040	7,379,844			6,658,000	
	시	3,974,152	3,689,922			3,329,000	
	구	1,703,208	3,689,922			3,329,000	
주거급여 지원		3,184,400	3,675,648			3,557,600	1,395,232
	국	1,910,640	1,837,824			1,778,800	
	시	91,632	918,912			889,400	
	구	82,128	918,912			889,400	
교육급여 지급		733,400	531,964		740,987	471,800	770,472
	국	40,040	265,982		370,494	235,900	
	시	5,352	132,991		185,247	117,950	
	구	88,008	132,991		185,246	117,950	
해산장제급여 지원		69,800	56,876		72,600	74,000	80,000
	국	41,880	28,438		36,300	37,000	
	시	19,544	14,219		18,150	18,500	
	구	8,376	14,219		18,150	18,500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98,200	53,732	162,908	276,482	73,400	-
	국	99,100	26,866	81,454	141,242	36,700	
	시	49,550	13,433	40,727	70,620	18,350	
	구	49,550	13,433	40,727	64,620	18,350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		300,000	2,155,400			133,760(17만6천원*760명)	116,160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		-	528,191 국 264,095 시 132,048 구 132,048			-	-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471,838	-	-
생계급여 집행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100,487 +50,244	-	-
주거급여 집행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101,779 +50,889	-	-
교육급여 집행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4,381+2,191	-	-
해산장제급여 집행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5,099+2,550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시도비보조금)					1,760	-	-
기초노령연금 지급잔액(시도비보조금)					4,326	-	-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2,721+3,420	-	-
장애인 일자리사업 집행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553+646	-	-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773+387	-	-
노인실버일소 이용료지원 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13,134+5,629	-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1,592+796	-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24,402 +12,195	-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8,022+4,011	-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37,287 +18,643	-	-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800+800	-	-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잔액(국고+시도비 보조금)					33+17	-	-
노인교통수당 지급잔액(시도비보조금)					5,592	-	-

노인건강검진사업 잔액(시도비보조금)				875	-	-
장애인 인식개선 인센티브사업 지원(시도비보조금)				1,311	-	-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잔액(시도비보조금)				1,920	-	-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잔액(시도비보조금)				301	-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잔액(시도비보조금)				1,587	-	-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잔액(시도비보조금)				685	-	-
보전지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고+시도비반환금				91,680	-	-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122,953	113,215			101,670	-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선택복지포인트지원 1,000원*2,350포인트*95%*2명	4,465	-				
사무관리비	44,568	44,575			33,030	-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20,000원*14일*22명*12월)	73,920	68,640 (13일*22명)			68,640	-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애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 이라 한다)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을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50 2.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욕탕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21(성산동 595)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제24호에 설치한다. ▶목욕탕 명칭은 “마포복지목욕탕”으로 한다. ▶구청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담당업무 : 곽영순 과장 02-3153-8860

팀 명	담 당 업 무
노인복지팀 3153-8857	●김지연 : 예산편성, 결산업무 일반서무관련 사항 노인돌봄서비스운영(돌보미바우처, 홀몸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복지기금 관리 ●임강숙 : 노인복지정책사항(신규사업발굴),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마포구IT경로당구축,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관리
노인시설팀 전영대 3153-8861	●조정규 : 노인복지시설 관련업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지원 관리, 봉안당설치신고 및 합정동납골당 소송 ●오정순 : 장사업무 전반사항(소송업무제외), 노인시설입소관련업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입소사항, 노인교실 설치지원 업무, 장기요양교육기관 관리 ●박연숙 : 장기요양보험실시대비 기능보강사업, 노인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신증축 및 유지관리, 장애인시설 관리 및 노고산 복지종합 지원센터 건립 업무 협조
생활보장팀 김경숙 3153-8871	●김주형 :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및 관리, 기초수급자 자격 및 급여 변경, 기초수급자 각종 복지급여 결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절차 수행 ●류다미 : 의료급여 예산 및 세외수입 업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운영 및 의료급여 관리사 관리 ●김소영 : 긴급구호 및 신긴급구호(희망의 징검다리)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 지원, 교육, 장제, 해산급여, 산골장려금 지급, 기타 부가급여 지급 ●정도량 :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제반업무, 의료급여 예산 및 세외수입 업무, 대불금 승인 및 상환업무 및 국민연금 업무, 기타 의료급여 업무 ●왕영신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급여일수 연장승인(아현1동~동교동), 의료급여 상해외인조사 및 결정, 의료급여 투여기관관리 및 시술기구 확인 ●주혜영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급여일수 연장승인(합정동~상암동), 중복청구진료비 환수업무, 중증진료등록업무
장애인복지팀 김현기 3153-8881	●김영선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반업무, 장애인 관련 단체 등록 및 지원 업무, 장애인복지 법인 관리, 장애인 한마음축제 등 각종 행사, 장애인 생산품 관련 업무, 장애인 자립장,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목욕탕 설치 관련 업무 ●윤승현 : 장애인종합복지관(점자도서관)관련 업무, 장애인 소규모시설 및 개인 운영시설 관련 업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업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업무,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관리 및 가출장애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세외수입), 장애인 나들이 행사, 장애인 지역사회 혁신사업 ●장정희 : 자활사업 총괄관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조건부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기관협의체 및 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 인센티브업무추진(희망드림사업, 고용기반구축), 취업정보은행 관리,시간제 계약직원 관리

③ 가정복지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가정복지과	31,159,601 국 5,585,813 시 14,009,288 구 11,564,500	30,107,335 국 3,729,817 시 11,002,271 구 15,613,299	30,491,817 국 3,695,078 시 11,033,708 구 15,763,031	32,078,072 국 3,742,031 시 11,274,749 구 17,061,292	30,726,651 국 4,541,232 시 10,426,493 구 15,758,926	20,970,479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	29,464,802 국 5,545,813 시 13,546,519 구 10,372,470	25,084,063 국 3,535,757 시 9,848,996 구 11,699,310	25,426,434 국 3,535,757 시 9,880,433 구 12,010,244	26,168,669 국 3,575,430 시 10,114,194 구 12,479,045	25,195,431 국 3,750,457 시 9,499,793 구 11,945,181	19,659,291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598,148 국 30,000 시 25,000 구 543,148	467,450 국 106,000 시 88,225 구 273,225	778,384 국 106,000 시 88,225 구 584,159	1,038,384 국 106,000 시 103,225 구 829,159	2,042,488 국 380,175 시 265,088 구 1,397,225	1,305,150
마포 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토지매입비4차분)	255,148	-	310,934		270,750 국 180,500 시 90,250	284,000
마포자활후견기관 건물 대수선	-	-			498,421	320,750
구립보육시설 대수선(증개축)-진선미,나사렛	-	-			762,847 국 99,190 시 49,595 구 614,062	414,000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보조) 2개소	60,000 국 30,000 시 15,000 구 15,000	90,000 국 45,000 시 22,500 구 22,500			332,470 국 100,485 시 50,243 구 181,742	80,000
보육시설 개보수비					271,500	
보육시설 장비비					4,000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56,970	
보육시설 기능보강-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20,000 시 10,000 구 10,000	30,000 시 15,000 구 15,000		60,000 시 30,000 구 30,000	80,000(3개소) 시 40,000 구 40,000	122,000
보육시설 대수선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천만원*2개소					40,000	80,000
구립 보육시설(대수선시설) 이전비용					5,000	4,400
시간제 보육시설(마포구청종합청사내)설치					35,000	-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163,000	25,000		55,000	18,000	-
장난감대여점 운영비(도화망월)	10,000	8,000			18,000(도화동)	-
망월 장난감대여점 개관	5,000	-			-	-
장난감 구입비	100,000	10,000		40,000	-	-
장난감대여점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14,000	7,000			-	-
장난감대여점 운영물품 구매	34,000	-			-	-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100,000	80,000		280,000(2개)		
영유아프라자 시스템구축 및 교재교구비 지원	-	80,000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지원	-	120,000 국 60,000 시 30,000 구 30,000				
구립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	2,000 국 1,000 시 500 구 500				
친환경어린이집 설치(기능보강) 지원	-	40,450 시 20,225 구 20,225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8,268,677 국 5,453,280	24,160,634 국 3,409,057		24,542,563 국 3,409,057	22,666,999 국 3,328,882	18,018,636

	시 13,371,354 구 9,444,043	시 9,654,371 구 11,097,206		시 9,861,054 구 11,272,452	시 9,116,405 구 10,221,712	
보육시설 운영 특수사업	268,500	1,355,405			1,034,913	817,327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금 150만원*35개소	52,500	30,000			30,000	
우수보육시설 지원금 150만원*12개소	18,000	27,000			10,000	
소규모시설(50인 이하)취사부 인건비지원	198,000	180,000			-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지원910원*1,500명*20일*12	-	327,600			327,600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146개소)		78,000			76,400	
민간보육교사초우개선편비70,000원*350명*12월	-	294,000			288,000	
보육교사대체인력인건비50,000원*100명*5일	-	25,000			40,000	
보육시설(구립 민간 가정)프로그램개발	-	30,000			-	
직장보육시설 위탁-민간위탁금(중사자급여, 중식, 교재)	-	363,805			259,898	161,727
보육시설 관리 및 종사자 지원	13,410	52,430			35,394	52,612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10만원*10명*4회*80%	3,200	6,600			2,688	
보육관련인쇄물, 표창장, 현수막 등	700	780			784	
(재)위탁체모집 신문공고	4,200	7,000			3,200	
재위탁평가위원회수당, 학부모 및 교사설문조사	2,210	4,820			-	
보육전문가 간담회 지도점검 업무추진	3,020	3,020			2,000	1,200
가정복지시설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점검수수료	-	17,830			8,722	8,322
보육교사 자기개발 교육비200,000원*30명	-	6,000			6,000	6,000
보육교사 해외연수 1,200,000원*20명*50%	-	12,000			12,000	32,000
보육시설종사자 전문교육	-	3,000			6,000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지원 (구립 법인 직장, 민간, 부모협동, 가정)	-	35,000			35,000	35,000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국고보조)-민간이전	국 426,277 시 127,883 구 208,876 208,876	국 506,985 시 101,397 시 202,794 202,794			국 777,825 시 155,565 시 311,130 311,130	
만5세아 보육료지원(국고보조)	국 933,290 시 279,987 시 457,312 195,991	국 1,087,325 국 217,465 시 434,930 434,930			국 1,077,150 국 215,430 시 430,860 430,860	
장애아 무상보육지원(국고보조)	국 338,213 시 101,464 시 165,724 71,025	국 342,215 국 68,443 시 136,886 136,886			국 235,065 국 47,013 시 94,026 94,026	
중사자인건비 지원(국고보조)	국 6,524,691 시 1,957,407 시 3,197,099 1,370,185	국 5,770,280 국 1,154,056 시 2,308,112 2,308,112			국 5,881,435 국 1,176,287 시 2,352,574 2,352,574	
교재교구비 지원(국고보조)	국 84,313 시 25,294 시 41,313 17,706	국 105,955 국 21,191 시 42,382 42,382			국 115,840 국 23,168 시 46,336 46,336	
차등보육료 지원(국고보조)	국 6,742,723 시 2,022,817 시 3,303,934 1,415,972	국 8,767,940 국 1,753,588 시 3,507,176 3,507,176			8,479,995	
평가인증지원(국고보조)	-	-			국 55,950 국 11,190 시 22,380 22,380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 906,000 시 181,200 시 362,400 362,400	국 453,000 국 90,600 시 181,200 181,200			-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	-			국 5,344,215 국 1,068,843 시 2,137,686	

						구 2,137,686	
		8,823	11,585			21,150	
보육교사 보수교육(국고보조)	국	2,647	국 2,317			국 4,230	
	시	4,323	시 4,634			시 8,460	
	구	1,853	구 4,634			구 8,460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사비보조)		1,353,756	1,435,698			1,623,018	
	시	676,878	시 717,849			시 811,509	
	구	676,878	구 717,849			구 811,509	
셋째아 이후 양육지원금		905,926	1,435,698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		447,830	-				
보육시설 운영지원(사비보조)		3,707,990	3,713,400		4,063,892	2,702,246	
	시	1,706,995	시 1,856,700		시 2,031,946	시 1,351,123	
	구	2,000,995	구 1,856,700		구 2,031,946	구 1,351,123	
전액면제아 차액지원		23,762	80,648				
민간시설영아(장애편) 운영비		344,068	468,834				
보육교사 증식비		241,436	132,672				
소규모시설 취사부		-	144,410				
대체교사 인건비		91,056	154,650				
처우개선비(시설장)		280,516	58,816				
처우개선비(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1,350,634	363,798				
처우개선비(민간시설 보육교사)		579,968	1,030,142				
종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147,588	126,512				
시간연장 수당		91,690	46,922				
보육도우미 인건비		557,272	162,864				
방과후 교실 운영(사비보조)		390,60	483,600			588,000	
	시	195,300	시 241,800			시 294,000	
	구	195,300	구 241,800			구 294,000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비보조)		47,740	39,816			4,018	
	시	23,870	시 19,908			시 2,009	
	구	23,870	구 19,908			구 2,009	
장애아 교재 교구비		11,340	7056				
특수교사 인건비		36,400	32,76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2,445,467	786,000				
	시	1,718,827	시 393,000				
	구	736,640	구 393,000				
보육정보센터 운영		718,910					
	시	76,021	145,970				
	구	642,889					
보육센터 운영 업무추진		1,500	-				
영유아플라자 운영-민간경상보조		152,042	145,970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505,368	-				
보육정보센터 교재·체육기구·도서구입		60,000	-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832,704	657,645				
운영비(환경개선부담금·전기안전점검)		10,520	17,830(중복)				
보육지원 업무추진비		2,000	-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냉난방비 지원 등		477,120	405,600(중복)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343,064	363,805(중복)				
맞벌이 보육료 지원(국고보조)		57,263					
	국	17,719	-				
	시	28,059					
	구	12,025					
기본 보육료 지원(국고보조)-민간위탁금		2,458,007				3,135,780	
	국	737,402	-			국 627,156	
	시	1,204,423				시 1,254,312	
	구	516,182				구 1,254,312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175,634	183,189			173,794	166,773
여성직업교육 운영-민간위탁금		150,000	155,000			150,000	-
여성단체 활동지원(워크숍·바자회용품 임차비)		6,300	7,300			6,300	6,000
여성주간행사(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9,109	10,109			10,114	9,583
양성평등추진사업		6,830	6,380			6,380	1,190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980	980			980	690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강사료13만원*45개학교		5,850	5,400			5,400	-
여성홈페이지 유지보수(웹호스팅 이용료)		95	1,000			1,000	-

여행(女幸)포럼 운영(간담회,강사료)	3,300	3,400		-	-
여성시설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	29,400	28,800		28,800	30,900
건강가정 지원사업	392,943	243,990		375,733	283,350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164,500	164,500		171,200	145,350
	시 82,250	시 82,250		시 84,160	시 70,000
	구 82,250	구 82,250		구 87,040	구 75,35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민간위탁금	194,043	69,000		194,043	138,000
	국 58,213	국 20,700		국 58,213	국 41,400
	시 67,915	시 24,150		시 67,915	시 48,300
	구 67,915	구 24,150		구 67,915	구 48,30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000	10,000		-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교육	1,700	10,000		-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1,300	-		-	-
다문화가정자녀 방과후교실 운영위탁	7,000	-		-	-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창출 사업위탁	10,000	-		-	-
위기가족 상담사업-민간위탁(사업 인건비)	14,400	-		-	-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	1,502,276	4,399,160	4,441,271	4,788,575	899,470
	국 40,000	국 172,850	국 159,321	국 768,880	
	시 462,769	시 1,153,275	시 1,153,275	시 926,700	
	구 999,507	구 3,073,035	구 3,128,675	구 3,092,995	
아동복지 증진	940,858	1,064,420	1,065,291	963,600	580,534
요보호아동 등 위문	15,600	13,200		16,400	17,600
가정위탁보호아동및소년소녀격려2만원*90명*2회	3,600	3,600		3,600	
지역아동센터어린이날위문(12개소)2만원*360명	7,200	4,800		4,800	
시설아동위문(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3,200	3,200		6,400	
아동시설 어린이날 체육대회 지원	1,600	1,600		1,600	-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	101,500	104,000		54,580	7,360
모국체험 및 명예구민증 행사	4,000	4,000		4,080	860
업무추진비	3,000	5,500		5,500	2,500
모국체험행사,영어로교실운영 지원	94,500	45,000		45,000	-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교재구입 자원봉사교사)	35,520	21,120	35,520	42,240	24,576
청소년 한문예절교실(강사료,운영비)	10,500	10,500		10,500	13,800
연중 조식식 및 방학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	777,738	792,750		771,000	
	시 388,869	시 396,375		시 385,500	-
	구 388,869	구 396,375		구 385,500	
토,일 공휴일 중식 아동급식지원	-	122,850	83,421	68,880	517,198
		국 122,850	국 83,421	국 68,880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	561,418	3,334,740	3,375,980	3,824,975	318,936
	국 40,000	국 50,000	국 50,000	국 700,000	
	시 63,400	시 746,400	시 746,400	시 530,700	
	구 458,018	구 2,538,340	구 2,579,580	구 2,594,275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12,011	84,982		41,024	40,613
청소년 행사 현수막,유공자표창,위촉장 등	5,767	7,920		3,226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672	672		840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	4,480		4,480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	980		980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	8,960		8,960	
어린이 안전글쓰기 심사수당	210	210		210	
학교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전기요금	1,620	1,620		1,620	
청소년지도자교육강사료,지역아동센터행사	1,300	300		300	
업무추진비	2,000	2,000		80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600	600		600	
청소년 중국문화체험-국외여비	-	13,200		-	
청소년 대축제	-	15,000		15,000	
어린이 잔치	-	4,000		4,000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	3,500		-	
꿈나무 문화 서바이벌 퀴즈대회	-	10,820		-	
어린이 자전거 교실	-	9,720		-	
청소년 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369,604	345,647	386,887	275,147	223,625
사무관리비(위탁신문공고료,심사위원수당)	1,580	1,880		-	-
상수청소년독서실 공공요금	12,000	-		-	-
청소년독서실 냉난방비 운영보조-민간위탁	8,400	7,600	308,927	4,400	
청소년독서실운영비지원(영리,망원 상수)	331,462	289,734	(상수관리인)	229,347	
시설 및 부대비(상수독서실 칸막이,전기공사)	3,678	9,500	28,147	10,000(망원)	-

자산및물품취득비(p c,책상,의자,휴게실)		12,484	36,933	47,933		31,400(망원)	-
		27,600	27,600			30,900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염리,망원)-민간위탁	시	13,800	시 13,800			시 17,100	27,600
	구	13,800	구 13,800			구 13,800	
상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2,740,011 시 690,000 구 2,050,011			1,200,000 국 700,000 시 500,000	-
상수동 복합청사 관리운영-유지관리비		-	18,600			-	-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		-	-			2,263,854	-
유스페스티벌(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		-	8,000 시 8,000			4,000 시 4,000	8,000
유스테크 운영-민간위탁금	시	9,600 9,600	9,600 시 9,600			9,600	9,600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국	120,000 40,000	100,000 국 50,000			-	
	시	40,000	시 25,000				
	구	40,000	구 25,000				
장애아 수영교실 운영-민간위탁금		22,603	-			-	-
자원봉사 가치증진 및 생활화-자치행정과로 예산 이관		-	238,438			142,074	105,681
행정운영경비(가정복지과)		110,128	124,112			100,571	7,037
사무관리비		42,928	49,232			31,931	3,869
여비(20,000원*20명*14일*12월)		67,200	74,880 (13일*24명)			68,640 (13일*22명)	-
재무활동(가정복지과)		82,395	500,000			500,000	300,000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사업 위탁		82,395	-			-	-
여성발전기금 적립		-	500,000			500,000	300,000
반환금						-	-
보육시설운영지원 집행잔액(국고+시도비)					173,615 +347,229		
보육인프라구축 집행잔액(국고+시도비)					5,803 +11,606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집행잔액(국고+시도비)					37+37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집행잔액(시도비)					981		
결식아동급식지원(토,일공휴일)집행잔액(국고)					24,069		
기본보조급식지원 집행잔액(국고+시도비)					881+1,761		
보육료지원 집행잔액(국고+시도비)					76,143 +152,286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운영 자치구지원 집행잔액(시도비)					1,146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시도비)					16,443		
보육시설 운영지원(시비)					19		
여행프로젝트 동반자운영 및 교육집행잔액(시도비)					10		
보육시설기능보강(민간보육시설)집행잔액(시도비)					2		
청소년대표축제 자치구대회 운영 집행잔액(시도비)					450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집행잔액(시도비)					14,747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잔액(국고)					2,195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회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협의회를 설치하고, 그구성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협의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협의회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정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 6.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지도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도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각동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의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보호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센터 명칭은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마포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여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 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교육·훈련 3.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실시 4.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5. 결혼이민자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청소년기본법」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한다.
--	--

3) 담당업무 : 창기황 과장 3153-8910

팀 명	업 무 내 용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3153-8901	● 조영미 : 과사무, 과 예산 편성, 회계 총괄, 구의회 관련 업무, 문서관리, 과 물품관리, 보안업무, 과 홍보관련 업무, 저출산업무계획 ● 김은숙 : 보육시설위탁운영체 선정,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구립) ● 이덕경 : 보육시설 인허가(아현~합정)지도점검, 행정처분(가정, 부모협동, 방과후, 직장), 저출산업무(평가인증, 다둥이카드) ● 조진남 : 보육시설 인허가(망원~상암), 보육시설 지도점검 총괄, 우수보육시설 지원금 지급
보육지원팀장 윤인재 3153-8911	● 김용복 : 구립보육시설 신축 및 대수선,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 지원, 보육 예산 ● 박정애 : 구립·법인시설 및 직장 방과후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통계,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및 인센티브사업 추진,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일시보호) ● 배주연 : 민간·부모협동시설 운영지원, 보육료 감면업무, 특수시책사업(자기개발비),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총괄, 보육시설 통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민간시설) ● 김혜림 : 셋째아 양육비 지원,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사 경력관리 및 제증명 발급 ● 이봉구 : 도화동 장난감대여점 운영 및 관리 ● 김균식 : 장난감대여점 업무 지원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3153-8921	● 이경호 : 여성정책, 여성직업교육 운영 여성발전기금 운용 ● 홍승표 : 여성직업교육, 미혼모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직원 ● 류미경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추진, 결혼중개업 관리,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사업
아동청소년팀장 이주현 3153-8931	● 이범일 :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 조미란 : 입양아동 관련 지원, 결식아동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 안하영 : 청소년한문 예절교실 지원, 저소득층방과후 학습지원, 중국문화체험, 청소년특별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관리, 사회단체보조금, 하이서울장학금지원

④ 교육지원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교육지원과	5,805,080	4,502,929	5,395,175	9,392,427	3,615,541	2,528,622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4,034,218	3,081,624	4,241,522	4,631,522	3,124,930	2,164,502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968,218	3,013,424	3,961,024		3,006,810	2,073,427
사무관리비(모범학생 포상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학교안전협의회위원회 지역핵심인재전형추천위 원, 교육지원사평가단 수당, 서울시평가 자료, 홍보책자 제작)	15,728	8,424			4,810	1,390
학부모대상 특강 강사료	500	-			-	-
교육환경개선 간담회	4,890	5,000			2,000	3,000
마포구교육경비 보조금-자치단체 이전	3,947,600	3,000,000	3,947,600		3,000,000	2,069,037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자치단체 이전				293,000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 발표회	29,500	29,500			29,500	29,000
종합발표회 민간위탁	8,000	8,000			8,000	8,000
종합발표회 업무추진	500	500			500	-
종합발표회 참가자 실비	21,000	21,000			21,000	21,000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5,000	5,000			5,000	5,000
수학경시대회 개최(문제출제비, 장소임차료, 업무추진)	11,500	13,700			13,700	7,075
영어경연대회 개최(초중등)	20,000	20,000			20,000	-
우수인재 양성	74,220	69,298				
학습캠프 운영					5,000	-
영어캠프 운영	64,920	49,920			49,920	50,000
초등학생(일반가정 자녀)32만원*156명*1회	49,920	-				
초등학생(저소득층자녀) 60만원*25명*1회	15,000	-				
상상플러스 과학탐험교실	9,300	19,378			15,000	-
현수막제작비 업무추진	1,500	1,500			2,000	-
위탁운영비	7,800	17,878			13,000	-
평생학습도시 조성	405,576	400,377		506,987	404,342	104,120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161,500	164,003			164,3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5,000	2,703				-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	-	25,920			25,920	-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홍보물 제작	-	-			3,000	-
사이버평생학습관 홍보물 제작	-	3,900			3,900	-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비	156,000	130,000			130,000	-
업무추진비	500	500			500	-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	15,000	13,238			35,386	3,000
평생학습 소식지제작, 원고료, 홍보물제작, 우편요금	15,000	13,238			13,850	3,000
평생학습센터 소요물품(신청사)					20,856	-
구민교양대학 운영	-	63,000			50,600	-
홍보물제작, 업무추진	-	3,000			6,600	-
구민교양대학 운영위탁	-	60,000			44,0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7,000	-			-	-
업무추진비	1,000	-			-	-
행사실비보상(인문예술 기초외국어, 운영강사료)	36,000	-			-	-
인문예술교육 운영비	40,000	-			-	-
시민교양교육 운영비	30,000	-			-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65,640	76,200		116,200	76,840	-
심사위원 참석수당	140	700			840	-
업무추진비	500	500			1,000	-
민간경상 보조 500만원*13개소	65,000	75,000			75,000	-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민간위탁				15,000	-	-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	16,500			14,540	-
홍보물 및 교재제작, 업무추진	-	1,500			2,540	-
교육과정 위탁 운영비	-	15,000			12,000	-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17,636	20,936			22,486	1,120
평생학습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3,136	5,936			5,936	1,120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2,000	2,500			2,000	-
세미나 행사운영	3,500	3,000			6,120	-
선진평생학습기관 방문 400만원*2명	8,000	8,000			6,930	-

평생교육관계자 간담회	-	-		1,500	-
평생학습축제 홍보관·체험관 운영	21,300	18,500		15,080	-
홍보물제작	5,000	4,000		2,000	-
행사운영비(장비시설임차, 체험강사료)	2,300	1,000		1,000	-
업무추진비	1,000	1,500		1,000	-
운영지원인력 실비 보상금	1,000	2,000		600	-
전시공간 인테리어 비용	12,000	10,000		10,480	-
성인문해교육 운영	12,500	12,500		25,110	-
1도시 1컨설팅 지원사업-민간이전(위원자문비)	5,000	-		-	-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업무추진비, 강사료지원)	-	15,000		-	-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205,984	727,178			
서강구립도서관 운영	547,702	467,958	1,114,337	369,281	
사무관리비(웹콘텐츠, 방화벽설치, 심사위원수당)	45,450	3,000	506,636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	1,000	1,000		업무이관	
위탁관리(인건비, 운영비, 도서관구입비)	493,136	463,958	502,636	위탁관리)	
자산취득비	8,116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3개소 보조금	45,000	50,000	80,000	-	-
공, 사립문고운영(작은도서관, 공립문고, 사립도서관, 도서관매)			32,000	-	-
작은도서관 운영	152,264	115,020	125,952	236,280(자치행정과 업무이관)	88,500
사무관리비(심사위원회수당, 소모품비)	1,550	1,000		-	-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4개관)	1,600	2,000		-	-
동문고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5,500	-
작은도서관 개관식				600	-
작은도서관 서가구매(6개)			1,932	-	-
자원봉사자 실비지급(7,000원*2명*25일*12개월*4개관)	16,800	25,200		72,000	-
민간위탁금(인건비, 운영비, 도서관구입비)	131,840	86,820		72,000	-
도서관매(추가분)			9,000	46,000	84,000
바코드리더기 구입	474	-		11,780	-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461,018	94,200	154,200	78,000	-
홍보물 제작	4,600	4,000		-	-
망원1동 개관도서관 소모품 구입비	2,000	-		-	-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 수당	700	-		-	-
민간위탁-영어교사 인건비, 공공운영비	113,050	74,600		-	-
망원1동 신규조성 도서관 인테리어비용	160,000	-		-	-
망원1동 물품 및 집기구입비	72,868	-		-	-
도서관구입비	107,800	12,000	72,000	50,000	-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비(자치행정과 업무이관)	-	-		3,000	-
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자치행정과 업무이관)	-	-		20,000	-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 지원			43,381	-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조성사업비, 도서관구입비등)			138,363	-	-
행정운영경비(교육지원과)	85,082	81,452		66,269	-
사무관리비	34,682	34,652		66,269	-
여비(14일*15명)	50,400	46,800 (13일*15명)		43,680 (13일*14명)	-
재무활동			3,058,129	-	-
장학기금 출연금			3,000,000	-	-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 반환금			58,117	-	-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 반환금			8	-	-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구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사회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촉진,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두며, 명칭은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3) 담당업무 : 강희천 과장 3153-8960

팀 명	업 무 내 용
교육기획팀장 임민상 3153-8951	● 오형철 : 과 사무업무 총괄, 구의회 관련사항 및 예산편성, 지출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분석 및 대책수립, 지역핵심인재 전형 관련사항 등 ● 김종상 : CCTV 설치, BTL 사업,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등 타 기관과 연계된 사업중·고등학교 담당(교육경비보조금 관리, 민원사항처리 등) 학부모 자문단 및 퇴직교원 활용계획 수립 및 관리 학교안전협의회 운영 ● 김미정 :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계획수립 교육지원사업 공모 및 사후평가업무 서울시 평가 업무 총괄 유치원 담당(교육경비보조금 관리, 민원사항 처리 등)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 이기연 : 명문고(특목고 등) 유치관련업무 초등학교 담당(교육경비보조금 관리, 민원사항 처리 등) 각종 대회 개최 업무, 학교급식 관련사항 학부모교실 운영 및 모범학생 표창 희망근로사업, 학교 현황관리
교육환경개선팀장 정달화 3153-8961	● 김현숙 : 장학기금 관리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사업 상상플러스(과학탐험 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 마포 교육사랑 홈페이지 관리 ● 김영주 : 영어 도서관 운영 영어 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도서 모으기 사업에 관한 사항 ● 신은경 :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도서관 개방 업무
평생교육팀장	● 장미정 : 평생학습센터 관리,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인숙 3153-8971	● 김정옥 : 구민교양대학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 안지현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포열린강좌 운영,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평생학습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 김은이 : 평생학습 축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

⑤ 청소행정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청소행정과	22,506,487	23,414,321	23,553,074 국 21,000 시 21,000 구23,511,074	23,754,528 국 89,880 시 105,040 구23,559,608	19,838,551	21,644,981	21,079,872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1,701,870	11,280,150	11,418,903 국 21,000 시 21,000 구11,376,903		9,644,371	10,544,302	11,208,581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	9,094,835	7,928,406			6,191,225	5,788,267	5,459,655
자원 재활용 사업	3,375,350	2,213,420			833,504	590,670	999,242
일반운영비	5,000	5,000			5,900	5,721	8,000
사무관리비	5,000	5,000			5,900	5,721	8,000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3,000	3,000
일반보상금	500	2,760			4,140	4,240	4,130
민간이전	3,366,850	2,202,660			820,464	577,709	984,112
총량제 규격 봉투 제작 및 구매	925,608	925,051			670,690	670,226	652,584
일반운영비	925,608	925,051			670,690	670,226	576,071
사무관리비	925,608	925,051			669,610	669,334	0
공공운영비					1,080	892	576,071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3,633,131	3,583,228			3,217,565	3,216,136	2,768,080
인건비	74,975	54,628			49,312	49,191	49,150
일반운영비	27,500	18,420			15,900	15,895	26,400
사무관리비	27,500	18,420			15,900	15,895	26,400
민간이전	3,530,656	3,510,180			3,152,353	3,151,049	2,692,530
폐기물 처리비	1,160,746	1,206,707			1,469,466	1,311,233	1,039,749
자치단체 등 이전	35,546	2,298			13,526	13,526	18,820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1,125,200	1,204,409			1,455,940	1,025,756	1,020,929
민간이전						271,951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 관리	1,758,053	2,160,070	2,246,956		2,266,805	2,045,962	1,389,118
깨끗한 마포 가꾸기	1,344,659	1,884,208			947,871	839,352	637,445
인건비	47,904	615,768			40,887	97,910	52,097
일반운영비	154,355	161,074			136,034	162,780	149,498
사무관리비	116,925	121,705			121,344	108,894	67,668
공공운영비	37,430	39,369			14,690	53,886	81,830
업무추진비	21,100	21,100			21,100	23,066	25,600
일반보상금	5,000	28,800			30,000	24,610	24,000
포상금	3,000	3,000			3,000	9,000	3,000
민간이전	1,094,800	1,027,466			689,850	461,975	383,250
자산취득비	18,500	27,000			27,000	60,009	0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	358,131	223,608	310,494		175,048	243,206	162,135
인건비	158,442	126,127					
일반운영비	63,489	55,281			119,248	92,783	106,835
사무관리비	17,026	14,299			34,763	28,150	24,081
공공운영비	46,463	40,982			84,485	64,633	82,754
업무추진비	1,200	1,200					
민간이전	21,000	36,000			31,800	28,748	0
시설비 및 부대비	61,974	5,000			24,000	118,181	23,900
자산취득비	52,026	0	86,886			3,492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유지비	55,263	52,254			37,195	39,854	36,913

	일반운영비	35,213	31,854		18,805	15,495	17,358
	사무관리비	35,213	31,584		18,805	15,495	15,288
	업무추진비	20,050	20,400		18,390	11,259	19,155
	자산취득비					13,100	
	개안하수 처리시설 관리				756,140	598,920	552,625
	일반운영비				20,040	17,557	20,625
	사무관리비				2,652	2,530	1,623
	공공운영비				17,388	15,027	19,002
	자치단체 등 이전				736,100	581,363	532,000
	공중화장실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350,551	324,628	0
	인건비				347,551	321,628	0
	업무추진비				3,000	3,000	0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	848,982	1,191,674	1,243,541 국 21,000 시 21,000 구 1,201,541	1,186,341	2,710,072	4,359,808
	청소시설 장비 유지 관리	787,946	962,227		666,753	2,005,161	632,674
	일반운영비	781,946	898,049		623,753	735,217	627,674
	사무관리비	1,960	1,960		20,480	16,222	6,091
	공공운영비	779,986	896,089		603,273	718,995	621,583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3,000	5,000
	자산취득비	3,000	0			20,059	
	시설비 및 부대비			71,045	40,000	1,246,883	0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61,036	65,962		32,500	122,028	31,134
	일반운영비	61,036	65,962		32,588	110,174	31,134
	사무관리비	2,168	2,253		2,253	82,233	2,474
	공공운영비	58,868	63,709		30,335	27,941	28,660
	시설비 및 부대비					11,853	
	청소차량 대폐차				487,000	582,882	587,000
	자산취득비				487,000	582,882	587,000
	행정운영경비 (청소행정과)	10,804,617	12,134,171		10,194,180	11,082,999	9,871,291
	인력운영비 (청소행정과)	10,450,658	11,796,949		9,875,984	10,770,161	9,865,927
	인력운영비	10,450,658	11,796,949		9,875,984	10,770,161	9,865,927
	인건비	10,450,658	11,796,949		9,875,984	10,770,161	9,848,927
	기본경비 (청소행정과)	353,959	337,222		318,196	312,837	5,364
	기본경비	353,959	337,222		318,196	312,837	5,364
	일반운영비	125,479	125,062		90,436	89,077	5,364
	사무관리비	125,479	125,062		90,436	89,077	4,964
	매식비	114,240			78,840		
	여비	228,480	212,160		227,760	223,760	0
	재무활동 (청소행정과)			19,613		17,679	
	보전지출 (청소행정과)			19,613		17,679	
	보전지출			19,613		17,679	
	반환금 기타			19,613		17,679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613		17,679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 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

폐기물관리 조례	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품" 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청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 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가. 생활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나.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의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서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 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관할지역 안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흥화장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1과 같다.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구역 내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구에 납부하는 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2.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4. 위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5. 기금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비 등 6.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3) 담당업무 : 정인호 과장 3153-9210

팀 명	업 무 내 용
청소관리팀장 박근식 3153-9201	● 박은경 : 과사무업무 ● 이혜란 : 청소질서위반(무단투기)과태료부과·징수, 세외수입총괄, 기록물관리, 서무 ● 정명환 : 무단투기과태료 체납관리, 현장민원처리(소각 및 무단투기), 무단투기 단속자료 입력 ● 서영배 : 무단투기 포상금, 무단투기 단속자료 입력 총괄, 현장민원처리(소각 및 무단투기), 공공근로관리,공익관리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3153-9211	● 김도원 : 주요도로 청결유지업무(물청소,노면흡입,수작업), 환경미화원, 운전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서울클린데이, 가로휴지통 관리 ● 김동원 : 폐기물 봉투 관련 업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업무(총괄) ● 박준경 : 깨끗한 마포 가꾸기 및 인센티브사업 업무, 말끔이봉사단 운영, 대행업체 및 동주민센터 청소실태 평가 업무, 소각장 및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사업장 생활폐기물업 허가 ● 진영하 : 대형생활폐기물 업무, 환경미화원 임금 등 관련 업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및 기금 관련 업무, 환경

	미화원 및 휴게실 관련 물품 관리, 일시사역인부 임금지급 ● 박부역 : 도로물청소 운영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 및 소모품 관리, 가로휴지통 운영 관리, 인터넷 민원처리 및 현장 민원 처리 ● 환경덕 : 주요도로 청소상태 조기 순찰, 현장 민원 확인 처리 및 무단투기 단속 지원 ● 천나영 : 육아휴직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3153-9221	● 장진기 :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 업무, 재활용품 선별후 잔재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나눔장터업무, 민간수집상(고물상) 관련 업무, 재활용품관련 수집·운반 운전원,미화원 근태관리 ● 유연신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관련 업무, 공동주택 재활용품 용기설치 협의관련 업무, 음식물류폐기물관련 운전원 및 미화원 근태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동선관리 업무 총괄 ● 도태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감량의무사업장 업무, 선별장 재활용품판매대금, 잔재폐기물처리비용부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 관련업무 ● 노용래 : 도시광산화 관련 업무, 재활용센터관련 업무, 과대포장 관련 업무, 1회용품 관련 업무, 재활용품 의무대상시설(연면적 1,000㎡ 이상) 지도점검 관련 업무 ● 마정원 : 순찰 및 재활용팀 민원관련 업무, 재활용품 수집·운반, 음식물류폐기물 운전원 근태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3153-9231	● 최홍규 : 청소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업무, 자원회수시설,폐기물시설 관련기금에 관한 사항 ● 남용대 :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업무, 정비일지 및 공공요금 관한 업무, 팀 서무에 관한 사항 ● 허예웅 : 화장실(공중,이동,무인,개방) 관련업무, 현장 민원 등 확인 점검 처리 및 무단 투기 단속

⑥ 환경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환경과	1,128,724	1,010,137					
환경보전	836,332	774,432			13,692	19,185	13,242
마포의제21 실천	17,344	14,944			13,692	19,185	13,242
환경보전 홍보 및 시민실천단 운영	10,094	8,644			13,692	10,786	13,242
일반 운영비	6,734	5,284			8,532	6,977	9,172
사무관리비	5,804	5,104			8,366	6,831	8,866
행사운영비	930	180			166	145	306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2,999	2,000
일반보상금	360	360			2,160	810	2,070
시민실천단 사업						8,398	
일반 운영비						4,318	
사무관리비						4,118	
공공운영비						200	
일반보상금						4,080	
환경체험 교실 운영	7,250	6,300					
일반 운영비	7,250	6,300					
사무관리비	5,900	4,500					
행사운영비	1,350	1,800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	818,988	759,48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818,988	759,488					
일반 운영비	22,388	22,388					
사무관리비	4,964	4,964					
공공운영비	17,424	17,424					
업무추진비	1,000	1,000					
자치단체 등 이전	795,600	736,100					
환경개선	186,953	154,754			155,269	147,335	225,235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186,953	154,754			155,269	147,335	225,23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36,719	138,859			155,269	147,335	225,235
인건비	46,816	51,064			44,614	44,136	36,159
일반 운영비	81,158	80,389			101,198	85,102	180,725
사무관리비	14,551	13,782			20,069	20,467	26,803
공공운영비	66,607	66,607			81,129	64,635	153,922
업무추진비	1,200	0			2,000	2,000	2,000

	포상금	7,545	7,406			7,457	7,457	6,351
	자산취득비						8,640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47,294	15,895					
	일반 운영비	18,294	13,895					
	사무관리비	10,406	8,727					
	공공운영비	7,888	5,168					
	업무추진비	3,000	2,000					
	일반보상금	10,000	0					
	자산취득비	16,000	0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 가스 ONE-STOP 서비스	2,940	0					
	업무추진비	2,940	0					
	행정 운영 경비 (환경과, 녹지환경과)	105,439	80,951			918,894	864,459	682,114
	인력운영비 (녹지환경과)	105,439	80,951			782,986	732,339	669,899
	인력운영비					782,986	732,339	669,899
	인건비					782,986	732,339	669,899
	기본경비 (환경과)	105,439	80,951			135,908	132,119	12,215
	기본경비	105,439	80,951			135,908	132,119	12,215
	일반 운영비	41,599	31,031			42,308	38,579	12,215
	사무관리비	41,599	31,031			42,308	38,579	12,215
	매식비 7,000원*20일*19명*12월	31,920				32,400		0
	여비 20,000원*14일*19명*12월	63,840	49,920			93,600	93,540	0
	재무활동 (환경과, 녹지환경과)			1,024,299 시 14,000 구1,010,299			18,719	
	재무활동			162			18,719	
	보전지출			162			18,719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2			18,278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440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개발한다. ▶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한다. ▶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진동, 먼지, 악취, 폐기물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먼지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 4.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5.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 등

3) 담당업무 : 조용순 과장 3153-9260

팀 명	업 무 내 용
환경행정팀장 서문석 3153-9251	● 김병현 : 환경 ● 김종임 : 과 서무 ● 김미선 : 배출업소 인·허가, 방지시설업, 측정대행업, 토양오염 ● 강은정 :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부과 및 징수 ● 최지혜 : 출산휴가 ● 신혜정 : 마포의제21, 중수도, 저수도청소업, 친환경상품, 환경단체지원 ● 정숙영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지도팀장 하기환 3153-9261	● 송봉섭 : 대기배출업소 관리, 폐수배출업소 관리, 소음배출업소 관리(계획, 점검, 행정처분 등), 하천관리 ● 배금임 :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 관리, 정화조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관련업무, 유해화학물질 업무, 의료폐기물 업무 ● 권동희 : 개인하수시설 청소·과태료·지도점검
생활공해팀장 강종성 3153-9271	● 김선례 :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환경신문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배출가스 과다발산 신고차량 업무처리, 확인검사대행자 관리 ● 조미현 : 대기질 인센티브 사업, 오존경보제, 황사(먼지)예보제, 청정연료전환, 에코마일리지, 환경영향평가 ● 오재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현장 총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공익근무요원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차량 및 장비관리 ● 천소영 : 비산먼지사업장 관리, 특정공사업장 관리, 공사장 민원, 휴일지킴이,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배출업소 관리 ● 오동하 : 생활민원처리, 실내공기질

<도시관리국>

① 주택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주택과	531,254	812,908		1,615,112 국 503,479 시 259,225 구 852,408	631,709	1,003,830	1,150,426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46,997	617,320			456,454	413,527	438,072
공동주택 지원 사업	305,570	303,820			403,820	265,189	402,570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	300,000	300,000			400,000	262,774	400,000
민간자본이전	300,000	300,000			400,000	262,774	400,000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5,570	3,820			3,820	2,415	2,570
일반 운영비	3,420	3,820			3,820	2,415	2,570
사무관리비	3,420	3,820			3,820	2,415	2,570
업무추진비	2,000	0					
일반보상금	150	0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5,580	269,661			14,246	117,769	3,780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5,580	269,661			14,246	117,769	3,780
일반 운영비	1,180	6,836			5,656	140	1,180
사무관리비	1,180	6,836			5,656	140	1,180
업무추진비	3,600	3,600			3,600	3,594	2,600
일반보상금	800	0					
시설비 및 부대비					1,180	113,160	0
자산취득비					3,810	874	0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13,799	19,610			9,912		5,518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13,799	19,610			9,912	7,419	5,518
일반 운영비	7,667	15,793			6,095	7,419	2,001
사무관리비	3,734	8,234			2,626	3,606	2,001
공공운영비	3,933	7,559			3,469	2,008	0
업무추진비	1,500	1,500			1,500	1,496	1,200
포상금	4,632	2,317			2,317	2,317	2,317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22,048	24,229			28,476	23,148	26,204
공동주택 안전점검	22,048	24,229			28,476	23,148	26,204
일반 운영비	9,348	11,529			13,976	8,650	12,204
사무관리비	9,348	11,529			13,976	8,650	12,204
업무추진비	12,700	12,700			14,500	14,498	14,000
행정 운영 경비 (주택과)	184,257	195,588			175,255	175,066	712,354
기본경비 (주택과)	184,257	195,588			175,255	175,066	712,354
기본경비	184,257	195,588			175,255	175,066	712,354
일반 운영비	73,377	80,148			59,815	59,626	203,794
사무관리비	73,377	80,148			59,815	59,626	203,794
급량비 7,000원*33명*20일*12월	55,440				39,960		
여비 20,000원*33명*14일*12월	110,880	115,440			115,440	115,440	508,560
재무활동 (주택과)				516,179 국 503,479 구 12,700		415,236	
보전지출 (주택과)				516,179 국 503,479 구 12,700		415,236	
보전지출				516,179 국 503,479 구 12,700		415,236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700			
반환금 (과오납금 등)						415,236	

2) 조례

조례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력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2. "공영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직접 건축물 정비 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 방법을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자력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의 환지설계시 가산면적(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일정면적)을 합한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 이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지정된 지역(구역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구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시행자인 구역(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청장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구역은 제18조, 제19조 규정만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은 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단지 내의 공개공지 시설물 보수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 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3) 담당업무 : 강창수 과장 3153-9310

팀 명	업 무 내 용
주택관리팀장 진재중 3153-9301	● 이연숙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주택통계관련 업무 ● 김병도 : 국 서무주임, 예산회계 ● 이종훈 : 공동주택 행위허가(발코니확장 및 용도변경 등) 및 안전점검관련(재난위험시설물 시특법대상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사항 ● 권하나 : 일반서무, 국민주택 특별회계관리,업무,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 및 전환업무 ● 진미연 : 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업무,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타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사항,주택관리업 등록및 변경,말소업무 ● 허은숙 : 학교용지부담금환급관련업무, 임대사업자등록,변경 및 말소업무,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관리 ● 김수진 : 국장실 지원업무
재개발팀장 김태용 3153-9311	● 최상원 : 아현1 자력재개발구역 사업추진 및 총괄 ● 윤치영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자치구정비계획수립 아현4,상수1 주택재개발,임대주택관련업무 ● 정동환 : 아현1자력재개발 구역 건축 인허가 용강2, 용강3, 신수 현석주택재개발, 신수, 신공덕1,2,3 ● 송천호 :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관련 업무총괄,신공덕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대흥2,상수2,신공덕6,대흥3,신공덕5 주택재개발사업, 감정평가사 관련업무 (공덕3,현석,도화1,2,4구역,신공덕4,대흥1,도화3) ● 송혜수 : 신공덕5,6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 용자금 관리,재개발구역내 시유재산관리,아현1자력재개발 등기촉탁(청산,등기),공공관리자제도도입관련 업무
재건축팀장 최근호 3153-9321	● 박진국 : 재건축 기본계획 업무수합 총괄,재건축정비사업 업무,주택건설사업 리모델링 행위허가 및 준공,감리자 지정 및 분양승인,공덕1-1주거환경정비사업(성산,연남,망원,용강,아현,도화,서교,공덕,창전) ● 이정원 : 국공유지 관리 및 매각,보상업무 및 예산,위험시설물관리,월보·분기보고(서울시),공사장안전관리 총괄 ● 박명숙 : 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 관련업무,재건축 안전진단,관리처분,조합청산, 각종 부담금 부과,분양승인,의회업무 총괄(연남,용강,창전,노고산,공덕,신수,동교) ● 남윤희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시행인가,준공 등) 업무 (신수,합정,대흥,상수,노고산),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리모델링 ● 손동화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지정,시행인가,준공 등)업무(염리,상암,동교), 상암2-1,2-2 주거환경정비 사업, 감리 관련 제반업무, 통계관련 업무 ● 임현경 : 조합(추진위원회)설립 및 해산,청산,안전진단,관리처분,각종 부담금 부과,분양승인
주택정비팀장 박현수 3153-9331	● 이동준 : 기동순찰 및 정비반장,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민원 및 항측조사) 및 행정조치[서교동(동교동 제외)] ● 김기영 :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계획수립,항측조사총괄(계획수립 및 집계), 단속업무 자료 작성(회의자료,보고자료 등) ● 박채영 : 기존 무허가건물관리(신규,변경,행위완화신고),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재난위험시설물(기존무허가)관리,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업무 팀서무(회계,복무,관리) ● 류재홍 : 체납관리,부동산 압류 및 해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민원 및 항측조사) 및 행정조치[연남동(동교동)] ● 김영호 :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민원 및 항측조사) 및 행정조치 아현동,대흥동,염리동,서강동] ● 김철근, 홍익기 :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민원 및 항측조사) 및 행정조치 (성산1동,성산2동,상암동) ● 배인구 :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민원 및 항측조사) 및 행정조치 신수동,용강동,합정동] ● 유현주 : 이행강제금 부과,세외수입 총괄, 각종통계 보고(월보 등) ● 김정근 : 차량운전 관리

② 도시계획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도시계획과	346,729 광 79,000 구 267,729	527,644		2,769,901	531,631	1,020,181	634,491
21C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205,196 광 79,000 구 126,196	392,086		401,177	419,078	311,346 596,345	616,252
도시 관리 계획의 체계적 추진	27,038	24,172		27,137	15,024	18,001	13,120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27,038	24,172		27,137	15,024	18,001	13,120
일반 운영비	21,638	18,772		21,737	10,624	13,601	8,720
사무관리비	21,638	18,772		21,737		13,601	8,720
업무추진비	5,400	5,400			4,400	4,400	4,400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178,158 광 79,000 구 99,158	367,914			404,054	293,344 596,345	603,132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안전점검	1,205	1,085			251,020	638	980
일반 운영비	1,205	1,085			1,020	638	980
사무관리비	1,205	1,085			1,020	638	980
시설비 및 부대비					250,000		0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	4,232	4,848			5,464	3,102	5,464
일반 운영비	1,232	1,848			2,464	1,120	2,464
사무관리비	1,232	1,848			2,464	1,120	2,464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1,982	3,000
아현뉴타운지구 개발사업	7,844	11,016			7,688	498,650	252,688
일반 운영비	3,844	7,016			2,688	910	2,688
사무관리비	3,844	7,016			2,688	910	2,688
업무추진비	4,000	4,000			5,000	4,067	5,000
시설비 및 부대비						493,673	
지구 단위 구역 정비 사업	18,877	12,649			1,000	292,706	1,000
일반 운영비	17,877	11,649				2,156	
사무관리비	12,936	6,468				2,156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820	1,000
시설비 및 부대비						289,730	
발전소 조성 (당인리 발전소 이전)	2,000	3,000			(398,000)	0	
업무추진비	2,000	3,000					
시설비 및 부대비					(398,000)	0	
경의 공황선 지상부 공원 조성					14,400	9,752	0
일반 운영비					4,400	2,870	0
사무관리비					4,400	2,870	0
업무추진비					10,000	6,882	10,000
상암2-2 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리방안					97,000	40,000	97,000
시설비 및 부대비					97,000	40,000	97,000
원클릭 도시정보 기능개선 및 홍보					27,482	19,470	0
일반 운영비					3,482		0
공공운영비					3,482		0
연구개발비					24,000	19,470	24,000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44,000 광 79,000 구 65,000	0				25,370	
민간이전	144,000 광 79,000 구 65,000	0				25,370	
도시기반시설 조성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0		6,126			
예비비		0		6,126			
행정 운영 경비 (도시계획과)	141,533	135,558			112,553	112,489	18,239
기본경비(도시계획과)	141,533	135,558			112,553	112,489	18,239
기본경비	141,533	135,558			112,553	112,489	18,239
일반운영비	57,533	57,558			43,913	43,849	18,239
사무관리비	57,533	57,558			43,913	43,849	18,239
매식비 7,000원*25명*20일*12월	42,000				23,760		

	여비 20,000원*25명*14일*12월	84,000	78,000			68,640	68,640	0
	재무활동 (도시계획과)				2,219,850	(139,730)	0	
	보전지출 (도시계획과)				2,219,850	(398,000)	0	
	보전지출				2,219,850	(398,000)	0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19,850	(398,000)	0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 계획 조례	▶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교부금 2.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담당업무 : 진경식 과장 3153-9360

팀 명	업 무 내 용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3153-9351	● 강영대 : 서무주임, 당인리발전소 이전 추진 등 주요 현안업무, 구 청사개발업무 추진 ● 김중성 : 도시관리계획,홍대 지하주차장 개발,당인리발전소 업무추진 지원,상암택지개발사업 업무총괄,성미산 도시관리계획, 해피하우스센터장 ● 이한규 : 홍대건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 홍통거리 현안업무 추진 ● 김승주 : 도시관리계획,경의·공향선 철도사업 및 철도부지 공원조성지원,홍익·서강대학교 도시관리계획업무 ● 노범준 : 도시관리계획,체비지,부동산 개발업 등록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UPIS,KLIS업무 ● 윤나영 : 일반서무, 해피하우스,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사업 ● 권순갑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3153-9361	● 송은수 : 마포로2,3구역 및 신촌역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업무, 관련법규 담당업무 ● 김광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업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강환삼 :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1구역 서측) ● 문정호 :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1 동측구역)
지구단위팀장 윤용훈 3153-9371	● 신영옥 : 균형발전촉진사업(합정1,2구역) ● 김종규 : 지구단위계획(대흥,마포,공덕,홍대) ● 정화영 : 균형발전촉진사업(합정3,4구역,합정지구) ● 정훈희 : 지구단위계획(성산,뉴타운,신촌,아현)
뉴타운사업팀장 윤희상 3153-9381	● 이재원 : 뉴타운사업업무(아현3구역,염리2구역) ● 전호성 :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 ● 정미창 : 뉴타운업무(마포로6구역,염리3구역),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 박민용 : 공덕5주택재개발, 염리5주택재개발 ● 정경일 : 뉴타운사업업무(염리4구역,아현2구역)

③ 건축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건축과	242,570	251,671			182,607	207,660	98,142
도시 건축 수준향상	104,670	119,281			68,867	94,457	81,870
구민 본위 건축 행정 구현	22,386	20,273			26,722	13,897	37,936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19,280	17,751			12,400	11,990	15,624
일반 운영비	14,880	13,351			8,400	8,190	11,424
사무관리비	14,880	13,351			8,400	8,190	11,424
업무추진비	4,400	4,400			4,000	3,800	4,200
영선 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3,106	1,322			712	620	20,812
일반 운영비	1,106	1,022			712	620	462
사무관리비	596	512				620	
공공운영비	510	510					
업무추진비	2,000	300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82,284	99,008			42,145	80,560	43,934
건축 인 · 허가 및 사용 승인	63,680	83,660			29,280	72,570	36,000
일반 운영비	42,680	62,660			29,280	65,840	36,000
사무관리비	42,680	62,660			29,280	65,840	36,000
업무추진비	2,000	2,000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9,000	19,000			5,000	4,730	
포상금					2,000	2,000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13,004	12,348			10,592	5,717	6,445
일반 운영비	11,004	10,348			10,592	5,717	
사무관리비	11,004	10,348			10,592	5,717	
업무추진비	2,000	2,000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5,600	3,000			2,273	2,273	1,489
일반 운영비	600	0					
사무관리비	600	0					
업무추진비	2,000	0					
포상금	3,000	3,000			2,273	2,273	1,489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포상금							
건축물 대장 작성 및 관리					13,610	1,287	1,500

	일반 운영비					1,900	1,287	1,500
	사무관리비					1,900	1,287	1,500
	시설비 및 부대비					11,710	0	0
	행정운영경비(건축과)	137,900	132,390			113,740	113,203	16,272
	기본경비(건축과)	137,900	132,390			113,740	113,203	16,272
	기본경비	137,900	132,390			113,740	113,203	
	일반운영비	57,260	57,510			41,980	41,443	
	사무관리비	57,260	57,510			41,980	41,443	
	특근 매식비	40,320				24,840		
	7,000원*24명*20일*12월							
	여비 20,000원*24명*14일*12월	80,640	74,880			71,760	71,760	0

2) 담당업무 : 유철호 과장 3153-9400

팀 명	업 무 내 용
건축관리팀장 송형민 3153-9401	● 박건주 : 중대형건축물관리, 특별검사원업무, 1.2종시설물, 건축예규관리 등 ● 장은경 : 서무 ● 이정빈 : 건축사관리, 건축심의위원운영, 굴토심의, 가설건축물, 세외수입 등
건축민원1팀장 장만원 3153-9401	● 김형식 : 검.경 감사관련업무, 상설점검등, 담당동:서교.동교.공덕.신수 ● 박수만 : 인터넷 건축행정(세움터)업무, 하자보수 등, 담당동: 망원.서강.신공덕동 건축.인허가 ● 고영래 : 건축1팀 건축인.허가신고접수, 쓰레기 보관함업무등 ● 차은선 : 건축 통계
건축민원2팀 채윤태 3153-9411	● 소순용 : 의회, 건축허가현장조사, 담당동:상암.합정.노고산.도화 ● 김지현 : 분양승인,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담당동:성산,여리,아현,연남,대흥,용강동 건축인.허가 ● 남문봉 : 재난, 위험시설물관리, 수방업무등. ● 여명현 : 2팀인허가신고접수, GIS, 부설주차장 업무 등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3153-9431	● 박귀덕 : 전기분야 시설업무 ● 김성화, 이범식 : 건축분야 영선업무 ● 전창환 : 기계분야 시설업무
건축물대장팀장 박용석 3153-9441	● 김지영 : 건축물대장관리 담당:공덕,아현,도화,여리,용강,대흥 ● 나현옥 : 건축물대장 관리(담당동: 신수동,서강동,성산동) 건축물대장 발급 ● 지낙훈 : 건축물대장 관리 (담당동 : 망원동, 상암동, 연남동, 합정동, 서교동)

④ 도시디자인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도시디자인과	994,549	1,732,757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367,299	1,629,674					
도시 디자인 개선	337,960	1,539,203					
도시 디자인 기획 및 개발	58,880	223,144					
일반운영비	55,880	69,944					
사무관리비	5,880	19,944					
행사운영비	50,000	50,000					
업무추진비	3,000	3,200					
서교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22,000	1,316,059					
업무추진비	2,000	3,000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	954,079					
합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257,080	0					
일반운영비	5,080	0					
사무관리비	600	0					
업무추진비	2,000	0					
시설비 및 부대비	250,000	0					
도시 환경 개선	29,339	90,471					
불법광고물 정비	27,839	90,471					
일반 운영비	22,750	85,382					
사무관리비	8,710	37,294					
공공운영비	14,040	48,088					
업무추진비	4,000	4,000					
포상금	1,089	1,089					
합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500	0					
업무추진비	1,500	0					
행정운영경비 (도시디자인과)	97,750	103,083					
기본경비 (도시디자인과)	97,750	103,083					
기본경비	97,750	103,083					
일반운영비	37,270	40,683					
사무관리비	37,270	40,683					
매식비	30,240						
7,000원*20일*18명*12월							
여비 20,000원*14일*18명*12월	60,480	62,400					
재무활동 (도시디자인과)	529,500	0					
내부거래 지출 (도시디자인과)	529,500	0					
내부거래 지출	529,500	0					
기금전출금	529,500	0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과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둔다. 1.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제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구 소속 부서(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 및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담당업무 : 조주연 과장 3153-9460

팀 명	업 무 내 용
디자인기획팀장 양희웅 3153-9461	● 이명자 : 디자인 관련 행사, 교육, 홍보에 관한 업무, 부서 홈페이지 관리 및 PCRM 관련 업무, 서울시·유관기관(부서) 등 디자인 관련 협조(협의) 및 보고(통보)사항에 관한 업무 ● 박은한 :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구의회 관련 업무, 예산(결산), 회계, 복무, 봉급(수당), 보안,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관한 업무,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업무, 각종 부서 민원사항 처리 총괄 업무
디자인사업팀장 이길성 3153-9421	● 이상권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도시디자인심의 및 위원회 운영, 상암DMC, 월드컵경기장, 한강수변공원 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관련업무 ● 김태우 :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 디자인(시범)사업개발, 사업팀 예산집행, 사업추진위원회 ● 임선희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주민위원회 운영 및 협약, 공모, 외부기관 및 타 부서 업무협의, 디자인사업 각종 보고 및 홍보
광고물팀장 이봉진 3153-9451	● 송세열 : 불법광고물(고정, 유동) 정비 업무총괄, 불법광고물 특별(야간, 휴일) 단속, 기초질서, 민원처리 추진 총괄 ● 백영순 : 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 추진 및 각종 보고사항, 옥외광고물 심의 및 위원회 운영,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교육), 협회관련 업무, 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 김향주 :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체납정리 관리업무,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통보, 인증기 관리 ● 박재홍 : 옥외광고물 예산집행 및 홍보, 옥외광고물 DB구축 관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관리, 담당동: 공덕, 야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서교, 합정동 ● 김지영 : 대형광고물 관리 및 풍수해대책 업무, 시민게시판 및 전단지 신고처리 관리업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담당동: 신수, 서강, 망원, 연남, 성산, 상암동 ● 한규선 :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처리, 순찰차량운행 및 관리 ● 황태섭 : 광고물 정비반 행정(예산, 회계)업무, 공공(희망)근로, 공익요원 관리, 불법광고물(고정, 유동) 정비 및 민원처리 업무 ● 오세욱 :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처리, 순찰차량운행 및 관리 ● 박국래 : 불법광고물 단속, 적출, 정비 업무, 공공(희망)근로 및 공익요원 현장 복무관리 ● 정정남, 이근호 : 불법광고물 단속, 적출, 정비업무, 광고물 관련 민원처리

⑤ 지적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추가경정		
지적과	511,938	771,474	-	-	413,614	166,730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47,526	50,610			49,085	47,142
인건비(4명,조사보조원인부임 등)	7,805	9,458			9,133	8,390
사무관리비(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위원수당)	24,977	26,752			26,752	29,152
결정통지문 발송	9,720	12,400			11,200	7,600
업무추진비(부동산평가위원회 등)	2,000	2,000			2,000	2,000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개발부담금산정 용역비	8,800	8,000			8,000	8,000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97,372	30,664			10,000	25,340
지적측량 수수료	5,907	-			3,123	840
공공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86,529	28,169			-	-
업무추진비	3,000	2,000			3,000	3,000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비	1,936	495			3,877	6,500
부동산 통합정보마당 구축,메일페이지구축	-	-			3,000	-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	19,585	47,652			-	-
사무관리비	18,585	46,652				
업무추진비	1,000	1,000				
새주소 사업-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80,568	480,449			151,243	55,632
사무관리비(홍보비,고지문제작,새주소보수,위원수당)	31,248	176,523			44,537	39,340
공공운영비(이륜차유지,고지우편료)	115,820	851			64,406	56,019
도로명 주소사업 업무추진	2,000	2,000			2,000	-
시설비(새주소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31,500	301,075			40,030	7,905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16,149	13,639			4,700	1,500
사무관리비	8,216	5,706			2,200	1,500
중개업자 교육	3,533	3,533			-	-
업무추진,중개업협회 간담회	1,400	1,400			-	-
부동산중개,토지거래 위반신고 포상금	3,000	3,000			2,500	-
행정운영경비(지적과)	141,938	140,460			143,086	29,116
사무관리비(매식비7,000원*20일*26명*12월)	54,578	56,220			54,722	24,910
지적장비 유지보수					7,244	4,206
여비 20,000원*14일*26명*12월	87,360	84,240 (13일*27명)			81,120 (13일*26명)	-

2) 조례

조 례	중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토지·단독주택 등 부동산가격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2.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3.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4.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5. 조사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자격을 조정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담당업무 : 윤재한 과장 3153-9510

팀 명	담 당 업 무
토지행정팀장 이대우 3153-9501	●이경화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수행자(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축적변경사업에 관한 사항, 임야도 정비사업에 관한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사항 ●김은정 : 서무·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 관리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익근로요원 복무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문서 관리, 행정장비 및 비품관리, 직원 봉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신재철 : 도시개발 사업등 지적확정 업무, 창의혁신과제 추진 및 토론티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측량표지(삼각점, 수준점)관리에 관한 사항, 조상 땅 찾아주기(지적정보센터 운영), 시군구 행정(지적행정)시스템에 관한 사항 ●이효진 : 토지통합민원창구 운영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리, G4C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민원창구 인증기 및 직인관리
지적관리팀장 노진수 3153-9511	●김원규 :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관리, 지적측량업무처리지침 운영,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및 운영,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 업무, 토지이동 처리 업무, 지적측량(기초·세부) 성과검사, 대장 및 도면 불일치자료 정비,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 업무 총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데이터 관리,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수치지도 수치갱신 업무 ●박주재 :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관리, 지적측량업무처리지침 운영,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및 운영,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 업무, 토지이동 처리 업무, 지적측량(기초·세부) 성과검사, 대장 및 도면 불일치자료 정비,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 업무 총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데이터 관리,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수치지도 수치갱신 업무 ●송은진 :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수치지도 수치갱신 업무 총괄, 지적측량성과 D/B 구축 업무, 토지이동결의서 관리 업무, 등사도면 검사 및 도형데이터(*.cif) 추출 업무,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 업무, 토지이동 처리 업무, 지적측량(기초·세부) 성과검사 사전준비, 대장 및 도면 불일치자료 정비,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총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데이터 관리, 지적관리팀 서무에 관한 업무 ●주경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작성 및 데이터 관리, 지적도(임야도)등본 작성, 토지이동 측량결과도 관리업무,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 업무, 토지이동 처리 업무, 지적측량(기초·세부) 성과검사 사전준비, 대장 및 도면 불일치자료 정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데이터 관리, 토지이동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및 수수료 관리 총괄
지가조사팀장 문명래 3153-9521	●정진녀 : 주민참여제 운영,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총괄(조사, 협의, 검토 등),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총괄,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관련 조사 업무,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 재조사, 개별공시지가 소송 수행,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사전협의 및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개발부담금 소송 수행 ●신창영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개별공시지가 예산 집행,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조사, 협의, 검토 등),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관련 조사 업무,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 재조사, 개별공시지가 소송 수행,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사전협의 및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개발부담금 소송 수행 ●정소영 :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dBrai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총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사전협의 및 관리총괄, 개발부담금 소송 수행,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조사, 협의, 검토 등),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관련 조사 업무,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 재조사, 개별공시지가 소송 업무 ●김용현 : 개별공시지가 전산업무(KLIS, 도면, 심의자료 작성 등),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관련업무,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관련 조사 업무 총괄,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 재조사 총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조사, 협의, 검토 등),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공시지가 소송 수행
부동산관리팀장 김은모 3153-9531	●김동희 :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중개사무소이용시민해피콜 및 민원상담창구 총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관련(진정 등)민원처리, 중개업소 개설(신규,장소이전,상호변경) 및 변경사항(이전,휴·폐업,재개업 등)처리, 중개보조원 신고 및 공제증서(보증보험)업무, 토지거래규제(허가·신고 등)업무,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간판 등 외관디자인 서비스 개선사업(추진독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신청 및 접수관리 ●정기영 :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중개사무소이용시민해피콜 및 민원상담창구 총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관련(진정 등)민원처리, 중개업소 개설(신규,장소이전,상호변경) 및 변경사항(이전,휴·폐업,재개업 등)처리, 중개보조원 신고 및 공제증서(보증보험)업무, 토지거래규제(허가·신고 등)업무,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간판 등 외관디자인 서비스 개선사업(추진독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신청 및 접수관리 ●신희영 :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 개설등록(야현동 ~ 상암동),전동(全洞) 1) 부동산중개사무소(장소이전, 상호변경) 및 변경사항(이전,휴·폐업,재개업 등) 2) 중개보조원 신고 및 공제증서(보증보험), 세외수입 체납징수(고지서 발부) 및 체납자 정리, 부동산거래신고(거래검증,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신청 및 접수관리 ●배수진 : 부동산거래신고 창구운영,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업무

새주소관리팀 김용범 3153-9541	●김학준 : 도로명주소 관련 소송업무 수행, 공익근무요원 관리,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박상욱 : 도로명주소 업무계획 수립, 도로구간 설정·폐지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예산 집행(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사업 관련 보고자료 작성(주,월보등), 도로명주소 관련 소송업무 수행 ●유승우 :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KLIS-rn) D/B구축 및 변동 자료 관리(정),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공적장부 전환(정), 도로구간 설정·폐지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사업 예산 집행(시설비 제외),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이민혜 : 육아휴직
----------------------------	---

⑥ 공원녹지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공원녹지과	5,361,700 국 250,430 시 214,184 구4,897,086	6,219,674	7,798,978 국 124,209 시1,668,400 구6,006,369	9,423,293 국 194,902 시1,831,302 구7,397,089	5,739,855 국 55,327 시 12,512 구5,672,016	7,822,230	6,106,219
공원 및 녹지 조성	2,887,505 시 134,868 구2,752,637	4,234,403	6,209,858 시1,653,095 구4,556,763	7,704,772 시1,803,009 구5,901,763	2,972,642	5,121,453	3,706,657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679,918	2,296,888	1,595,891 시 238,295 구1,357,596	2,155,891 시238,295 구1,917,596	2,972,642	5,121,453	3,706,657
공원시설 유지관리	1,116,254	1,360,092					
인건비	306,899	277,783					
일반운영비	186,143	194,795					
사무관리비	43,558	29,358					
공공운영비	142,585	165,437					
업무추진비	3,300	4,800					
재료비	10,920	11,460					
일반보상금	3,360	1,680					
시설비 및 부대비	376,000	716,000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563,664	729,796					
시설비 및 부대비	563,664	729,796					
공원시설 확충			1,595,891 시 238,295 구1,357,596	2,155,891 시238,295 구1,917,596			
시설비 및 부대비			1,595,891 시 238,295 구1,357,596	2,146,891 시 238,295 구1,908,59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샛터산근린공원) 공원조성사업					452,000	400,843	2,044,104
시설비 및 부대비					452,000	400,843	2,044,104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02,000	157,899	300,000
시설비 및 부대비					302,000	157,899	300,000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632,000	2,777,193	0
시설비 및 부대비					632,000	2,777,193	0
배드민턴장 시설보강 사업					270,000	517,632	300,000
시설비 및 부대비					270,000	517,632	300,000
여가시설 관리			1,395,293	1,844,093 시 55,800 구1,788,293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계속)			1,363,293	1,756,293	1,316,642	1,216,732	1,062,553
인건비					156,154	146,621	129,276
일반운영비					126,744	104,921	106,077
사무관리비					18,120	17,739	0
공공운영비					108,624	87,181	106,077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재료비					11,330	8,899	8,630
일반보상금					840	840	0
시설비 및 부대비			888,277	1,240,277	823,400	763,601	664,000
민간이전				194,574	195,174	188,848	151,570
시 소유 공원(상암근린공원) 관리						51,152	
인건비						23,430	
일반운영비						19,684	
공공운영비						19,684	
재료비						8,038	
녹색마포 건설					1,679,358 국 55,327 시 12,512 구 1,611,519	1,651,077	1,478,971
도심 녹지율 증진	1,207,587 시 134,868 구 1,072,719	1,937,515	3,218,674 시 1,414,800 구 1,803,874	3,704,788 시 1,508,914 구 2,195,874	1,679,358 국 55,327 시 12,512 구 1,611,519	1,651,077	1,478,971
수목식재 사후관리	423,495 시 134,868 구 288,627	416,688				63,460	
인건비	124,290 시 45,107 구 79,183	119,146				20,498	
일반운영비	40,060 시 12,018 구 28,042	41,008				13,957	
사무관리비	16,320	16,320				13,957	
공공운영비	23,740	24,688					
재료비	259,145 시 77,743 구 181,402	256,534				27,619	
자산취득비						1,386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	96,339	433,240	1,959,000 시 1,286,800 구 672,200	2,445,114 시 1,380,914 구 1,064,200			
인건비	17,558						
일반운영비	49,306	17,724					
사무관리비	5,930	0					
공공운영비	43,376	17,724					
업무추진비	2,000	2,000					
재료비	2,475	2,475					
시설비 및 부대비	25,000	377,000	1,949,000 시 1,286,800 구 662,200	2,407,114 시 1,352,914 구 1,054,200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99,600	270,200					
업무추진비	6,000	6,000					
재료비	10,000	10,000					
시설비 및 부대비	83,600	254,200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540,662	788,254	732,014		882,841	914,755	846,629
인건비	79,002	76,594			82,187	81,959	103,771
일반운영비					5,364	60	4,743
공공운영비					5,364	60	4,743
재료비	17,360	17,360			14,590	14,149	14,115

시설비 및 부대비	444,300	694,300	638,060		753,000	782,156	724,000
자산취득비					27,700	36,429	0
하천변 관리	47,491	29,133					
인건비	43,891	25,533					
재료비	3,600	3,600					
녹지대 유지관리					536,747	350,768	347,212
인건비					106,843	105,556	88,452
일반운영비					32,337	30,348	20,393
사무관리비					13,064	5,075	11,414
공공운영비					19,273	25,273	8,979
재료비					256,367	192,729	238,367
시설비 및 부대비					140,000	20,933	0
자산취득비					1,200	1,199	0
학교공원화 기시행학교 유지관리						20,160	
재료비						20,160	
푸른숲 가꾸기	647,416 국 250,430 시 79,316 구 317,670	319,208	408,045 국 124,209 시 15,305 구 268,531	522,032 국 194,902 시 28,293 구 298,837			
산림보호	647,416 국 250,430 시 79,316 구 317,670	319,208	408,045 국 124,209 시 15,305 구 268,531	522,032 국 194,902 시 28,293 구 298,837			
산림보호 강화	143,264 국8,444 시 1,690 구 133,130	166,606		133,897 국 33,632 시 6,726 구 93,597	129,580 국 29,727 시 3,822 구 96,031	160,700	117,922
인건비	57,964	81,306		98,597 국 29,727 시 3,822 구 58,231	91,780 국 29,727 시 3,822 구 58,231	91,661	82,122
일반운영비	900	900			800	798	800
공공운영비	900	900			800	798	800
업무추진비	1,500	1,500			1,500	1,500	1,500
재료비	32,900	32,900			35,500	28,972	33,500
시설비 및 부대비	50,000	50,000				37,768	
산불방지 대책	3,075 국 520 시 234 구 2,321	3,909		64,539 국 25,106 시 11,297 구 28,136	4,552 국 700 시 490 구 3,362	4,538	8,868
인건비				60,630 국 24,252 시 10,913 구 25,465			
일반운영비	2,675 국 360 시 162 구 2,153	2,275			2,718 국 150 시 105 구 2,463	2,709	2,468
사무관리비	2,675	2,275			2,075	2,067	1,825
공공운영비					643	641	643
여비	400	400			600 국 180 시 126 구 294	600	200
재료비					1,234 국 370 시 259 구 605	1,229	0
산림병해충 방제	148,128 국 30,945	148,693			125,638 국 24,900	136,694	158,340

		시 8,720 구 108,463				시 8,200 구 92,538		
	인건비	57,440 국 28,840 시 8,720 구 19,880	66,860			50,300 국 23,100 시 8,200 구 19,000	50,287	57,892
	일반운영비	6,023	6,718			5,503	5,501	5,653
	공공운영비	6,023	6,718			5,503	5,501	5,653
	재료비	14,665 국 2,105 구 12,560	15,115			14,835 국 1,800 구 13,035	14,181	14,795
	시설비 및 부대비	70,000	60,000			55,000	49,931	80,000
	공공산림 가꾸기	352,949 국 210,521 시 68,672 구 73,756	0	138,837 국 64,118 구 74,719				
	인건비	274,606 국 166,622 시 43,193 구 64,791	0	117,499 국 54,878 구 62,621				
	여비	4,200 국 3,542 시 264 구 394	0	1,825 국 840 구 985				
	재료비	35,143 국 20,857 시 5,715 구 8,571	0	9,142				
	시설비 및 부대비	39,000	0					
	일반보상금			10,371 국 8,400 구 1,971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616,275	783,335					
	여가시설 확충 및 관리	616,275	783,335					
	생활 체육 및 편의 시설 유지 관리	616,275	783,335					
	인건비	122,890	119,145					
	일반운영비	21,285	14,190					
	사무관리비	2,700	0					
	공공운영비	18,585	14,190					
	업무추진비	1,500	0					
	재료비	4,700	0					
	시설비 및 부대비	464,800	650,000					
	자산취득비	1,100	0					
	행정운영경비 (공원녹지과)	827,304	823,930	766,465		918,894	864,459	682,114
	인력운영비 (공원녹지과)	697,903	736,256	678,791		782,986	732,339	669,899
	인력운영비	697,903	736,256	678,791		782,986	732,339	669,899
	인건비	697,903	736,256	678,791		782,986	732,339	669,899
	기본경비 (공원녹지과)	129,401	87,674			135,908	732,339	12,215
	기본경비	129,401	87,674			135,908	132,119	12,215
	일반운영비	48,761	34,634			42,308	132,119	12,215
	사무관리비	48,761	34,634			42,308	38,579	12,215
	매식비 (24명)	40,320				32,400	38,579	
	여비	80,640	53,040			93,600	93,540	
	재무활동 (공원녹지과)	383,200	58,798		74,212		18,719	
	내부거래지출 (공원녹지과)	383,200	58,798					
	내부거래지출	383,200	58,798					
	공기업 경상 전출금	83,200	58,798					
	기타 회계 전출금	300,000	0					
	보전지출 (공원녹지과)				15,414		18,719	
	보전지출				15,414		18,719	
	반환금 기타				15,414		18,719	
	국고 보조금 반환금				18		440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396		18,278	

2) 조례

조례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1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01.3.26)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 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이 이용(연습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 시설관리 책임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구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담당업무 : 성경호 과장 3153-9560

팀명	업무내용
공원팀장 윤익진 3153-9561	● 김인숙 : 일반서무 ● 김계영 : 생활공원 조성 및 관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총괄) 개발제한구역 관리 ● 최경주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생활공원 유지관리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 공원통계업무 ● 전상은 : 전기시설(공원등,분수대)관리, 공공요금납부 ● 정훈희 : 공원 유지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순찰
조경팀장 한광수 3153-9571	● 박정순 : 띠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학교 공원과화 사업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 정유진 :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옥상녹화사업,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꽃묘식재, 벽면녹화 ● 송현철 : 마을마당 및 쉼터 조성 ● 정재권 : 녹지대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 ● 구창수 : 녹지대 쉼터, 마을마당 유지관리 및 차량관리

자연생태팀장 이원영 3153-9561	● 이범승 : 산림보호,산불예방, 산림내 위험시설물 관리 ● 백성삼 : 가로수 및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 신민영 : 하천변 관리, 병해충 방제, 약수터 관리, 위험수목 관리 등 ● 차영섭 : 가로수 유지관리 및 작업차량 관리 ● 남점희 :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 보조및 차량관리
체육시설팀장 김성철 3153-9581	● 문경희 : 체육시설 관련 행정업무, 시설관리공단 업무 ● 정미애 :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강아파트 정비팀장 윤기경 3153-9591	● 황경원 : 용강시범아파트 철거 및 녹지조성 추진

<건설교통국>

① 교통 행정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교통행정과	802,989	778,872	14,422,817 시 420,000 구14,002,817	18,110,606 시 545,100 구17,565,506	420,417	672,377	928,104
선진교통행정 구현	495,692	491,295	14,135,240 시 420,000 구13,715,240	17,727,479 시 545,100 구17,182,379	248,935	458,028	204,792
양질의 교통 행정서비스 제공	495,692	491,295	599,631		95,355	124,099	86,407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	238,576	301,846	311,446		93,326	122,446	83,940
인건비	13,657	25,535			24,658	23,119	12,87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657	25,535			24,658	23,119	12,874
일반 운영비	206,719	258,111			42,628	59,569	42,288
사무관리비	45,977	46,076			16,108	33,420	15,768
공공운영비	160,742	212,035			26,520	26,149	26,520
업무추진비	18,200	18,200			19,000	26,149	19,000
일반보상금			9,600				
포상금					7,040	7,040	4,778
자산취득비						13,837	
교통수요 관리	89,030	31,233	79,969		23,233	82,661	21,492
인건비	32,190	15,133	39,333		14,613	37,817	12,87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190	15,133	39,333		14,613	37,817	12,872
일반 운영비	22,840	16,100	23,636		8,620	20,019	8,620
사무관리비	10,720	8,020	14,020		2,620	11,969	2,620
공공운영비	12,120	8,080	9,616		6,000	8,050	6,000
여비 (해외 견학)	7,000	0	7,000			10,100	
업무추진비	4,000	0	4,000			13,539	
시설비 및 부대비					(4,000)	0	
연구개발비	20,000	0	4,000				
자산취득비	3,000	0	2,000			1,184	
교통시설물 관리	48,180	48,180	98,180		18,740	93,738	48,187
일반 운영비	1,380	1,380			1,740	310	3,787
사무관리비	1,380	1,380			1,380	140	1,800
공공운영비					360	170	1,987
포상금						18,500	
시설비및부대비 (표지판 도로 관리)	46,800	46,800			17,000	71,584	44,400
연구개발비			50,000				
자산취득비						3,343	
체납징수활동 강화	119,906	110,036					
일반 운영비	85,596	77,491					
사무관리비	40,014	34,753					
공공운영비	45,582	42,738					
업무추진비	1,500	1,500					
포상금	32,810	31,045					
고객감동 교통민원행정 추진					2,029	1,652	2,374
일반 운영비					2,029	1,652	2,374
사무관리비					2,029	1,652	2,374
건전한 자동차 문화조성					153,580	333,929	118,385
자동차 법규위반관리						157,529	
일반 운영비					106,663	131,035	44,774
사무관리비					6,091	18,375	2,840
공공운영비					100,572	112,659	41,934
포상금					4,944	25,954	3,932
자산취득비						540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주차장특별회계)				17,127,848 시 545,100 구16,582,748			
예비비				12,961,135			
도화공영주차장 건설				208,100 시 125,100			

					구 83,000			
	시설비 및 부대비				208,100 시 125,100 구 83,000			
	행정 운영 경비 (교통행정과)	307,297	287,577			171,482	202,858	723,312
	기본경비(교통행정과)	218,341	198,635			171,482	170,074	723,312
	일반 운영비	77,221	73,835			52,922	51,514	202,272
	사무관리비	77,221	73,835			52,922	51,514	202,272
	급량비 7,000원 *42명*20일*12월	70,560				41,040		
	여비 20,000원*42명*14일*12월	141,120	124,800			118,560	118,560	521,040
	인력 운영비(교통행정과)	88,956	88,942				32,784	
	인건비	88,956	88,942				32,784	
	재무 활동 (교통행정과)				95,550		11,490	
	보전지출 (교통행정과)				25,705		11,490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705		11,490	
	보전지출 (교통행정과)(주차장 특별회계)				69,845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9,845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교통안전법」제17조와「교통안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제17조2의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 기간이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 교통안내요원이 필요한 경우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시간의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측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마포구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담당업무 : 김석원 과장 3153-9610

팀 명	업 무 내 용
교통관리팀장 박재성 3153-9601	● 박상수 : 국·과 서무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업무, 교통대책 등 비상근무 사항 ● 이지영 : 개인택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 이은경 : 사업용 화물자동차 인허가, 마을버스등 여객자동차관련 업무 ● 임정섭 : 의무보험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 총무계획 ● 안종민 : 서무,회계 총무계획 ● 이후락 : 기업체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 정우열 : 의무보험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변경 ● 이은정 : 건설교통국장실 민원처리
교통시설팀장 안기동 3153-9611	● 문주영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학교·공원 복합화 시설에 관한 사항 ● 박형복 : 공영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 정비공사 ● 김미자 : 그린파킹 총괄계획 수립 그린파킹 사업 추진 ● 이영동 : 거주자 주차구획선 신설(삭선),전용주차구획선 신청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팀 김정저 3153-9621	● 유미자 :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세외수입업무 총괄, 차령연장에 관한 사항(전산자료 입력), 혼잡통행료 면제에 관한 사항 ● 장병준 :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 이명준 :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관내·외), 자동차 단순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상호변경 등), 타기관 의뢰 자동차 압류 및 해제등록에 관한 사항, 임시운행 허가처리에 관한 사항, 봉인재교부 ● 맹해균 :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 ● 지중기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업무, G4C 관련 업무, 자동차변경등록(번호변경,용도변경,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업무, 자동차초회 관련 업무, 자가용화물차 차고지 업무 ● 김병선 : 자동차 말소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이명아 : 자동차신규,소유권이전,저당권말소등록(통합창구) ● 송순식 : 자동차신규,소유권이전,저당권등록 ● 강진경 : 자동차신규,소유권이전,저당권등록(통합창구)

자동차정비팀장 정복섭 3153-9631	● 김재성 : 특별사법경찰업무(방치차량) ● 김순곤 : 자동차관리사업(종합, 소형, 부분, 지정정비업, 폐차업등), 특정경유차량 배출가스 경과안내, 정비업소 및 배출가스 수리업소 지도점검, 무허가 정비업소 불법정비 단속 등 ● 안정현 : 건설기계 검사과태료, 종합(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불법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무단방치차량 강제 폐차 및 직권말소 ● 조주희 : 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압류, 촉탁 ● 황갑선 : 무단방치 자동차 민원접수, 처리 및 현장조사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예고 통보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 지시 ● 김홍순 : 자동차정기검사·점검관련업무 총괄, 정비팀 과태료 세외수입 총괄, 검사·점검과태료 부과, 독촉 및 압류, 결손처리, 자동차정기검사·점검과태료 민원처리, 자동차정비팀 타직원에게 속하지 않는 업무
교통체납정리팀장 광승열 3153-9981	● 조영환 : 고액자 관리, 대체압류(권리행사), 결손처분, 동산 압류, 공매관련사항 ● 한승희 : 민원처리, DB자료구축, 고지서발송, 부동산 급여 압류 ● 정익주 : 서교동, 합정동, 망원동 체납정리 ● 전종진 :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체납정리 ● 정은아 : 상암동, 성산동, 연남동 체납정리 ● 김은란 :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체납정리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3153-9641	● 박준홍 :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교통관련계획 수립 및 추진, 교통량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박천기 : 교통안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버스노선(시내, 마을)에 관한 사항, 버스(택시)정류소 설치 및 관리,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공간(경찰)협의(교통민원 사항), 도로점용허가 검토협의(도로굴착),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 설치 및 관리 ● 이병돈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노면표시, 교통안전표시판 등),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② 교통지도과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교통지도과	285,990	278,643	-	8,083,480 시 100,000 구 7,883,480	294,864	33,329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29,822	32,800			34,893	33,329
사무관리비	7,234	5,450			6,059	3,473
일반우편, 등기우편	18,588	22,476			15,924	16,234
업무추진비(운수업체지도감독, 교통불편민원신고 위원회)	4,000	4,000			4,640	1,100
포상금(버스전용차로, 운전자 과태료 징수)	-	-			8,270	7,818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	-		200,000	-	-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개방주차장 설계비	-	-		6,000	-	-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개방주차장 공사비	-	-		184,000	-	-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건설 제경비	-	-		100,000	-	-
행정운영경비(교통지도과)	256,168	245,843			259,971	-
사무관리비(매식비 7,000원*20일*46명*12월)	101,608	102,323			88,371	-
여비 20,000원*14일*46명*12월	154,560	143,520			171,600 (13일*55명)	-

2) 조례

조례	중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 조례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담당업무 : 권용덕 과장 3153-9660

팀명	담당업무
주차단속팀장 황병진 3153-9651	●구주회 : 서무주임(예산,회계,물품) ●박일성 : 불법 주정차 단속 총괄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송은주 : 무인단속카메라, 차량탐재형카메라 통보서 ●이현주 : 무인단속업무 총괄 ●배선희 : 불법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심사처리 ●김한이 : 불법 주정차 인터넷 및 진정민원처리 ●문정상 : 사전통보서 관리 ●유지혜 :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서 접수 ●송혜선 : 일반서무
주차장관리팀장 양주성 3153-9661	●박영상 : 시설,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전반 ●박병규 : 부설주차장 총괄 업무, 야간개방 총괄 업무 ●송권상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업무 ●최병연 : 부설주차장 점검 ●최수기 :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주차세입관리팀장 한두호 3153-9671	●이임수 :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환불 ●김상현 : 과태료 및 과징금 렌트카관련 정정부과, 법원 이의신청 ●정의한 : 자동차 압류해제 총괄 ●허윤신 :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발급, 자진납부 ●정성훈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김은숙 : 출산휴가
운수관리팀장 김정남 3153-9681	●신정호 : 택시,화물운송업체 지도감독 ●이상숙 : 교통민원신고 처리 및 행정처분 ●남궁원 : 교통민원신고 접수,처분사전통지,의견접수 ●박호원 : 버스관련업무,대여사업관련업무 ●이철연 : 사업용차량 법규위반단속 ●이세환 : 법규위반차량 단속 ●권채문 : 법규위반차량 단속

③ 건설관리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건설관리과	649,483	355,070	358,875	567,424	452,950	492,454	190,079
국 · 공유 행정 재산 확충	172,230	52,716			64,867	43,168	29,154
국 · 공유 행정 재산 관리	172,230	52,716			64,867	43,168	29,154
국 · 공유 행정 재산 관리	172,230	52,716			64,867	43,168	29,154
일반 운영비	157,230	42,516			50,385	35,146	17,672
사무관리비	137,680	35,851			43,760	31,364	17,672
공공 운영비 (공공 요금 및 제세)	19,550	6,665			6,625	3,781	0
시설 장비 유지비	15,000						

	업무추진비 (공공용지업무관리)	3,000	3,000			3,000	3,000	0
	포상금							
	숨은세원발굴 장수 포상금	12,000	7,200			11,482	4,062	11,482
	과년도 도로 사용료 장수 포상금							
	과년도 하천 사용료 장수 포상금							
	자산취득비					1,000	959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07,001	155,848	159,653	367,453	222,722	185,727	151,137
	가로환경 조성	307,001	155,848	159,653	367,453	222,722	185,727	151,137
	가로환경정비	260,545	145,936	149,741	357,541	119,356	185,097	123,510
	일반 운영비	47,875	32,921	35,066		17,356	23,240	10,510
	사무관리비	29,855	16,351	18,496		7,471	9,311	9,070
	공공운영비	18,020	16,570			9,885	13,929	1,440
	업무추진비	5,000	5,000			2,000	4,989	3,000
	자산취득비			1,660				
	포상금							
	과년도 도로 사용료 장수 포상금	7,670	8,015				1,000	
	숨은세원 발굴 장수 포상금							
	민간이전 (노점단속)	200,000	100,000		300,000	100,000	95,587	110,000
	시설비 및 부대비					4,500	4,360	
	자산취득비					56,869	55,919	
	노점 디자인거리 조성	46,456	9,912					
	일반 운영비	16,456	4,912					
	사무관리비	11,456	4,912					
	공공 운영비	5,000	0					
	업무추진비	5,000	5,000					
	시설비 및 부대비	25,000	0					
	불법광고물 정비					76,366		27,627
	일반 운영비					73,277		23,538
	사무관리비					17,285		18,980
	공공운영비					55,992		4,558
	업무추진비					2,000		3,000
	포상금							
	과년도 도로 사용료 장수 포상금					1,089		1,089
	숨은세원 발굴 장수 포상금							
	과년도 세외 장수 포상금							
	노점 시범거리 조성					4,000	630	0
	일반 운영비					4,000	630	0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추진					23,000		0
	업무추진비					3,000		0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					20,000		20,000
	도시 계획 보상사업	10,102	9,116			247,930	137,361	
	공익 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	10,102	9,116			247,930	137,361	
	손실 보상 업무	10,102	9,116			247,930	137,361	
	일반 운영비	6,102	7,116			15,152	10,823	
	사무관리비	6,102	7,116			15,152	10,823	
	업무추진비	4,000	2,000			2,000	2,000	
	시설비및 부대비					230,778	124,538	
	행정 운영 경비	160,150	137,390			165,361	126,197	9,788
	기본 경비 (건설관리과)	160,150	137,390			165,361	126,197	9,788
	일반 운영비	59,350	53,150			46,801	36,481	9,788
	사무관리비	59,350	53,150			46,801	36,481	9,788
	매식비 7,000원*30명*20일*12월	50,400				41,040		
	여비 20,000원*30명*14일*12월	100,800	84,240			118,560	89,680	0
	자산취득비					200	200	
	재무활동				749	275	0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9	275	0	
	노점정비 인센티브 반환금				275	275	0	
	노점정비 인센티브 반환금				474	275	0	

2) 조례

조례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 제11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담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3) 담당업무 : 손문수 과장 3153-9710

팀명	업무내용
공공용지팀장 유태희 3153-9701	● 신승자 : 과 서무, 예산회계, 공공용지 법제관련 업무,세외수입체납민원처리(주택제외 건물점유) ● 김낙영 : 전문건설업, 골재채취업 ● 민준호 : 국공유행정재산관리, 변상금부과, 세외수입체납민원처리(주택점유) ● 배수란 : 출산휴가 ● 김은경 : 도로점용허가(지상, 지하, 사설안내표지판),용도폐지, 공공용지 소송 ● 이승례 : 세외수입 총괄, 하천도로점용허가, 세외수입 체납 민원처리(하천) ● 김영금 : 차량진출입 도로점용허가, 세외수입 체납민원 처리(차량진출입)
보상팀장 이해자 3153-9711	● 임영환, 이동혁 : 보상업무, 소송업무 ● 김두만 : 법원등기소 업무(등기촉탁등)
가로정비팀장 양승열 3153-9721	● 이용구 : 가로정비,노점단속 총괄, 행정처분 ● 김정희 : 팀예산집행, 팀세외수입 ● 이재현 : 보도상영업시설물, 육교사용,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허가 ● 김득천 : 일시도로 점용허가, 가로정비 내근, 외근 현장지원근무 ● 김인환 : 가로정비 내근, 외근 현장지원근무 ● 전병국 : 가로정비 총괄(1조) ● 김현수 : 가로정비1조, 차량관리 및 환경순찰 ● 김성민, 김충배, 진공달 : 가로정비(1조) ● 이창수 : 가로정비 총괄(2조) ● 박만수 : 가로정비 2조, 차량관리 및 환경순찰 ● 이연우, 곽배근, 이훈재 : 가로정비(2조)

④ 토목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토목과	7,841,184	6,325,851	8,260,533	11,547,533 시 1,260,000 구 10,287,533	6,870,622	7,809,165	7,078,476
도시 기반 시설 확충	7,102,403	5,646,048	7,580,730	10,780,730 시 1,260,000 구 9,520,730	6,281,179	7,297,351	6,653,907
도로유지 및 보도 정비 사업	4,435,892	3,103,028	3,383,028	6,583,028 시 1,260,000 구 5,323,028	3,252,850	3,436,644	3,115,734
도로정비공사	3,625,892	2,053,028		3,253,028	2,703,370	3,096,899	2,915,734
일반 운영비	23,118	23,118			25,902	22,954	0
공공운영비	23,118	23,118			25,902	22,954	0
업무추진비	2,000	0					
재료비	60,774	55,397			67,018	20,660	79,368
시설비 및 부대비	3,510,000	1,974,513		3,174,513	2,610,450	3,046,666	2,836,366
자산취득비	30,000	0				6,618	
불량 맨홀 정비	180,000	160,000			151,200	128,288	150,000
시설비 및 부대비	180,000	160,000			151,200	128,288	150,000
양화로 서울거리네네상스 조성	630,000	840,000	1,060,000				
시설비 및 부대비	630,000	840,000	1,060,000				
신수동 보행자도로 구축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			60,000	800,000			
시설비 및 부대비			60,000	800,000			
도화동 6-44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210,000	0	0
시설비 및 부대비					210,000	0	0
관내 지장물 철거 공사					50,000	40,053	50,000
시설비 및 부대비					50,000	40,053	50,000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138,280	171,402	0
시설비 및 부대비					138,280	171,402	0
도로 재설 유지	172,709	178,488			178,977	262,107	199,083
도로 재설 유지	172,709	178,488			178,977	262,107	199,083
일반 운영비	4,286	7,086			3,605	2,769	8,427
사무관리비	1,200	4,000			1,000	792	1,000
공공운영비	3,086	3,086			2,605	1,977	7,427
업무추진비	3,600	3,600			3,600	3,600	3,600
재료비	64,823	67,802			71,772	81,050	81,456
민간 이전	100,000	100,000			100,000	124,526	100,000
자산취득비						50,160	
도로기전 시설물 유지관리 (야간경관 유지관리)	2,493,802	2,364,532	2,389,172		2,461,422	2,340,628	2,164,020
지하보 차도 유지관리	52,283	118,721			44,227	33,804	134,410
일반 운영비	48,033	44,471			44,227	33,804	16,904
공공운영비	48,033	44,471			44,227	33,804	16,904
재료비	4,250	4,250					
도로 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2,441,519	2,245,811	2,270,451		1,267,339	1,211,190	1,189,523
일반 운영비	1,048,711	984,454			412,339	409,189	339,523
사무관리비	2,360	2,360			273	180	360
공공운영비	1,046,351	982,094			412,066	409,009	339,163
재료비	98,878	95,357	119,997				
시설비 및 부대비	1,293,930	1,166,000			855,000	799,490	850,000
자산취득비						2,510	
가로등 유지 관리					929,856	894,618	840,087
일반 운영비					522,908	520,978	532,337
사무관리비					2,180	35,593	0
공공운영비					520,728	485,385	532,337
재료비					102,948	99,397	106,750
시설비 및 부대비					304,000	274,242	201,000
학교 조명시설 설치					220,000	201,015	0
시설비 및 부대비					220,000	201,015	0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			90,0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마포동388-410간)			90,042				
시설비 및 부대비			90,042				
도로개설 사업					387,930	1,294,059	940,070

구수동84~현석동46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140,000	1,139,524	740,070
시설비 및 부대비				140,000	1,139,524	720,070
현석동 155-2~현석동 148-2 도로개설					154,535	
시설비 및 부대비					154,535	
손실 보상 업무				247,930		0
일반 운영비				15,152		0
사무관리비				15,152		0
업무추진비				2,000		0
시설비 및 부대비				230,778		0
행정 운영 경비 (토목과)	738,781	679,803	766,803	589,443	511,813	424,569
인력 운영비 (토목과)	562,088	525,070	612,070	425,100	372,190	387,725
인력 운영비	562,088	525,070	612,070	425,100	372,190	387,725
인건비	562,088	525,070	612,070	425,100	372,190	387,725
기본경비 (토목과)	176,693	154,733		164,343	139,622	36,844
기본경비	176,693	154,733		164,643	139,622	36,844
일반 운영비	72,533	67,373		52,023	46,982	36,844
사무관리비	72,533	67,373		52,023	46,982	36,844
매식비 7,000원*31명*20일*12월	52,080			38,880		
여비 20,000원*31명*14일*12월	104,160	87,360		112,320	92,640	0
재무활동 (토목과)					538	
보전지출 (토목과)					538	
보전지출					538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38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 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용 시설물의 공사설계시행의 적정성 여부 및 그 공법의 타당성 3. 공사추진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 위탁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로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 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 금 설치 조례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토목과장 2. 기금출납원: 담당팀장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que부분 및 간접손que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que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que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que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que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que부분 및 간접손que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que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que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의 도로복구 공사굴착 표준 최저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1에 의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3) 담당업무 : 임경선 과장 3153-9760

팀 명	업 무 내 용
토목팀장 최승각 3153-9751	● 김혜경 : 과 서무 및 예산회계 ● 이은성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건설공사 설계기준 작성 ● 박은영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계획업무, 비관리청 업무협의 ● 박운학 : 도시계획사업 설계 및 시공, 통계업무

도로관리팀장 이정재 3153-9761	● 우창원 : 포장도로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업무 ● 맹우재 : 도로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개선사업 관련업무 ● 조용철 : 도로 및 시설물관리 하자보수 업무 ● 하창곤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도로상 관련 시설물 청결개선 업무 ● 서동진 :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도로관리시스템(GIS)업무 ● 이현모 : 도로관리 현장업무 ● 백종봉 : 공공근로자 작업관리, 작업차량 및 제설차량 운전 관리 ● 김용일 :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 처리 ● 유성훈 : 작업차량 운전 및 관리, 도로시설물 환경순찰 및 현장조사 ● 박노철 : 도로시설물 환경순찰 및 현장조사, 작업차량 운전 및 관리
도로조명팀장 김금채 3513-9771	● 신오선 : 가로등 유지관리업무 총괄, 자재수급계획 및 조달물품 구매 ● 김상욱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 이운걸 : 가로등시설 점검 및 순찰,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 홍동준 : 가로등 유지관리 ● 강명중 : 보안등 유지관리 ● 김준식 : 가로등 보수차량 운전, 서강초교 앞 보도육교 유지관리 및 점검, 가로등 시설 주.야간 순찰지원 ● 김중기 :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시설 점검 및 순찰 ● 이상환 : 가로등 유지보수 및 가로등시설 주야간순찰 지원
도로굴착팀장 정현석 3153-9781	● 최원규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및 관리 ● 이순덕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및 복구비 징수 ● 백부현 : 도로점용(굴착. 복구)허가 및 복구비 징수

⑤ 치수방재과

1) 예산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액	결산액	
치수방재과	5,546,341 시 7,700 구 5,538,641	6,401,355	10,995,717 국 3,681 시 2,016,066 구 8,978,970	11,659,251 국 4,681 시 2,187,066 구 9,467,504	8,515,385 시 15,340 구 8,500,045	10,388,349	4,723,537
하수도 관리	3,018,859	3,620,019	6,380,019 시 1,100,000 구 5,280,019	6,789,019 시 1,270,000 구 5,519,019	2,794,584	4,321,722	2,902,957
하수시설 유지관리	2,613,859	2,566,019		2,925,019 시 170,000 구 2,755,019	2,178,584	2,244,302	2,145,957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1,205,000	1,205,000			1,000,000	1,058,006	980,000
시설비 및 부대비	1,205,000	1,205,000			1,000,000	1,058,006	980,000
하수시설 긴급복구	1,408,859	1,361,019			1,178,584	1,186,296	1,165,957
일반운영비	25,785	21,225			42,062	25,039	7,904
사무관리비	775	775			868	0	1,575
공공운영비	25,010	20,450			41,194	25,039	6,329
재료비	58,074	44,794			43,522	41,100	19,112
시설비 및 부대비	1,325,000	1,295,000			1,093,000	1,119,166	1,138,941
자산취득비						990	
하수악취 개선				359,000 시 170,000 구 189,000			
시설비 및 부대비				359,000 시 170,000 구 189,000			
하수시설 성능 개선	405,000	1,054,000	3,814,000 시 1,100,000 구 2,714,000	3,864,000 시 1,100,000 구 2,764,000	616,000	2,077,419	757,000
하수관 개량	405,000	1,054,000	3,814,000 시 1,100,000 구 2,714,000	3,864,000 시 1,100,000 구 2,764,000	616,000	2,077,419	757,000

	업무추진비	2,000	0					
	시설비 및 부대비	403,000	1,054,000	3,814,000 시1,100,000 구2,714,000	3,864,000 시1,100,000 구2,764,000	616,000	2,077,419	757,000
재해 및 재난 예방		1,342,435 시 7,700 구 1,334,735	1,660,827	3,494,989 국 3,681 시 916,066 구 2,575,242	3,588,989 국 4,681 시 917,066 구 2,667,242	4,683,456 시 15,340 구 4,668,116	4,907,563	1,118,352
풍수해 대책		286,570	660,732	2,497,732 시 887,000 구1,610,732	2,522,732 시 887,000 구1,635,732	3,570,283	3,904,847	191,921
수방대비 체계확립		83,570	337,732			84,283	24,038	86,921
	일반운영비	17,370	120,936			17,520	9,114	18,020
	사무관리비	15,560	12,036			15,900	7,594	16,400
	공공운영비	1,810	108,900			1,620	1,550	1,620
	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1,000	3,000
	재료비	9,550	10,146			11,013	4,708	13,151
	이주 및 재해보상금	3,650	3,650			2,750	0	2,750
	민간이전	50,000	50,000			50,000	9,186	50,000
하천 및 유수지 관리		203,000	323,000	2,160,000 시 887,000 구1,273,000	2,185,000 시 887,000 구1,298,000	3,486,000	3,880,808	105,000
	일반운영비	3,000	3,000			3,000	0	5,000
	사무관리비	3,000	3,000			3,000		5,000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	320,000	2,157,000 시 887,000 구1,270,000	2,182,000 시 887,000 구1,295,000	2,333,000	2,730,808	100,000
	자치단체 등 이전					1,150,000	1,150,000	0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980,033	896,671		963,671	1,033,029	931,601	825,828
빗물 펌프장 운영		944,033	879,871		946,871	998,029	912,081	750,128
	일반운영비	535,656	443,261			527,124	485,964	510,761
	사무관리비	13,561	11,908			8,922	8,264	8,862
	공공운영비	522,095	431,353			518,202	477,699	501,899
	재료비	10,210	7,310			6,605	6,042	6,605
	자치단체 등 이전	180,667	175,500					
	시설비 및 부대비	201,000	251,000		318,000	457,000	405,464	232,762
	자산취득비	16,500	2,800			7,300	14,610	0
수문정밀 점검		36,000	16,800			35,000	19,519	75,700
	일반운영비	36,000	16,800			35,000	19,519	75,700
	공공운영비	36,000	16,800			35,000	19,519	75,700
비상급수 시설 관리		31,248 시 7,700 구 23,548	56,900			38,680 시 15,340 구 23,340	33,459	63,553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정비		15,400 시 7,700 구 7,700	48,900			30,680 시 15,340 구 15,340	26,716	51,100
	일반운영비	10,200 시 5,100 구 5,100	10,080			10,080 시 5,040 구 5,040	7,655	51,100
	공공운영비	10,200	10,080			10,080	7,655	51,100
	시설비 및 부대비	5,200 시 2,600 구 2,600	38,820			20,600 시 10,300 구 10,300	19,061	0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15,848	8,000			8,000	6,742	12,453
	일반운영비	4,557	8,000			8,000	6,742	10,000
	공공운영비	4,557	8,000			8,000	6,742	10,000
	시설비 및 부대비	11,291	0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514	11,454			18,650	17,071	11,820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12,414	11,454			18,650	17,071	11,820
	일반운영비	10,114	9,154			8,650	10,185	8,820
	사무관리비	10,114	9,154			8,650	10,185	8,820
	업무추진비	1,300	1,300			4,000	2,068	3,000
	민간이전	1,000	1,000			1,000	118	0
	자산취득비					5,000	4,700	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100	0					

	일반운영비	3,500	0					
	사무관리비	2,800	0					
	공공운영비	700	0					
	일반보상금	600	0					
	안전문화운동 추진	28,070	34,870	32,232 국 3,681 시 3,681 구 24,870		22,814	20,583	25,230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12,620	9,770			9,184	5,115	6,768
	일반운영비	10,620	7,770			7,184	4,426	5,768
	사무관리비	10,620	7,770			7,184	4,426	5,768
	업무추진비	2,000	2,000			2,000	689	1,000
	안전문화운동	9,850	9,500			13,630	15,467	18,462
	일반운영비	5,050	5,700			5,630	6,650	10,462
	사무관리비	5,050	5,700			5,630	1,650	10,462
							5,000	
	업무추진비	2,800	2,800			2,000	997	3,000
	재료비	2,000	1,000			6,000	7,819	5,00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5,600	15,600	12,962 국 3,681 시 3,681 구 5,600				
	일반운영비	5,600	0					
	사무관리비	5,600	0					
	재료비			12,962 국 3,681 시 3,681 구 5,600				
	행정운영경비 (치수방재과)	744,937	769,755			726,804	710,317	431,351
	인력운영비 (치수방재과)	471,990	504,306			493,409	481,388	425,705
	인력운영비	471,990	504,306			493,409	481,388	425,705
	인건비	471,990	504,306			493,409	481,388	425,705
	기본경비 (치수방재과)	272,947	265,449			233,395	228,929	5,646
	기본경비	272,947	265,449			233,395	228,929	5,646
	일반운영비	98,227	100,089			68,035	63,579	5,646
	사무관리비	98,227	100,089			68,035	63,579	5,646
	급량비	87,360				57,240		
	여비	174,720	165,360			165,360	165,350	0
	재무활동 (치수방재과)	440,110	350,954		511,488	310,541	448,746	270,877
	내부거래지출 (치수방재과)	440,110	350,954			310,541	310,541	270,877
	내부거래지출	440,110	350,954			310,541	310,541	270,877
	기금전출금	440,110	350,954			310,541	310,541	270,877
	재난관리기금	440,110	350,954			310,541	310,541	270,877
	보전지출 (치수방재과)				160,534		138,205	
	보전지출				160,534		138,205	
	반환금기타				160,534		138,205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0,534		138,205	

2) 조례

조 례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구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에 관한 계획안의 심의 4.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재해별 해당국장(풍수해, 설해, 지진 등 : 건설교통국장), 재해별 해당과장(풍수 해: 치수방재과장, 설해: 토목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 재해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 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관할구역 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대책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한다. ▶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방단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마포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해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동 또는 통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 다만, 동 또는 통 규모에 따라 2개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 또는 통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23조 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방제의날 행사참여 4.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이 조례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2의2.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자 5.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임명한다. ▶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 간사는 단원 중에서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동 방재단원은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마포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담당업무 : 이종엽 과장 3153-9810

팀 명	업 무 내 용
하수팀장 정경태 3153-9801	● 박병준 : 서무업무 총괄 일반예산 편성 및 관리 회계업무(e호조)총괄 구의회 일반업무 처리 물품관리 업무 원클릭(시민불편사항 신고)민원업무 일반비밀문서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이병휘 : 시예산 총괄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총괄 각종회의 자료작성 총괄 감사업무 총괄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 김성호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업무 총괄 비관리청 업무 총괄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담당동 : 서강동, 공덕동 ● 이나영 : 배수분구 종합정비 총괄 업무 직영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상용직 운영 업무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담당동:서강동, 합정동, 동교동 ● 김경환 : 배수설비 총괄 하수도 통계 업무 환경순찰 관련 업무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담당동 : 망원1동,망원2동, 합정동 ● 김호연 : 직영 보수 자재 및 대장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총괄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담당동 : 대흥동 ● 김은희 : 일반서무,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지시사항, 초과근무, 출장명부 입력관리, 문서관리, 보안명령, 홍보(PCRM) 및 홈페이지 관리, 원클릭 총괄, 성과관리 ● 류석주 : 기동반운전 ● 박종석 : 서울81너 8046 차량운행및 관리 관내 빗물받이 순찰업무
치수팀장 김용필 3153-9811	● 송석주 : 치수분야 종합계획 수립, 풍수해대책 총괄(충무계획포함), 치수분야 심사분석 업무총괄,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처리 ● 안상훈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총괄관리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

	구입무(재난지원금 지급) 담당동 : 신수동, 연남동, 염리동 ● 배중우 : 계절별취약시설 안전점검 기술지원 특정관리시설 상하반기 저기점검 기술지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 운영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담당동 : 성산1동, 성산2동 ● 박량주 : 하천유지관리,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상암동 용강동 담당 ● 박성근 : 풍수해대책업무 보조(NDMS입력관리) 풍수해 관련 안전점검 업무 하수도 준설 집행업무 담당동 : 아현동, 도화동
기전팀장 윤석주 3153-9821	● 김학도 : 망원1, 망원2, 중동, 난지, 성산 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 총괄(기계분야 제외) 공사 설계 감독 공유재산 관리 강우량계,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유지관리 ● 유광모 : 펌프장 기계분야 시설유지관리 시특별에 의한 수문 점검계획및 용역총괄 공사설계 감독 양수기 유지관리 ● 이래운 : 지하수 관리계획 및 시설공사 업무, 재해종합상황실 유지관리, 각종자료 통계 및 관리카드 현황관리, 저류지 기계분야 시설유지관리, 양수기 유지관리 ● 류정하 : 합정,당인,마포,상수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 원격제어감시 및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수방용기자재 구매 및 관리총괄, 공유재산관리, 공사설계감독, 전기설비 안전진단 ● 송승규 : 구 재해대책 상황실시설물 유지관리 보조 공공요금 관리 각종 자료통계 현황 관리 보조 ● 이성철 :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풍수해보험 관련업무, 폭염대책 수립 시행 관련업무, 공공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방호계획 ● 송영주 : 현계및 체납관리 지하수출수량조사 지하수이용신고및허가처리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업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 ● 박중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업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업무 지원 출수량, 수질검사, 시료봉인등의 현장업무 지원 ● 설재풍 : 봉원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김기철 : 마포 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이문갑 : 당인 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박명근 : 난지 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오정길 : 중동 빗물펌프장 담당자 ● 손주호 : 중동빗물펌프장 담당자 ● 김홍범 : 망원1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윤영식 : 난지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곽창선 : 성산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김중철, 노용환 : 난지빗물펌프장 담당자 ● 황병선 : 망원2 빗물펌프장 담당자 ● 강성익 : 당인빗물펌프장 담당자 ● 최종열 : 상수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담당자 ● 김영철, 전순길 : 망원1빗물펌프장 담당자 ● 신현민 : 봉원빗물펌프장 담당자 ● 현창섭 : 마포빗물펌프장 담당자 ● 김중안 : 합정빗물펌프장 담당자 ● 이재석 : 성산빗물펌프장 담당자 ● 윤재일 : 마포빗물펌프장 ● 남상필 : 망원2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재난관리팀 김종오 3153-9831	● 노현성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특정관리대상시설 연중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상하반기 정기점검,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재난위험시설 장단기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 양혜숙 : 안전문화운동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지침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관련업무,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및 운영, 풍수해 보험 관련업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관련업무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업무

<보건소>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보건위생과	602,170 국 1,220 기 80,090 시 80,590 구 440,270	275,793	510,538 국 1,220 기 42,947 시 43,447 구 422,924	606,716 국 1,220 기 76,000 시 101,500 구 427,996	350,952	580,404
시설장비 및 의료시스템 유지관리	-	-	-	-	90,329	21,944
사무관리비-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신청사 기기 이전	-	-	-	-	20,781	-
공공운영비-청사유지비,무인자동경보장치관리비	-	-	-	-	7,944	21,944
보건소(의약과)정보프로그램 설치	-	-	-	-	7,000	-
신청사 시설비-민원실,서고 및 특사실	-	-	-	-	36,764	-
신청사 가구 구매비-소장실 회의실 민원실	-	-	-	-	17,840	-
통합민원서비스	45,793	46,918	-	-	69,651	64,651
인건비	-	-	-	-	8,220	7,551
사무관리비	14,456	15,440	-	-	44,143	-
인쇄비,수수료,폐기물처리비,민원실	12,952	12,682	-	-	10,968	42,912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4	1,008	-	-	1,008	-
민원창구 근무직원 파복비	1,000	1,750	-	-	750	-
공공요금및제세(우편요금 자동차세,차량유지비)	14,702	18,278	-	-	31,417	30,238
업무추진비(보건소,보건행정서비스관리)	13,200	13,200	-	-	15,000	14,000
자산취득비-차량장비,애프	-	-	-	-	2,288	-
전염병 관리(2009년 지역보건과에서 이전)	276,080 국 1,220 기 80,090 시 80,590 구 114,180	239,279 국 1,220 기 42,947 시 43,447 구 151,665	243,616 국 1,220 기 42,947 시 43,447 구 156,002	-	228,048 국 40,250 시 39,050 구 148,748	175,263
전염병 예방관리(홍보물,물품구매)	2,600	3,200	-	-	3,200	3,000
방역소독	106,360	137,895	147,582	-	140,348	92,615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	14,487	29,044	38,731	-	27,385	25,163
사무관리비(방역소모품,파복비,장비수리)	3,960	1,400	-	-	1,220	1,220
방역배상보험시설장비유지,유류비,차량공공요금	18,833	9,360	-	-	7,734	22,062
업무추진비(방역요원목욕비)	2,600	3,400	-	-	3,400	2,920
재료비(소독약품구입비)	53,600	41,800	-	-	33,250	33,250
자율방역활동비(목욕비)	9,600	-	-	-	-	-
물품취득비-전격살충기	3,280	52,891	-	-	67,359(차량,분무기,전격살충기)	8,000
에이즈 예방관리	164,680 기 80,090 시 80,090 구 4,500	90,394 기 42,947 시 42,947 구 4,500	-	-	81,100 국 38,550 시 38,550 구 4,000	74,048
업무추진비(에이즈예방,환자등록관리)	5,380	4,500	-	-	4,000	5,248
에이즈 환자 진료비	157,000 기 78,500 시 78,500	83,894 기 41,947 시 41,947	-	-	73,800 국 36,900 시 36,900	68,800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2,300 기 1,150 시 1,150	2,000 기 1,000 시 1,000	-	-	3,300 국 1,650 시 1,650	-
전염병 전문가실무자 교육	1,440 국 720 구 720	1,440 국 720 구 720	-	-	2,400 국 1,200 구 1,200	3,600
위탁교육비	1,200	1,200	-	-	2,000	3,000
국내여비	240	240	-	-	400	600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민간이전	1,000 국 500 시 500	1,000 국 500 시 500	-	-	1,000 국 500 시 500	2,000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62,734	77,165	74,130		69,144	44,980
식품공중위생업 신고 관리	21,700	17,500	26,000		34,144	9,980
사무관리비(인쇄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	7,280	9,280			4,856	3,980
업무추진비(보건위생 학교건강지킴이 식품기금운용)	4,420	4,720			3,820	2,50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0	3,500	12,000		3,500	3,500
자산취득 스타렉스(12인승합)	-	-			21,968	-
마포음식축제- 민간행사 보조	30,000	30,000			30,000	30,000
부정 불량식품 유통 사전예방- 제조및유통식품유상수거	-	-			5,000	5,000
위생업소 지도점검	11,034	18,130			-	-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등	4,154	10,210			-	-
단속활동 여비	6,880	7,920			-	-
재무활동-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	-	-	5,072	-	-
행정운영경비(보건위생과)	217,563	145,874			121,828	449,017
사무관리비	86,523	64,350			43,828	
일반수용비	20,163	16,470			14,548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7,000원*39명*20일*12월)	65,520	47,040(28명)			27,000(5,000원*25명*18일)	136,377
토요진료근무자 식비(7,000원*10명*12월)	840	840			2,280	
현안업무추진여비(20,000원*39명*14일*12월)	131,040	87,360(28명*13일)			78,000(25명*13일)	312,640
지역보건과	5,650,919 국 76,598 기 1,232,101 시 1,656,830 구 2,685,390	4,888,090 국 210,851 기 972,363 시 1,438,886 구 2,265,990	4,613,063 국 209,080 기 922,889 시 1,396,433 구 2,084,661	5,537,066 국 238,667 기 1,048,885 시 1,567,239 구 2,682,275	4,388,107 국 1,289,853 시 1,100,253 구 1,998,001	4,203,015
생활건강관리	478,056 기 166,439 시 71,710 구 239,907	365,222 국 49,141 기 117,091 구 198,990	347,436 국 48,590 기 108,749 구 190,097	351,156 국 48,590 기 108,749 시 1,860 구 191,957	357,860 국 159,930 시 9,669 구 188,261	293,055
금연클리닉	158,638 기 79,319 구 79,319	181,932 기 90,966 구 90,966	165,248 기 82,624 구 82,624		221,360 국 110,680 구 110,680	186,280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	72,000	72,000			89,000	78,000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 관리운영비, 성공자기념품	24,638	52,354	37,670		55,360	24,280
업무추진비	2,000	3,000			3,000	3,000
금연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6,000	10,000	8,000		10,000	-
금연클리닉사업 치료비	54,000	44,578			60,000	73,000
자산취득비- c o 측정기	-	-			4,000	8,000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영양비만, 절주 등)	78,018 기 38,130 구 39,88	85,008 기 26,125 구 58,883			95,000 국 28,500 구 66,500	100,739
기간제근로자 임금	19,500	19,500			19,500	19,500
운동사업	10,760	13,250			17,300	
영양비만사업	15,000	15,000			16,300	
절주사업	6,000	6,000			8,542	
건강증진전문가 교육훈련비	3,000	3,000			3,000	
보건간호사보수교육비, 건강실천협의회참석수당	1,758	1,758			1,758	
행사운영비(건강생활실천행사, 건강행태교육캠프등)	10,000	12,000			12,000	8,000
업무추진비	3,000	3,500			4,000	6,000
이유식교실 재료비	1,000	1,000			600	1,000
강사수당(운동, 영양, 절주등)	8,000	10,000			12,000	6,00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241,400 기 48,990 시 71,710 구 120,700	98,282 국 49,141 구 49,141	97,180 국 48,590 구 48,590	100,900 국 48,590 시 1,860 구 50,450	-	-
영양사 임금, 여비	41,400	20,700			-	-
사무관리비(담당자교육비, 교육홍보비, 검사소모품)	11,400	5,302	4,600		-	-
업무추진비	1,000	1,000	600		-	-
보충영양 식품비	186,000	70,680		74,400	-	-

	강사비	800	600			-	-
	혈색소 검사기	800	-			-	-
방문보건사업		2,309,011	1,916,250	1,921,080	2,458,424	1,449,684	574,121
	국	4,650	국 4,650	국 4,650	국 4,650	국 234,695	
	기	437,487	기 385,681	기 386,596	기 456,680	기 547,049	
	시	808,885	시 748,503	시 748,961	시 834,271	시 667,940	
	구	1,057,989	구 777,416	구 780,873	구 1,162,823	구 667,94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2009년부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포함)		373,138	282,798	284,628	382,004	332,840	182,324
	기	186,569	기 131,399	기 132,314	기 181,002		
	시	93,284	시 75,699	시 76,157	시 100,501		
	구	93,285	구 75,700	구 76,157	구 110,501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8,548	254,264		351,640	311,040	160,377
	사무관리비(교육비,재가암환자관리 홍보비)	13,350	8,534	10,364		2,250+7,560	4,000+4,207
	u - h e a l t h케어 기기 구입	-	20,000			-	-
	재가암환자 업무추진비	500	500			-	-
	재가암환자 홍보비,방문보건 차량임차	-	9,000			-	-
	강사수당	-	-			750	-
	재가암환자약품및소모품비	10,740	4,740			11,240	12,240
방문건강관리 사업		40,644	70,700	73,700	343,300	164,091	25,097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출장비	21,600	20,400		142,400	-	-
	사무관리비(방문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비,홍보물등)	2,384	22,280		38,480	16,704	14,210
	운영비(차량유지비,보험료,이동전화사용료)	5,160	6,180			5,373	2,711
	업무추진비	1,500	4,000			3,500	2,000
	행사실비보상금(노인건강사업프로그램등)		7,840			3,556	1,176
	방문보건사업 재료비및소모품	10,000	10,000		34,000	5,000	5,000
	건강부스 설치(500만원*9개등)	-	-	-	45,000	-	-
	신청사	-	-			56,138	-
	시설비-결핵실,유아놀이방,예방접종실,약품창고	-	-			73,820	-
	신청사 사무가구비,소요물품 구매	-	-				-
	자산취득비-휴대용 심전도기	-	-	3,000	71,400	-	-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	82,095	-			-	-
	사무관리비(U헬스환경,건강마을조성운영등)	24,135	-			-	-
	건강지도자 간담회	300	-			-	-
	의료소모품	50,760	-			-	-
	물품취득비(전화기,판독모니터)	6,900	-			-	-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34,000	34,000			24,000	28,000
	시	17,000	시 17,000			시 12,000	
	구	17,000	구 17,000			구 12,000	
	방문건강관리사업 재료비,운영경비, 사례관리 통신비	12,000	12,000			-	-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민간이전	22,000	22,000			24,000	28,000
암환자 의료비 지원-민간이전		357,400	355,720			205,000	165,127
	기	107,220	기 106,716			국102,500	
	시	125,090	시 124,502			시 51,250	
	구	125,090	구 124,502			구 51,250	
암조기검진사업		193,560	188,500		235,040	225,940	203,581
	기	58,068	기 56,550		기 70,512	국 112,970	
	시	67,746	시 65,975		시 82,264	시 56,485	
	구	67,746	구 65,975		구 82,264	구 56,48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000	9,000		11,000	9,000	9,000
	업무추진비-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300	400			500	500
	홍보용품	-	-			1,500	500
	암조기검진비-민간이전	184,260	179,100		223,640	214,940	193,581
노인건강관리사업		3,840	5,780			-	-
	프로그램 재료비	640	800			-	-
	업무추진비	400	500			-	-
	강사수당	2,800	4,480			-	-
	치매조기 검진사업-민간위탁금	9,300	9,300			9,300	-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민간위탁금		450,000	450,000			449,000	-
	시	225,000	시 225,000			시 224,500	
	구	225,000	구 225,000			구 224,500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지원-민간위탁금	20,000	23,400			23,400	-

	시	20,000	시	23,400		시	23,400	
정신보건사업		399,702		300,000			380,000	312,000
	시	197,851	시	150,000		시	190,000	162,000
	구	201,851	구	150,000		구	190,000	150,000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0	-	-	-	-	-	-
정신보건센터 운영-민간위탁금		395,702		300,000			380,000	300,000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민간위탁금		11,340		12,000			12,960	12,000
	시	11,340	시	12,000		시	12,960	12,000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113,600		119,764			125,000	127,253
	기	56,800	기	59,882		기	62,500	63,625
	시	28,400	시	29,941		시	31,250	31,814
	구	28,400	구	29,941		구	31,250	31,814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민간경상보조		7,140		7,800			7,800	
	시	7,140	시	7,800		시	7,800	
지역사회 건강조사		48,836		39,168			48,836	32,640
	기	24,418	기	19,584		기	24,418	16,320
	시	12,209	시	9,792		시	12,209	8,160
	구	12,209	구	9,792		구	12,209	8,160
사무관리비		1,000	-	-			1,000	-
업무추진비		500	-	-			500	600
지역사회 건강조사 비용위탁금		47,336		39,168			47,336	32,040
만성병조사·감시 FMT P과정교육 훈련(2명)		2,824		2,824				
	기	1,412	기	1,412			2,824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교육홍보물 업무추진비·강사 수당 스트림잇란셋구매)		6,000		6,036			6,036	
	기	3,000	기	3,018			3,018	
	시	1,500	시	1,509			1,509	
구	1,500	구	1,509		6,000		1,509	6,036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		155,592	-	-			-	-
전담간호사 일시지역임금		13,545	-	-			-	-
사무관리비(관리수첩제작·사무용품·정보수집처리)		9,500	-	-			-	-
업무추진		600	-	-			-	-
혈액샘플관리 소모품 등		16,947	-	-			-	-
심혈관질환예방 calling센터 시설비		5,000	-	-			-	-
혈관경직도검사기·초음파기·표본보관용냉장고·책상등		110,000	-	-			-	-
모자보건관리		2,689,093		2,198,998	2,202,269		2,455,041	
	국	71,948	국	155,840	국 155,840		국 185,427	2,201,560
	기	628,175	기	426,644	기 427,544		기 483,456	국 854,978
	시	776,235	시	646,936	시 647,472		시 731,108	시 504,485
	구	1,212,735	구	969,578	구 971,413		구 1,055,050	구 842,097
예방접종사업		562,526		577,683			198,436	
	기	168,758	기	173,305			국 99,218	998,532
	시	196,884	시	202,189			시 49,609	
	구	196,884	구	202,189			구 49,609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		20,289		19,826			19,500	19,500
예방접종약 구매-민간이전		227,237		218,749			178,936	969,632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300,423		324,608			-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13,925		14,500			-	-
자체예방접종사업		401,000		279,780			263,946	262,145
독감예방접종 업무추진비		1,000		1,500			1,500	-
독감예방접종 인건비(의사·간호사)		-		34,056			22,922	18,438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치료, 영유아, B형간염 예방접종		-		-			239,524	243,707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		400,000		239,724			-	-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30,740		24,404	25,904		37,204	31,774
출생축하카드및예방접종안내문·의료기·소모품·현수막		5,140		7,740			8,140	7,110
업무추진비		1,000		1,000			1,000	600
모자및여성건강교실 강사료		4,600		2,400	3,900		2,000	-
풍진·기형아 검사비-민간이전		20,000		13,264			13,264	13,264
영유아 건강검진		4,738		6,316			5,224	4,953

	기	2,569	국	2,850		국	2,612	
	시	1,085	시	1,03		시	1,306	
	구	1,084	구	2,383		구	1,306	
홍보비, 건강검진도구 구매		948		2,544			916	-
영유아 건강검진료-민간이전		3,790		3,772			4,308	4,953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213,463						
	기	64,038	233,830			예산항목 조정		
	시	74,712						
	구	74,713						
산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비		797		1,480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6,175		138,608	138,745		87,116	107,76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9,621		87,606	87,640		89,472	94,140
산생아 난청 조기진단		6,870		6,136			-	-
소아암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	-	-	-		100,000	92,869
산모건강관리사업(2009년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에서 명칭변경)		642,730					296,680	
	기	191,810	315,186			국	89,004	357,063
	시	223,080				시	103,838	
	구	227,840				구	103,838	
체외수정시술비지원 근로자 인부임		15,000		15,000			-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근로자 인부임		15,800		-			-	-
출산지원사업 근로자임금		-		-			15,000	15,000
모유수유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260		200	1,800		-	-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료		6,600		6,160			-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326,213		225,826		243,523	-	-
불임부부 지원사업		-		-			281,680	342,063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213,457		-			-	-
철분제 구매, 표준모자보건수첩		65,400		68,000			70,250	36,566
산모, 산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료및구료비		143,896		120,540		169,240	136,080	
							국 68,040	151,708
							시 34,020	
							구 34,020	
아토피관리사업(홍보물, 업무추진비, 교실운영소모품, 아토피캠프, 아토피검진비)		20,000		20,000			-	-
	시	10,000		시 10,000			-	-
	구	10,000		구 10,000			-	-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기	670,000	610,459		796,834	482,000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시	201,000	기 183,138		기 239,050	국 241,000		643,456
	시	234,500	시 213,661		시 278,892	시 120,500		
	구	234,500	구 213,660		구 278,892	구 120,500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검사비-민간이전		-	10,800				10,800	10,800
전염병 관리		6,100	5,350				4,212	4,510
결핵검진사업(소모품, 고등학교결핵검진)		6,100	5,350				4,212	4,510
재우활동-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167		-	-
행정운영경비(지역보건과)		168,659	168,341				150,955	6,392
사무관리비		71,769	71,621				51,115	6,392
현안업무 추진여비(20,000원*14일*28명*12월)		94,080	96,720				99,840	-
			(31명*13일)				(32명*13일)	
자산취득비-전자복사기		2,810	-				-	-
의약과		917,923	1,086,359	1,191,529	1,382,788		1,414,923	
	국	3,663	국 3,663	국 3,663	국 3,663		국 92,749	509,450
	기	139,700	기 95,873	기 185,873	기 235,416		시 83,491	
	시	100,205	시 189,625	시 189,625	시 223,363		구 1,238,683	
	구	674,355	구 797,198	구 812,368	구 920,346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432,493	412,017	517,187	614,445		450,810	
	기	139,700	기 95,873	기 185,873	기 235,416		국 88,752	188,130
	시	78,374	시 73,794	시 73,794	시 92,532		시 61,493	
	구	214,419	구 242,350	구 257,520	구 286,497		구 300,565	
마포구강보건센터 운영		100,404		244,366			-	-
	기	10,000	139,196	기 90,000			-	-
	구	90,404		구 154,366			-	-
인건비(치과의사, 치과위생사)		79,584	61,888				-	-
교육자료및소모품구입		2,000	-				-	-
구강보건센터 홍보인쇄물		1,500	-				-	-

구강보건수첩(어린이용·노인용)	1,500	-			-	-
치과장비유지·치아의날행사·연극제·간담회·냉장고	5,820	-			-	-
의료및구료비	10,000	2,178			-	-
업무추진비	-	300			-	-
자산취득·장비구매	-	74,830			-	-
시설·인테리어 공사	-	-	30,340		-	-
노인의치보철·민간이전	220,400 기 110,200 시 55,100 구 55,100	138,460 기 69,230 시 34,615 구 34,615		220,400 기 110,200 시 55,100 구 55,100	98,500 국 49,250 시 24,625 구 24,625	98,500
구강보건 진료 및 홍보	-	13,320			12,820	12,685
사무관리비	-	3,320			3,320	1,385
치과장비유지비	-	1,000			1,000	800
치아의 날 행사	-	2,000			2,000	2,000
서강분소 장애인치과진료 간담회	-	500			-	-
치과용 소모품	-	6,500			6,500	5,500
치아 홈메우기	-	31,108		31,432	54,504 국 27,252 시 13,626 구 13,626	5,220
인간·치위생사	-	4,408		4,732	-	-
치아 실런트 사업·민간이전	-	26,700			54,405	5,220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	14,928			16,678	16,638
구강교실 홍보물 및 교육자료제작	-	11,128			13,178	10,738
업무추진비	-	500			500	400
구강보건 연극제	-	3,300			3,000	3,000
노인장애인 불소도포·스케일링	39,000 기 19,500 구 19,500	22,178 기 11,089 구 11,089		39,000 기 19,500 구 19,500	24,500 국 12,250 구 12,250	24,500
인간·치위생사·치과의사	36,000	19,500			19,500	19,500
의료및구료·민간이전	3,000	2,678			5,000	5,000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민간이전	15,000 시 10,500 구 4,500	24,000 시 16,800 구 7,200			10,800 시 8,640 구 2,160	9,360
1차진료 및 진료실 운영	44,915	14,225			218,406	21,227
사무관리·서강·내과(2008년·야간·신청사·이전포함)	4,873	5,173			40,231	18,227
인간·의사·간호사 일시·지역인부임	-	-			67,556	-
공공요금 및 제세	4,052	6,552			21,079	14,761
의료기관·의사협회 간담회비	1,500	1,500			1,500	1,500
내과·서강분소 의료소모품	1,600	1,000			1,000	1,500
서강분소 시설비(2008년·신청사·시설공사비)	15,000	-			35,650	-
내과·서강분소 자산및물품 취득비(2008년·신청사)	15,390	-			72,469	-
취학전 아동불소도포	12,774 시 12,774	14,602 시 14,602		12,774 시 12,774	14,602 시 14,602	-
인간·비	4,800	4,800			4,800	-
불소도포·사업·의료및구료비	7,974	9,802		7,974	9,802	-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34,021 국 3,663 시 1,831 구 228,527	237,530 국 3,663 시 1,831 구 232,036		294,782 국 3,663 시 1,831 구 289,288	197,462 국 3,997 시 1,998 구 191,467	157,354
건강검진	7,300	4,025			2,980	2,830
사무관리·비(소모품·등·업무추진·비)	5,500	4,025			2,980	2,830
운동지도 강사료	1,800	-			-	-
검사 및 검사실 운영	154,340	158,252		215,504	139,586	121,973
인간·비	13,265	13,615			-	-
일반운영·비(소모품·홍보·안내·책자·피복·비·장비·유지·비)	12,830	12,900			12,715	12,746
진단·검사·영상·의학·건강·검진·실·검사·용·시·약·및·소·모·품	128,245	130,237			121,251	109,227
방사선·실·물·품·구·입·공·기·살·균·기	-	1,500		1,752	5,620	-
맞춤형 운동·처·방	35,127	34,699			21,614	3,725
인간·비(서강·분·소·운동·지·도·실·운동·처·방)	13,265	13,615			-	-
일반·운·영·비(피·보·비·소·모·품·시·설·장·비·유·지·비)·업·무·추·진	8,262	6,684			4,914	2,240

운동지도 강사료	12,600	12,600			12,600	-
건강증진실 소모품	1,000	1,800			1,800	1,485
건강증진센터-에어콘 구입	-	-			2,300	-
의약품 조제 투약	19,228	23,928			22,728	22,628
일반운영비, 약사회간담회	600	500			100	-
약품,약봉지등 민간이전	18,628	23,428			22,628	22,628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6,200	4,700			2,560	2,200
강사료,교육용품(40회)	6,000	4,500			2,360	2,200
업무추진비	200	200			200	-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4,500	4,600			-	-
교육용품,수거폐기경비	4,000	4,400			-	-
업무추진비	500	200			-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7,326	7,326			7,994	
	국 3,663	국 3,663			국 3,997	
	시 1,831	시 1,831			시 1,998	
	구 1,831	구 1,832			구 1,999	3,998
홍보전단지	256	256			256	452
건강검진비(비취학청소년,의료급여수급권자)	7,070	7,070			7,738	3,546
생활안전 증진	40,000	78,340		102,838	40,000	
	시 20,000	시 30,000		시 45,000	시 20,000	40,000
	구 20,000	구 48,340		구 57,838	구 20,000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40,000	60,000		65,498	40,000	40,000
교육및홍보리플릿	2,000	3,000			3,450	
자료집 제작	-	-	-	14,180	5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4,000			13,850	-
안전한마포운영위원회 수당	700	1,400			700	
안전홍보관 교육물품구매	2,200	5,780			550	
국제 안전학교 공인실사 및 공인식	6,300	-			-	-
안전한 마포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1,300	1,500			1,700	-
가정내 안전예방교육 10만원*22학급	2,200	7,200			-	-
교통안전교육 10만원*16학급	1,600	-				
안전뮤지컬 관람	-	10,220			-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10만원*53학급	5,300	5,800			2,620	2,620
장애예방교육 10만원*27학급	2,700	3,600			-	-
취약아동 안전교육	600	2,500			-	-
청소년 심폐소생술 교육	-	-			2,940	2,940
어린이 안전이론 교육	-	-			4,220	4,220
안전대원 위탁운영	5,600	3,000			-	-
우리아이 지킴이 운영	-	-			2,670	2,670
공인관련 외국어통역비,참가자 원고료	1,500	-			-	-
업무추진비	3,000	2,000		2,300	1,000	-
외빈초청여비(숙박비,식대,시차)	5,000	-		848	-	-
안전한마포사업 조사분석 용역	-	-			5,000	-
우리아이지킴이 활동실비	-	-			800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18,340		37,340	-	-
소모품,홍보물구매 업무추진	-	7,240			-	-
교육강사료	-	11,100			-	-
물품취득비-응급장비 구매	-	-	-	4,000	-	-
의료장비 개선	26,510	178,800			572,800	121,000
고압멸균기 1대	15,510	-			치과진료용유니	
심전도기 1대	11,000	-			트체어,방사선실	
생화학검사기,뇨분석기,원심분리기,현미경,경피신경치	-	178,800			의료영상저장전	
료기,탁도계					송시스템,수질검	
					사기	
재우활동-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51	-	-
행정운영경비(의약과)	184,899	179,672			153,851	2,966
사무관리비	77,379	71,492			50,891	2,966
국내여비(20,000원*32명*14일*12월	107,520	106,080			102,960	-
		(34명*13일)			(33명*13일)	
과 사무실 서고용 파티션 구매	-	2,100			-	-

2) 조례

조례	중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8.6.12) 2.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 「노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관리 사업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2-29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이 조례는 마포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추진반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식품안전추진반	77,733	48,784	62,224	62,797	5,000	5,000
식품위생 관리(2009년 보건위생과에서 분리)	20,198	11,535	24,975			
식품유통 및 원산지 관리	20,198	11,535	24,975		5,000	5,000
사무관리비(각종서식,홍보물 인쇄비,현수막)	6,898	1,655			-	-
간담회(소비자감시원,학부모,원산지표시제)	3,400	1,720			-	-
배상금(유통식품,한우등 유상수거비)	9,900	8,160			5,000	5,000
보상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	-	13,440		-	-
재무활동(시도비보조금반환금)부정,불량식품 유통사전예방				573	-	-
행정운영경비(식품안전추진반)	57,535	37,249			-	-
사무관리비	23,935	15,409			-	-
국내여비 20,000원*14일*10명*12월	33,600	21,840			-	-

<구의회 사무국>

1.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구의회 사무국	3,003,412	2,990,152		3,000,453	3,948,922	2,764,389
의정활동 지원	1,399,899	1,275,232			2,318,500	1,380,770
의정공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355,399	1,230,732			2,139,252	1,215,688
기간제근로자 보수(회의록속기,청사청소)	-	-			9,578	15,857
사무관리비	129,030	92,554			71,197	
수수료(신문구독료,법령집가제료)	6,919	6,688			6,366	
인쇄비(회의록,표창장등)	27,875	27,800			25,530	
의회연보,홍보책자 제작	27,000	27,000			-	
뺑지,명패 제작,플래카드	9,320	700			1,150	
통,번역료,속기기계,녹음테이프	2,980	920			-	37,811
정기간행물 구독	1,752	1,752			-	
속기사 피복비,주차료,차량렌트비,통행료	4,340	4,240			3,240	
위탁교육비	5,500	5,000			5,000	
홈페이지및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제수수수료	39,864	18,154			14,359	
신청사 이전 부대비용-관내도제작,직위판,이사비등)	-	-			14,052	
공공운영비	49,462	14,360			5,564	5,564
차량유지비(유류대,수리비등)	12,000	8,500			5,564	5,564
공공요금및제세(자동차세,전화비,본회의장유지)	37,462	5,860			-	-
여비	47,600	47,600			47,000	38,600
국내여비(출장,교육,지방시찰등수행경비)	21,200	21,200			20,600	18,200
국제화여비(해외시찰수행180만원*12명,직원시찰)	26,400	26,400			26,400	20,400
업무추진비	57,600	57,600			61,400	
구의회 사무국 업무활동 지원	18,000	18,000			20,000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	10,200	10,200			12,000	
전문위원의정활동업무(5급2명,6급2명)	10,080	10,080			10,080	56,600
전문위원입법활동업무	4,320	4,320			4,320	
의회운영및활동지원업무추진	10,000	10,000			10,000	
의원행사지원(개원행사,체련대회등)	5,000	5,000			5,000	
의회비	947,887	944,938			1,240,073	905,360
의정활동비(보조,의정자료수집) 110만원*18명*12월	237,600	237,600			237,600	237,600
의정월정수당	454,464	454,464			752,400(4,180만원*18명)	443,340
국내 여비	13,190	13,190			11,550	11,550
의정운영 공통경비 4,956,000*18명	93,208	90,400			90,400	90,400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장 330만원*12월,부의장160만원*12월 상임위원장110만원*12월 예산결산위원장110만원*3	101,700	101,700			101,700	93,700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0	4,000			4,000	4,000
의원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	43,734	43,584			42,423	25,470
연금 부담금 등(직무상사망,장애)	39,600	39,600			36,000	36,000
시설및부대비(다목적실바다,프로젝터설치)	40,000	1,500(의장실출입문설치)			-	-
자산취득(다목적실기구1100만원,본회의장발언대100만원,노트북169만원*18대,도서구입비180만원)	42,420	32,580(컴퓨터,모니터,도서구입)			688,440(컴퓨터,방송장비,집기)	14,750
국외 선진의회 연수	44,500	44,500			44,500	32,280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0	560			560	560
국외여비(의장,부의장250만원*2명,의원180만원*16명 추가편성30%)	43,940	43,940			43,940	31,720
의정활동 홍보	8,000	8,000			41,000	43,000
지역신문홍보50만원*16회	8,000	8,000			8,000	8,000

의회연보,홍보책자 제작(사무관리비로 항목이동)	-	-		33,000	35,000
청사시설관리 및 장비유지	-	-		93,748	
공공요금 및 제시	-	-		51,477	
연료비	-	-		17,197	89,802
시설장비 유지비	-	-		25,074	
행정운영경비(구의회 사무국)	1,625,513	1,706,920	1,717,221	1,630,422	1,383,619
인력운영비	1,451,741	1,533,909	1,544,210	1,481,918	1,253,628
인건비	1,356,821	1,442,889		1,394,018	1,176,528
연봉제-구의회 사무국장 5,188,830*1명*12월	62,266	90,455 (공로연수1명)		63,293	
월급제-일반직21명 기능직8명	692,203	720,546(일반 직20,기능직10)		711,796(일반직 21,기능직8)	704,299
정근수당692,203,000원*1/12*0.96	55,377	57,644		56,944	
시간외 근무수당(일반직 기능직)	154,464	143,459	153,760	142,954	
정액수당(가족,자녀학비보조,정근수당가산금,의사)	103,445	108,079		111,994	213,958
정액급식비	46,800	49,920		48,360	42,120
교통보조비	44,040	45,720		45,600	39,360
명절휴가비692,203,000원*1/12*120%	69,221	72,055		71,180	59,689
가계지원비692,203,000원*1/12*16.7%*12월	115,598	120,332		118,870	99,449
연가보상비	22,407	34,679		23,027	17,673
업무추진비	11,100	11,100		10,800	9,600
기관운영(국장) 업무추진비	3,300	3,300		3,000	3,000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7,800	7,800		7,800	6,600
직무수행경비	74,820	79,920		77,100	67,500
사무국장(35만원*12월),전문위원(15만원*2*12월)	7,800	7,800		7,800	6,600
직급보조비	52,020	56,520		53,700	46,500
대민활동비(6급이하)	15,000	15,600		15,600	14,400
기본경비(구의회 사무국)	173,772	173,011		148,504	129,991
사무관리비	70,157	72,813		51,784	45,751
공공운영비(케이블시청료,우편요금)	2,815	3,478		-	-
국내여비20,000원*14일*30명*12월	100,800	96,720 (31명*13일)		96,720	84,24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에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3. 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의원의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2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월 2,104,000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 선임하며 그 책임자가 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의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3) 담당업무

★ 특별회계

① 주차장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도시계획과	12,316	13,316	-	-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12,316	13,316			50,000	-
신문공고료	8,316	8,316			-	-
업무추진	4,000	5,000			-	-
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	-			50,000	-
교통행정과	15,538,312	13,115,609	-	-	14,591,262	11,312,476
자전거 이용 활성화	440,600	236,000			151,200	150,000
일반운영비	50,000	30,000			50,000	-
공공자전거 소모품 구매	10,000	20,000				-
자전거대여소 등 자전거이용시설 공공요금	10,000	10,000				-
자전거대축제 행사운영	30,000	-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업무추진비	1,200	1,200			1,200	-
자전거등록 시스템 구축	30,000	-			-	-
포상금	27,400	4,800			-	-
업무용 자전거 우수부서 포상금	3,400				-	-
직원자전거 출퇴근 포상금 2만원*12월*100명	24,000				-	-
시설비	330,000	100,000			100,000	150,000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250,000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80,000					
시설부대비-자전거이용시설 설치	2,000	-			-	-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	-			10,862,092	-
일반운영비-주차사업 관련 소모품	-	-			1,200	-
주차장건설 업무추진	-	-			2,400	-
기본 설계비	-	-			36,756	-
실시 설계비	-	-			73,221	-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			7,775,986	-
시설비-건설비,안내표지판	-	-			2,904,600	-
감리비	-	-			40,807	-
사업추진관련 부대비	-	-			27,122	-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	350,701	373,552			252,969	264,107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669	10,461			6,434	11,407
사무관리비-홍보물제작비,프린터소모품	10,269	4,708			11,680	16,800
공공운영비- c c t v 전기요금,관리비,우편료등	19,763	21,383			17,955	-
그린파킹 업무추진	2,000	2,000			2,400	2,400
담장허물기 공사	256,000				147,000	126,000
생활도로 조성공사	40,000				-	-
그린파킹 시설공사 부대비	4,000	4,000			7,500	7,500
생활도로 c c t v 설치비	8,000	11,000			60,000	100,000
예비비	12,856,942	9,576,996			3,023,819	7,442,938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20,869	220,661			251,182	77,431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669	10,461			10,720	-
일반운영비-플로터소모품구입,유지관리등	6,000	6,000			6,462	23,831
교통시설물 업무추진비	1,200	1,200			1,000	3,600
교통현황조사 용역	-	-			30,000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00,000	200,000			200,000	50,000
시설부대비	3,000	3,000			3,000	-
도화 공영주차장 건설	1,669,200	-			-	-
일반운영비-주차사업 관련 소모품	1,200	-			-	-
주차장건설 업무추진	5,000	-			-	-
공사비	1,563,500	-			-	-
감리비	89,500	-			-	-
사업추진관련 부대비	10,000	-			-	-
교통지도과	6,686,530	7,604,837			6,519,250	5,800,636
불법 주정차 단속(주차장 특별회계)	1,584,258	2,130,843			1,717,071	1,433,276
불법 주정차 단속	591,055	1,194,991			1,717,071	1,433,276
사무관리비-과태료처분표지,피복비등	41,150	41,380			47,460	71,207
공공요금및제세-자동차세,보험료,환경개선부담금등	32,367				51,418	49,771
시설장비유지비-무인카메라,자동차유류대등	88,370				43,852	
업무추진비-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및유관기관합동단속	15,000	15,000			15,000	20,000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건비	86,556	115,408			187,538	240,398
불법주차계도 자원봉사자 운영	2,030	1,450			1,750	1,750
포상금-주차단속실적,동주차단속활동	100,800	100,800			108,000	76,200
민간견인대행 비용 4만원*60건*365일	-	-			876,000	876,000
주차민원실 설치	-	-			5,214	-
무인단속카메라 광케이블 공사	34,782	-			-	-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190,000	826,624			380,000	97,950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993,190	935,852			466,277	408,336
사무관리비-인쇄비,카드결제,가상계좌처리 수수료	23,770	52,660			36,460	35,628
공공운영비-우편요금,암류자동해체시스템유지관리등	918,420	844,056			388,536	300,600
포상금-과년도체납징수	46,013	39,136			33,281	29,108
주정차과태료 카드납부시스템 구축	5,000	-			-	17,000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체압류 프로그램	-	-			8,000	-
주차장 관리(주차장 특별회계)	49,475	45,845			153,798	146,812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508	35,045			18,265	16,776
일반운영비-우편요금	2,667	-			-	-
서울시 주차장부지 사용료	-	-			124,733	111,736
공영주차장 주차시설관리 업무추진	4,800	4,800			4,800	4,800
부설주차장 점검 프로그램 개발	12,100	-			-	-
건축물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개선비 보조	6,000	6,000			6,000	6,000
부설주차장 단속 P D A 구매	4,400	-			-	-
버스전용차로 관리(주차장 특별회계)	9,779	14,464			-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9,779	7,951			-	-
행정운영경비(교통지도과)	1,614,199	1,567,634			1,569,602	1,575,006
인력운영비(교통지도과)	1,614,199	1,567,634			1,569,602	1,575,006
인건비(기능직 26명) 월급,수당등 포함	1,057,589	1,035,720			1,318,774(29명)	1,214,023
인건비-시간제계약공무원(14명)급여,수당,보험금포함	265,950	265,906			-	-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	49,200	49,200			53,940	53,940
포상금-성과상여금	62,247	60,291			64,606	49,051
연금,국민건강보험금,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79,213	156,517			132,282	127,762
재무활동(교통지도과)	3,428,819	3,846,051			2,612,502	2,237,206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견인보관소관리 운영위탁	3,428,819	3,846,051			2,612,502	2,237,206

② 기반시설부담금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도시계획과	89,143	-			237,000	788,000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89,143	-			237,000	788,000
예비비	89,143	-			237,000	788,000
공원녹지과	-	-			1,556,000	-
샛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	-			1556,000	-

③ 마포농수산물 시장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지역경제과	4,013,579	3,926,761			-	-
지역경제 활성화	566,605	254,931			-	-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566,605	254,931			-	-
예비비	566,605	254,931			-	-
재무 활동	3,446,974	3,671,830			-	-
내부거래지출(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3,446,974	3,671,830			-	-

④ 의료보호기금 예산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0 예산액	2009			2008 예산액	2007 예산액
		예산액	1차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		
사회복지과	416,000 국 207,500 시 207,500 구 1,000	295,247			322,346 국 157,000 시 157,000 구 8,346	273,085
국민기초생활 보장	355,300	239,691			322,346	273,085
의료급여지원	355,300	239,691			262,015	208,920
사무관리비(의료급여심의위원회수당,사무용품구입)	3,760	4,872			4,540	4,340
공공운영비(우편료)	1,000	5,400			6,475	-
업무추진비-의료급여심의위원회운영,관계기관간담회	-	-			2,000	-
본인부담금 보상금,초과금	30,000				21,600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22,540				205,000	196,580
요양비	35,000				14,400	
건강생활 유지비	150,000				-	-
민간용자금-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대불금	3,000	4,000			4,000	4,000
과오납 반환금,사후지원 입양아동 환급금	10,000	9,019			4,000	4,000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60,700 국 30,350 시 30,350	55,556			60,331 국 30,165 시 64,165	64,165
의료급여 관리자 인력운영-인건비	60,700	55,556			60,331	58,165